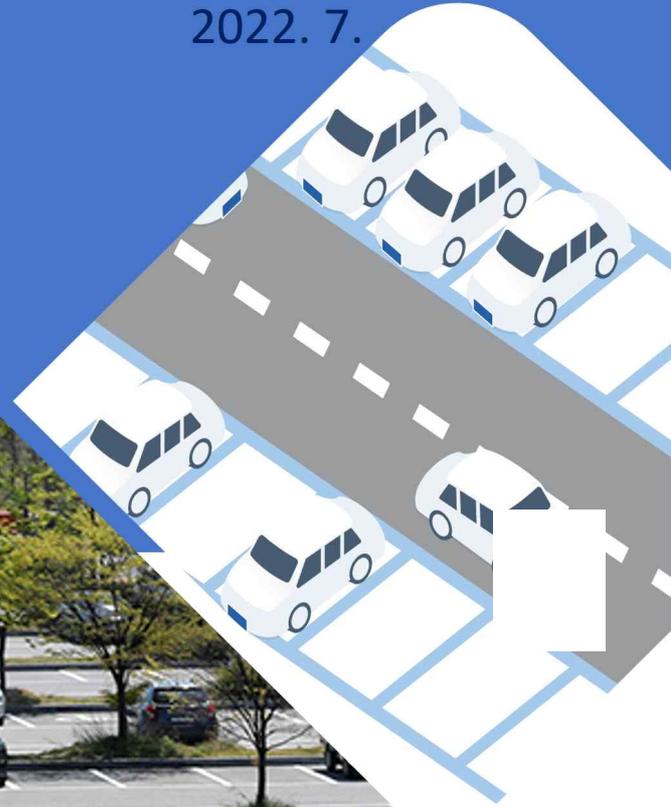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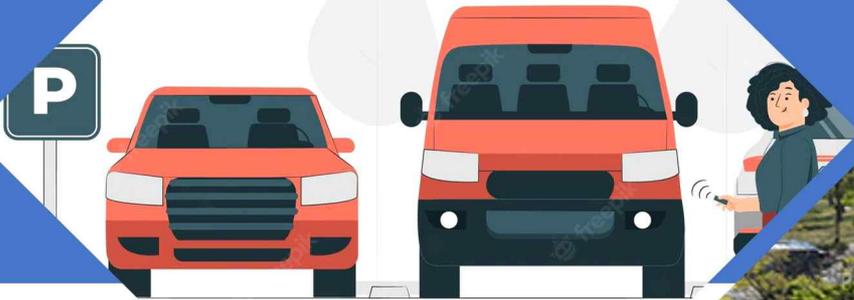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2. 7.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7.

인 천 연 구 원
원 장 이 용 식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선임연구위원	석종수
	연구원	서지민
	연구원	김나경
	연구원	강태연

차 례

1. 연구의 개요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6
다 연구의 범위	7
2.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13
가 사회지표 현황	13
나 교통지표 현황	15
다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 현황	17
라 주차시설 현황	19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31
가 관련 계획	31
나 관련 법규	41
다 국내 주요 도시 주차 금지와 요금 현황	43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57
가 인천시민 공영주차장 이용의식	57
나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62
다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78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85
가 다른 도시의 금지 체계와 요금 수준	85
나 금지와 요금 조정 사례	88
다 주차요금 체계 개선방안	91
라 주차 금지 체계 개선방안	108
마 금지 체계와 요금 조정 적용방안	116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119
가 국내 주요 주차정책	119
나 국외 주요 주차정책	123
다 주차장 이용효율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132

표 차례

표 1.1 인천시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 변화	4
표 1.2 인천시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조정 경과(주요 조례개정 이력)	4
표 2.1 인천광역시 인구 및 가구 수 증감 추이	11
표 2.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증감 추이	12
표 2.3 인천광역시 자동차등록 대수 증감 추이	13
표 2.4 인천광역시 인구 및 가구 기준 자동차등록 대수(2021년)	13
표 2.5 인천광역시 너비별 도로 현황	14
표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너비별 도로 현황(2020년)	14
표 2.7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15
표 2.8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6
표 2.9 인천시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17
표 2.10 인천시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18
표 2.11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유형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19
표 2.12 인천시 자치구별 운영 주체별 주차장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0
표 2.13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유·무료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1
표 2.14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급지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2
표 2.15 인천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추이	23
표 2.16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4
표 2.17 인천시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5
표 2.18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현황	26
표 2.19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27
표 3.1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주요 지표	32
표 3.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의 주차 부문 계획 지표	33
표 3.3 추진과제 및 전략	34
표 3.4 인천광역시 급지 선정기준 개선(안)	35
표 3.5 주차 시간 상한제 적용 개요	36
표 3.6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주차장 확보율 목표	38
표 3.7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38
표 3.8 2020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현황	40
표 3.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41
표 3.1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43
표 3.11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4
표 3.12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45
표 3.13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6
표 3.14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47



표 3.15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48
표 3.16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49
표 3.17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49
표 3.18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50
표 3.19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표 3.20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51
표 3.21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2
표 3.22 국내 주요 도시 별 금지 체계와 주차요금	53
표 4.1 표본 설계	63
표 4.2 주차장 표본 특성	63
표 4.3 조사 절차	64
표 4.4 노외주차장 유형별 유출입 현황	64
표 4.5 노외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65
표 4.6 금지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66
표 4.7 권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67
표 4.8 용도지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68
표 4.9 노상주차장 유형별 유출입 현황	70
표 4.10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71
표 4.11 금지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72
표 4.12 권역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73
표 4.13 용도지역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74
표 4.14 표본 설계	78
표 4.15 조사 절차	79
표 4.16 중구 신포시장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79
표 4.17 부평구 진선미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80
표 4.18 남동구 소래 타워형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80
표 4.19 부평구 신라저축은행 빌딩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81
표 4.20 미추홀구 창보빌딩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81
표 5.1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94
표 5.2 인천시 주차요금과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변화	95
표 5.3 인천광역시 및 국내 주요 도시교통 및 주차 여건 비교	95
표 5.4 과정 1 - 대안별 인상률 적용	96
표 5.5 과정 2 - 1시간 주차요금 산정	97
표 5.6 과정 3 - 10분 단위 기본요금 산정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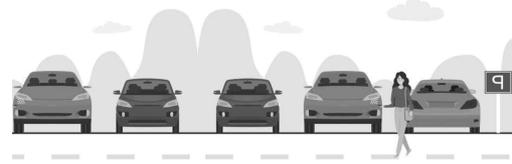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표 5.7	대안별 주차요금	98
표 5.8	카라반·캠핑카 종류	99
표 5.9	자동차 관리법의 신·구법 비교	100
표 5.10	자동차 관리법의 특수자동차 분류	100
표 5.11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현황	101
표 5.12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102
표 5.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	105
표 5.14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 면적의 비교	106
표 5.15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제원	106
표 5.16	캠핑용 자동차 주차요금	107
표 5.17	금지 체계 조정 분석지표	110
표 5.18	과정1 - 주차장별 금지 조정 결과	112
표 5.19	과정2 - 대안별 금지 조정 방법 예시	113
표 5.20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113
표 5.21	공영 노외주차장 없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114
표 5.22	대안별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115
표 5.23	인천시 금지별 기초구역 수	116
표 5.24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안)	116
표 6.1	서울특별시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	121
표 6.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121
표 6.3	싱가포르 단기 주차요금	125
표 6.4	싱가포르 정기권 주차요금	127
표 6.5	파리시 방문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5t 미만 경차)	128
표 6.6	뉴욕시 공영주차장 고정 주차요금	130
표 6.7	국내 주요 도시별 공영주차장 유·무료 현황	133
표 6.8	인천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현황과 계획	135
표 6.9	주차 시간 상한제 적용 개요	136
표 6.10	인천시 자치구별 노상주차 실태	137
표 6.11	국내 주요 도시의 1금지 월 정기권 요금	138

그림 차례

그림 1.1 인천시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의 변화	3
그림 1.2 연구의 배경	5
그림 1.3 연구의 목적	6
그림 1.4 연구의 공간 범위	7
그림 1.5 연구의 주요 내용	8
그림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비율(2020년)	12
그림 2.2 인천시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17
그림 2.3 인천시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18
그림 2.4 인천시 자치구별 공영/민영주차장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0
그림 2.5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급지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2
그림 2.6 인천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	23
그림 2.7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4
그림 2.8 인천시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5
그림 2.9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 추이	26
그림 3.1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주요 지표	32
그림 3.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의 주차 부문 계획 지표	34
그림 3.3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37
그림 3.4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	38
그림 3.5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39
그림 3.6 서울특별시 급지 구분도	43
그림 4.1 야간 박차 장소와 출근·등교 때 주차장소의 분포	58
그림 4.2 업무·쇼핑 통행의 주차장소와 유료 주차장 평균 주차시간 분포	59
그림 4.3 유료 주차장 이용 빈도와 이용 요금제 분포	59
그림 4.4 유료 주차장 이용 이유와 월간 주차요금 지불액 분포	60
그림 4.5 불법주차 장소와 불법주차 이유 분포	60
그림 4.6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 요금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61
그림 4.7 노외주차장 급지별 평균 총 유출입 대수	65
그림 4.8 노외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66
그림 4.9 노상주차장 급지별 평균 총 유출입 대수	70
그림 4.10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유출입 현황	71
그림 4.11 급지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75
그림 4.12 권역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75
그림 4.13 용도지역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76
그림 4.14 시간대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76
그림 4.15 급지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77



그림 4.16 권역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77
그림 4.17 용도지역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77
그림 5.1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 금지 체계 비교	86
그림 5.2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요금 체계 비교	86
그림 5.3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요금 비교(1금지 기준)	87
그림 5.4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 금지 체계와 요금 체계의 특징	87
그림 5.5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금지 정책 개선 내용	88
그림 5.6 부산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조정 내용	89
그림 5.7 광주시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 개선	90
그림 5.8 주차요금 조정 원칙	92
그림 5.9 요금 조정 방법	93
그림 5.10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93
그림 5.11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변화	94
그림 5.12 주차요금 인상 대안	95
그림 5.13 인천광역시 및 국내 주요 도시 주차요금 비교	96
그림 5.14 대안별 노외주차장 3시간 주차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99
그림 5.15 대안별 노상주차장 3시간 주차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99
그림 5.16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 추이	102
그림 5.17 캠핑카의 알박기 주차를 보도한 기사의 사례	103
그림 5.18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의견	104
그림 5.19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	105
그림 5.20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업시설의 예	107
그림 5.21 금지 체계 개선 방향	108
그림 5.22 금지 체계 조정 원칙	109
그림 5.23 AHP 분석 계층 구조	110
그림 5.24 주차 금지 지수 구성 요소별 가중치	111
그림 5.25 과정1 - 주차장별 금지 조정 결과	112
그림 5.26 과정2 - 대안별 금지 조정 방법 예시	112
그림 5.27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113
그림 5.28 기초구역별 금지 조정 결과	114
그림 5.29 대안 1 적용 금지 조정 결과	114
그림 5.30 대안 2 적용 금지 조정 결과	115
그림 5.31 대안 3 적용 금지 조정 결과	115
그림 6.1 부천시 무정차 출차 시스템 시연 현장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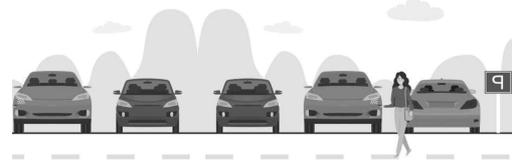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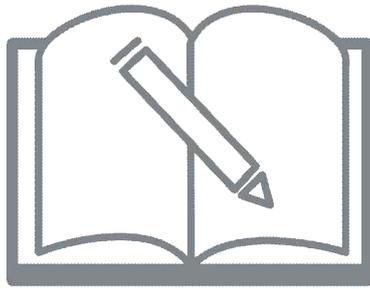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그림 6.2 부천시 무정차 출차 시스템 이용 절차	119
그림 6.3 서울특별시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	120
그림 6.4 스마트 주차 사례 (부천시 상살미마을)	122
그림 6.5 가로등 레이저 센서	123
그림 6.6 주차 공간 애플리케이션	123
그림 6.7 홍콩 민영주차장 위치	124
그림 6.8 홍콩 주차 공간 정보제공 웹사이트_노상주차장(2시간 기준 요금 표시)	124
그림 6.9 홍콩 주차 공간 정보제공 웹사이트_옥내주차장 (2시간 기준 요금 표시)	125
그림 6.10 싱가포르 주차요금 자동 징수 장치	126
그림 6.11 싱가포르의 주차요금 애플리케이션	126
그림 6.12 싱가포르의 주차요금 쿠폰	127
그림 6.13 스마트 주차 미터기	129
그림 6.14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 도로 위의 센서	129
그림 6.15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의 효과	130
그림 6.16 Greenwich Park Smart 시범 구역	131
그림 6.17 Park Smart 프로그램 주차구역	131
그림 6.18 뉴욕시의 주차요금체계와 Park Smart NYC의 효과	131
그림 6.19 주요 도시의 주차장 유료화 비율 비교	132
그림 6.20 무인 주차장에 대한 시민 인식	134
그림 6.21 인천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이용 방법	135
그림 6.22 인천시민의 불법주차 이유 분포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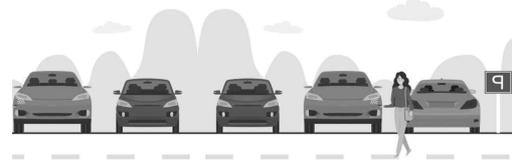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1

연구의 개요

- 가 연구의 배경
- 나 연구의 목적
- 다 연구의 범위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1. 연구의 개요

가 | 연구의 배경

P 도시·교통 환경의 변화 및 차량 대수 증가 등 주차 여건 변화

-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1.94%(2019년)로 가구당 자가용 자동차등록 대수 1.04대(2020년)에 비해 주차면 확보가 턱없이 부족함
 - 자동차 대수는 1999년 59만 대에서 2021년 167만 대로 2.8배 증가했고, 자동차 중 승용차는 1999년 42만 대에서 2021년 143만 대로 3.4배나 증가함
 - 주차면 수는 1999년 31만 면에서 2021년 139만 면으로 4.5배나 증가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1999년 52.2%에서 2021년 82.8%로 1.6배 증가하는 데 그침

그림 1.11 인천시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의 변화





표 1.1 | 인천시의 교통 환경과 주차 여건 변화

항목	1999년	2021년	변화
차량 수	59만 대	167만 대	2.8배
승용차 수	42만 대	143만 대	3.4배
주차단위구획 수	31만 면	139만 면	4.5배
주차장 확보율	52.2%	82.8%	1.6배

- 주차 공간의 물리적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지 체계와 요금체계가 필요함

P 1999에 책정된 요금체계와 금지 체계의 조정 현실화 필요

-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는 1999년에 4금지 체계와 현재의 요금 수준을 결정한 이후 20년 이상 변하지 않았고, 2012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4금지로 한 것이 조정의 전부임

표 1.2 | 인천시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 조정 경과(주요 조례개정 이력)

연도	금지 및 요금체계 조정 내용
1980.07.04.	주차장 조례 제정
1991.07.06.	금지 체계 조정(1, 2금지)
1998.05.11.	금지 체계 조정(1~3금지)
1999.08.16.	현행 요금체계로 개정(1~4금지, 1금지 30분 기준 1,000원)
2012.10.02.	현행 금지 체계로 개정(4금지: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80~2012)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난 20년 동안 물가, 지가 등의 변동과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주차장 이용 행태의 변화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P 합리적인 금지 체계 도입 필요

- 현재의 금지 체계는 토지이용 특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나 주차 행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금지 체계가 결정된 이후 인천광역시에는 다수의 도시철도가 개통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이 달라졌으며,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등의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바뀌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대중교통 이용 특성을 반영한 금지 조정이 필요함
- 현재의 금지 체계는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서 주차장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연구의 개요

P 공영주차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53.2%(2019년)에 그쳐 요금체계 및 관리·운영 측면의 한계 발생
- 공영주차장 이용률과 회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요금 및 금지 체계 개선과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필요

|그림 1.2| 연구의 배경





나 | 연구의 목적

P 인천시의 주차장 금지 체계 개선

- 인천시의 토지이용 현황과 도심 주차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금지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
- 현재의 토지이용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 금지 체계를 주차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해서 금지 체계를 조정

P 인천시 도시·교통 여건에 적합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기준 마련

- 인천광역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금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촉진을 유도함
- 주차요금을 다변화(주차 시간 상한제, 탄력요금제, 주간·야간 정기권 신설 등)하고 현실화하는 등 요금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함

|그림 1.3| 연구의 목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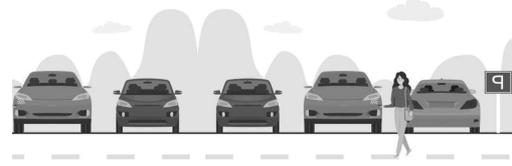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인천시 주차장 금지 체계 개선

토지이용 변화와 주차 여건 변화를 고려한 금지 체계의 합리적 개선
대중교통 이용 여건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금지 체계 개선

여건 변화에 적합한 주차장 요금 체계 마련

한정된 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 기준 마련
주차요금 다변화, 주차요금 현실화로 주차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

2



다 | 연구의 범위

P 공간 범위

- 옹진군과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과 행정구역이 연구의 공간 범위임

|그림 1.4 연구의 공간 범위



⚡ 시간 범위

- 연구의 기준 시점은 2020년이며, 가장 퇴근에 급지와 요금 체계가 결정된 1999년의 자료부터 활용함
-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요금 체계와 급지 체계는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며, 2024년 이후에 실행될 때는 적절한 보정을 한 후에 적용함

P 내용 범위

- 지역별 사회지표 현황(인구, 토지이용 등), 교통지표 현황(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망, 대중교통 등), 주차시설 현황 등의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일반현황을 조사·분석함
- 인천시의 주차장 관련 계획과 우리나라의 주차장 관련 법규, 인천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검토함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인천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주차장 유형별 회전율 등 주차장을 평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
-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와 금지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공영주차장 이용효율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함

그림 1.5 연구의 주요 내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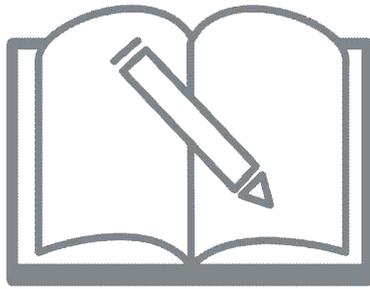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가 사회지표 현황

나 교통지표 현황

다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 현황

라 주차시설 현황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2.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가 | 사회지표 현황

1) 인구 현황

- 인천시의 인구는 2020년까지는 300만 명을 넘었으나 2021년 말에 되면서 294만 8,375명으로 소폭 감소해서 2016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0.36%임
- 인천시의 가구 수는 2018년 120만 가구를 넘은 후에 지속해서 증가해서 2021년 말에는 129만 8,647가구가 되었고, 2016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08%임
- 인천시의 인구밀도는 2016년 제곱킬로미터당 2,789명에서 연평균 0.17%씩 감소해서 2021년에는 제곱킬로미터당 2,765명이 됨

표 2.11 인천광역시 인구 및 가구 수 증감 추이

연도	총인구수(명)	가구 수(가구)	가구당 인구수(명/가구)	면적(km ²)	인구밀도(명/km ²)
2016년	3,002,172	1,171,399	2.56	1,076.40	2,789
2017년	3,011,138	1,188,917	2.53	1,063.09	2,832
2018년	3,022,511	1,213,201	2.49	1,062.40	2,845
2019년	3,029,285	1,238,641	2.45	1,063.26	2,849
2020년	3,010,476	1,267,956	2.37	1,065.23	2,826
2021년	2,948,375	1,298,647	2.27	1,066.46	2,765
연평균 증감률	-0.36%	2.08%	-2.38%	-0.19%	-0.17%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통계누리



2)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2020년 기준 1,106.30km²이며, 이 중 녹지지역이 293.65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함
-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변화폭이 크지 않으며, 미지정 용도가 26.88%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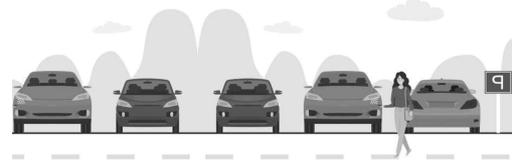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표 2.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증감 추이

연도	총면적 (km ²)	도시지역(km ²)						비도시지역 (km ²)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2016년	1,148.20	575.44	117.61	23.40	64.06	288.19	82.16	572.76
2017년	1,138.44	564.29	119.01	23.40	64.51	287.85	69.52	574.15
2018년	1,142.16	568.03	119.54	23.48	63.98	287.65	73.39	574.12
2019년	1,104.54	529.33	120.27	23.70	67.54	294.32	23.50	575.21
2020년	1,106.30	529.64	121.14	23.72	67.64	293.65	23.49	576.66
연평균 증감률	-0.93%	-2.05%	0.74%	0.34%	1.37%	0.47%	-26.88%	0.17%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그림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비율(2020년)





나 | 교통지표 현황

1) 자동차등록 대수 현황

- 인천광역시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167만 6,442대를 정점으로 2021년에는 167만 5,405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6년 이후 연평균 3.11%씩 증가함
- 차종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는 2016년 이후 각각 연평균 3.68%와 1.18%씩 증가했으나, 승합차와 특수차는 2016년 이후 각각 연평균 4.29%와 6.75%씩 감소함

표 2.3 인천광역시 자동차등록 대수 증감 추이

연도	총합계(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6년	1,437,373	1,191,581	56,399	183,445	5,948
2017년	1,510,319	1,260,876	55,526	187,537	6,380
2018년	1,577,607	1,324,817	54,173	191,826	6,791
2019년	1,635,323	1,383,849	51,756	192,622	7,096
2020년	1,676,442	1,426,203	49,339	193,261	7,639
2021년	1,675,405	1,427,281	45,292	194,526	4,194
연평균 증감률	3.11%	3.68%	-4.29%	1.18%	-6.75%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표 2.4 인천광역시 인구 및 가구 기준 자동차등록 대수(2021년)

구분	자동차등록 대수 (대)	인구 대비		가구수 대비	
		인구(명)	1인당 자동차등록 대수	가구수(가구)	1가구당 자동차등록 대수
합계	1,675,405	2,948,376	0.57	1,298,649	1.29
중구	80,677	143,633	0.56	71,061	1.14
동구	27,227	61,486	0.44	28,681	0.95
미추홀구	169,809	407,404	0.42	193,561	0.88
연수구	208,616	389,644	0.54	155,984	1.34
남동구	298,754	518,272	0.58	228,442	1.31
부평구	252,365	486,765	0.52	213,372	1.18
계양구	302,708	295,696	1.02	127,984	2.37
서구	269,792	555,380	0.49	232,834	1.16
강화군	52,791	69,693	0.76	34,667	1.52
옹진군	12,666	20,342	0.62	12,061	1.05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 1인 및 가구당 자동차등록 대수는 평균 0.57대와 1.29대임
- 계양구의 1인당 자동차등록 대수와 가구당 자동차등록 대수가 각각 1.02대와 2.37대로 가장 많음

2) 도로 현황

- 인천광역시의 전체 도로율은 감소하는 추세며, 특히 2020년을 기준으로 광로와 대로의 도로율이 많이 감소하고 중로 및 소로의 도로율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

표 2.5 인천광역시 너비별 도로 현황

연도	합계(m)	광로 (40m 이상)	대로 (25~40m 미만)	중로 (12~25m 미만)	소로 (12m 미만)
2016년	3,491,619	309,684	667,020	969,428	1,545,487
2017년	3,686,775	286,078	564,948	875,523	1,990,226
2018년	3,044,242	287,352	466,431	586,840	1,703,619
2019년	3,394,807	275,245	349,884	672,781	2,096,897
2020년	3,422,042	67,914	207,579	1,056,530	2,090,019
연평균 증감률	-0.50%	-31.59%	-25.31%	2.17%	7.84%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표 2.6 인천광역시 군·구별 너비별 도로 현황(2020년)

연도	합계(m)	광로 (40m 이상)	대로 (25~40m 미만)	중로 (12~25m 미만)	소로 (12m 미만)
중구	430,127	9,585	39,460	185,951	195,131
동구	55,276	1,400	690	22,321	30,865
미추홀구	483,329		4,980	74,937	403,412
연수구	286,629	13,305	27,163	128,529	117,632
남동구	524,157	12,967	22,710	139,905	348,575
부평구	254,445		17,520	88,547	148,378
계양구	213,518	5,960	25,672	69,696	112,190
서구	659,554	24,697	69,384	318,187	283,286
강화군	312,067			28,457	283,610
옹진군	166,940				166,940

자료 : 2021년 인천통계 연보



다 |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현황

P 급지 체계

-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급지는 1999년에 3급지 체계로 정해졌다가 2012년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4급지로 지정하면서 현재는 4급지 체계로 운영 중임
- 현재 인천시에는 1급지로 지정된 주차장이 18개소며, 2급지 주차장이 114개소, 3급지 주차장이 172개소, 4급지 주차장이 22개소임

표 2.7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동구 구월동(인천시청-인천터미널) • 부평구 부평동(부평역-부평구청)
2급지	1급지에 포함되는 교통혼잡구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급지	1, 2, 4급지 이외의 지역(환승주차장, 전통시장 포함)
4급지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2.4.21.(일부개정)

P 요금체계

-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15분마다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체계임
 -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기본요금은 1급지가 1,000원, 2급지가 600원, 3급지가 400원, 4급지가 300원임
 - 최초 30분 이후에 15분마다 부과되는 요금은 1급지가 500원, 2급지가 300원, 3급지 200원, 4급지 150원임
- 인천시에서는 1회 주차권 외에 전일 주차요금제와 월 정기권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권은 1회 주차권의 5시간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과 같으며, 월 정기권은 전일권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임



표 2.8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1회 주차권		전일 주차권	월 정기 자유이용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1급지	1,000	500	10,000	100,000
2급지	600	300	6,000	60,000
3급지	400	200	4,000	40,000
4급지	300	150	3,000	30,000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2.4.21.(일부개정)

P 요금 할인제도

-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주차한 경우,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은 100% 감면함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인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80% 감면(최초 1시간까지 면제)함
- 경형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60% 감면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월 정기 주차는 30% 감면),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을 갈아탄 경우,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최초 1시간은 무료),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때는 50% 감면함
- 주차 쿠폰으로 주차하거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최고 20% 감면함(월 정기 주차권 요금 제외)



라 | 주차시설 현황

1) 인천시 전체 주차장 공급현황

P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

-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가 전체 주차면 수 중 92.28%로 다른 유형의 주차장보다 현저히 비중이 높음
- 이에 반해, 노상주차장은 주차면 수가 약 6만 면으로 전체의 4.25%이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면 수가 약 4만 면으로 전체의 3.48%에 불과함

표 2.9 인천시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전체			
	주차장 개소	비율 (%)	주차면수	비율 (%)
계	69,672	100.00	1,429,962	100.00
노상주차장	1,793	2.78	60,731	4.25
노외주차장	934	1.34	49,707	3.48
부설주차장	66,945	95.88	1,319,524	92.28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2 인천시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P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

- 공영주차장이 총 2,387개소에 약 9만 면, 민영주차장은 전체 340개소 약 1만 면임

표 2.10 | 인천시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전체			
	주차장 개소	비율 (%)	주차면수	비율 (%)
계	2,727	100.00	110,438	100.00
공영주차장	2,387	87.53	92,999	84.21
민영주차장	340	12.47	17,439	15.79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3 | 인천시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공급현황

P 주차장 종류별 공급현황

- 인천시에서 주차면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약 33만 면의 주차면 수가 공급되는 서구임

| 표 2.11 |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유형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전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계	면	1,429,962	60,731	49,707	1,319,524
	개소	69,672	1,793	934	66,945
중구	면	97,650	2,724	11,328	83,598
	개소	5,576	114	198	5,264
동구	면	32,704	1,691	965	30,048
	개소	1,213	84	40	1,089
미추홀구	면	151,037	12,896	4,131	134,010
	개소	9,898	299	151	9,448
연수구	면	236,613	1,860	4,094	230,659
	개소	4,600	18	51	4,531
남동구	면	241,176	22,305	7,123	211,748
	개소	10,709	28	137	10,544
부평구	면	194,176	7,152	5,149	181,875
	개소	8,860	674	81	8,105
계양구	면	102,359	5,166	2,865	94,328
	개소	6,305	272	56	5,977
서구	면	339,269	6,832	6,708	325,729
	개소	14,535	303	120	14,112
강화군	면	17,817	105	4,841	12,871
	개소	4,384	1	64	4,319
옹진군	면	17,161	0	2,503	14,658
	개소	3,592	0	36	3,556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P 주차장 운영 형태별 공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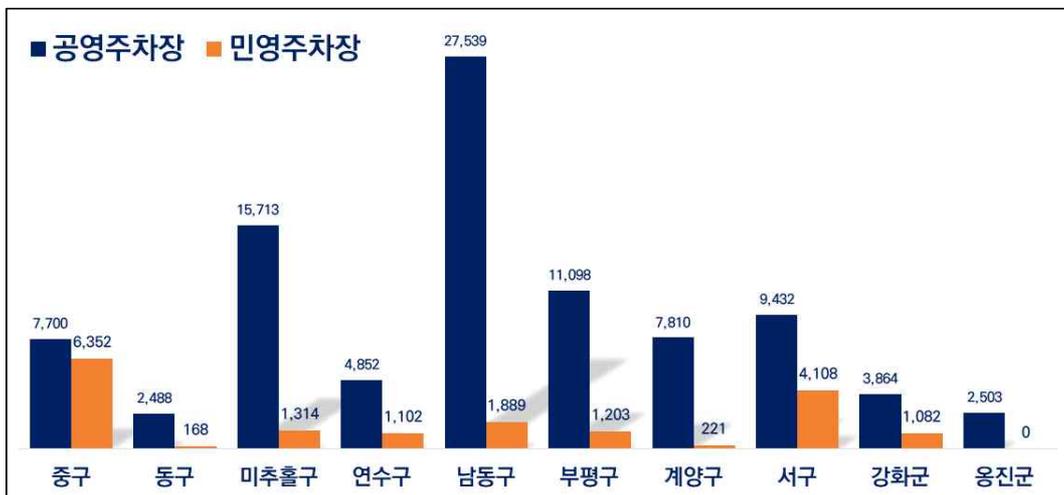
-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124개소의 주차장에 약 2만여 면의 주차면 수가 있는 남동구임

표 2.12 | 인천시 자치구별 운영 주체별 주차장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계		노상		노외		노외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합계	2,387	92,999	1,793	60,731	594	32,352	340	17,439
중구	184	7,700	114	2,724	70	4,980	128	6,352
동구	119	2,488	84	1,691	35	797	5	168
미추홀구	396	15,713	299	12,896	97	2,817	54	1,314
연수구	58	4,852	18	1,860	40	2,992	11	1,102
남동구	124	27,539	28	22,305	96	5,314	41	1,889
부평구	742	11,098	674	7,152	68	3,946	13	1,203
계양구	326	7,810	272	5,166	54	2,644	2	221
서구	362	9,432	303	6,832	59	2,600	61	4,108
강화군	40	3,864	1	105	39	3,759	25	1,082
옹진군	36	2,503	0	0	36	2,503	0	0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4 | 인천시 자치구별 공영/민영주차장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2.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 2021년 12월 말 기준 공영 노외주차장 594개소 중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335개소 2만 2,251면으로 전체 주차면 수의 68.78%이고,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259개소 1만 101면으로 전체 주차면 수의 31.38%임
- 유료 주차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전체 주차면 수의 23.88%인 5,314면을 유료로 운영하는 남동구임

표 2.13 |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유·무료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공영 노외주차장								
	계			유료			무료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면	비율(%)		면	비율(%)		면	비율(%)
합계	594	32,352	100	335	22,251	68.78	259	10,101	31.22
중구	70	4,980	100	24	3,163	14.22	46	1,817	17.99
동구	35	797	100	3	162	0.73	32	635	6.29
미추홀구	97	2,817	100	76	2,636	11.85	21	181	1.79
연수구	40	2,992	100	16	1,731	7.78	24	1,261	12.48
남동구	96	5,314	100	96	5,314	23.88	0	0	0
부평구	68	3,946	100	51	3,724	16.74	17	222	2.20
계양구	54	2,644	100	38	2,390	10.74	16	254	2.51
서구	59	2,600	100	16	1,237	5.56	43	1,363	13.49
강화군	39	3,759	100	10	1,139	5.12	29	2,620	25.94
옹진군	36	2,503	100	5	755	3.39	31	1,748	17.31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P 공영 노외주차장 급지별 공급현황

-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총 594개소, 3만 2,352면을 시설공단, 구·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관리함
 - 1급지 18개소(2,094면), 2급지 114개소(10,376면), 3급지 171개소(9,835면), 4급지 22개소(528면)로 2급지에 있는 주차면 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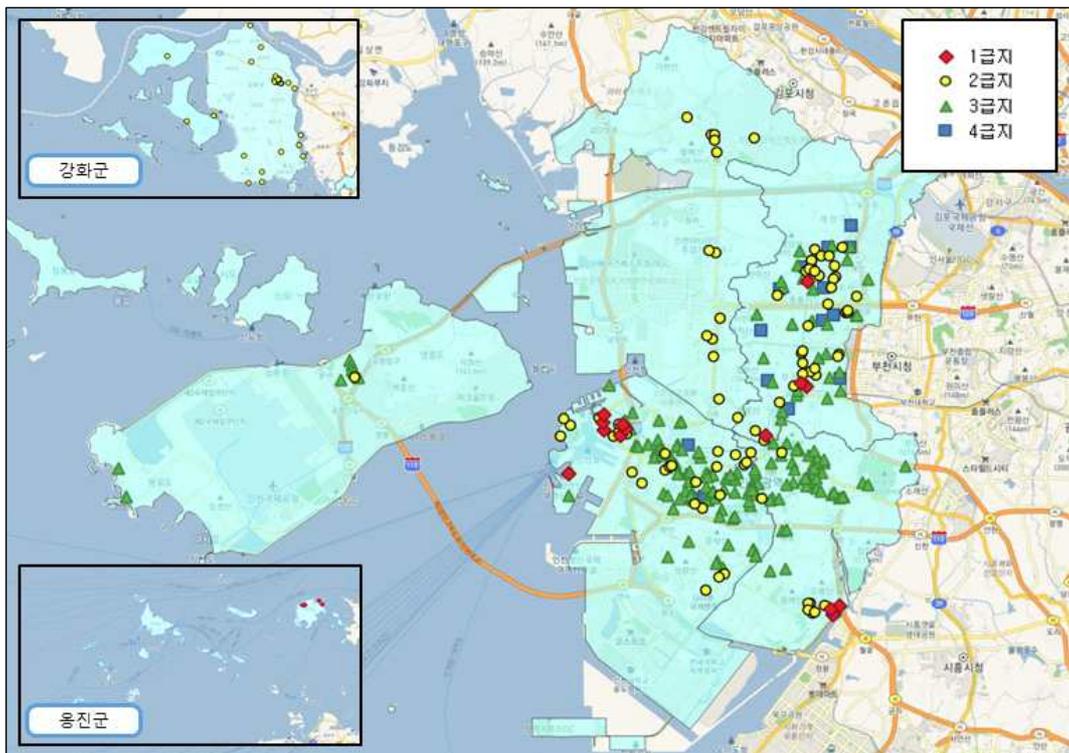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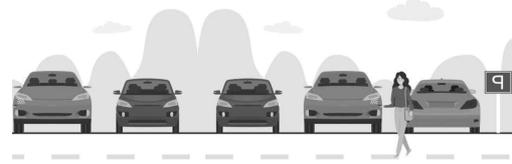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표 2.14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금지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계		1금지		2금지		3금지		4금지		기타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합계	594	32,352	18	2,094	114	10,376	172	9,835	22	528	268	9,519
중구	70	4,980	7	741	10	872	14	1,893	0	0	39	1,474
동구	35	797	0	0	0	0	3	162	0	0	32	635
미추홀구	97	2,817	0	0	15	817	61	1,809	3	53	18	138
연수구	40	2,992	0	0	3	362	11	1,062	0	0	26	1,568
남동구	96	5,314	3	441	8	1,256	53	3,122	0	0	32	495
부평구	68	3,946	3	212	17	1,759	19	1,377	12	376	17	222
계양구	54	2,644	1	15	18	1,333	11	410	7	99	17	787
서구	59	2,600	0	0	14	1,134	0	0	0	0	45	1,466
강화군	39	3,759	0	0	29	2,843	0	0	0	0	10	916
옹진군	36	2,503	4	685	0	0	0	0	0	0	32	1,818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5 인천시 공영 노외주차장 금지별 공급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3) 인천시 주차장 확보율 현황

P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

- 연도별 자동차등록 대수는 연평균 2.75%씩 증가했으며, 주차면 수는 연평균 4.10%씩 증가함
- 인천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 100%를 넘은 후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05.46%나 됨

표 2.15 | 인천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추이

연도	자동차등록 대수(대)	주차면수(면)	주차장 확보율 (주차면수/자동차등록 대수)
2017년	1,216,647	1,217,585	100.08%
2018년	1,263,704	1,284,526	101.65%
2019년	1,289,481	1,310,507	101.63%
2020년	1,318,740	1,351,796	102.51%
2021년	1,355,909	1,429,962	105.46%
증가율	2.75%	4.10%	1.32%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6 | 인천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



P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

- 인천시 자치구 중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142.90%로 가장 높고, 연수구, 동구 순으로 높음
-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자치구는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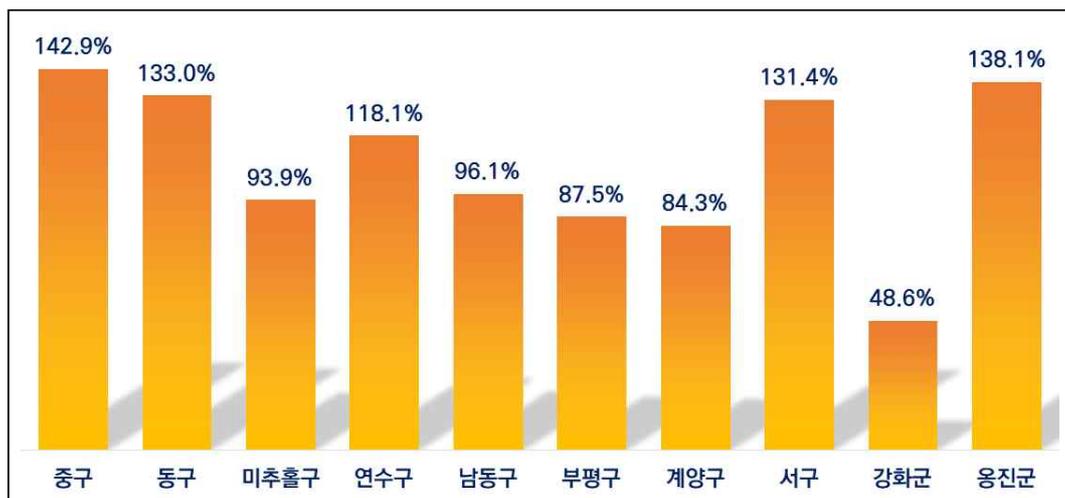


표 2.16]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자동차등록 대수(대)	주차면 수(면)	주차장확보율 (주차면 수/자동차등록 대수)
합계	1,355,909	1,429,962	105.46%
중구	68,333	97,650	142.90%
동구	24,585	32,704	133.02%
미추홀구	160,913	151,037	93.86%
연수구	200,401	236,613	118.07%
남동구	250,956	241,176	96.10%
부평구	221,895	194,176	87.51%
계양구	121,491	102,359	84.25%
서구	258,231	339,269	131.38%
강화군	36,673	17,817	48.58%
옹진군	12,431	17,161	138.05%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7]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P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현황

-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주택, 빌라 등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약 85만 면임
- 인천시 내 자치구 중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자치구는 중구 (120.79%)이 유일하며, 나머지 자치구의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은 100% 미만임



2.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의 평균(74.29%)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자치구는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등 5개 자치구임
- 주거지역의 약 26%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난을 겪음

표 2.17 | 인천시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구분	자가용 승용차(대)	주거지 부설주차장 주차면수(면)	주차장확보율 (주차면수/자가용 승용차)
합계	1,153,744	857,073	74.29%
중구	57,620	69,599	120.79%
동구	19,588	16,597	84.73%
미추홀구	138,214	100,409	72.65%
연수구	184,022	165,933	90.17%
남동구	214,042	131,076	61.24%
부평구	192,359	129,144	67.14%
계양구	95,526	62,995	65.95%
서구	218,795	163,649	74.80%
강화군	25,566	10,095	39.49%
옹진군	8,012	7,576	94.56%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그림 2.8 | 인천시 자치구별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4)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공급현황

P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현황

- 2016년 이후 인천시의 카라반은 연평균 27.6%씩 증가했고, 캠핑카는 연평균 42.0%씩 증가함(카라반과 캠핑카를 합치면 연평균 30.9%씩 증가함)

|표 2.18|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현황

연도	카라반(대)	캠핑카(대)	계
2016년	278	71	349
2017년	387	110	497
2018년	508	154	662
2019년	607	182	789
2020년	737	289	1,026
증가율	27.60%	42.04%	3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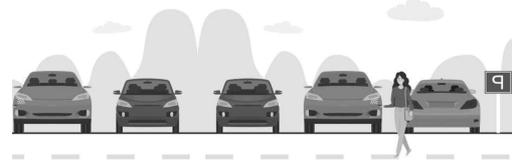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연도별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록 현황(2021)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e-나라지표)

|그림 2.9|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 추이



P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과 조성계획

- 인천시에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카라반·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총 4개소가 있으며, 주차면 수는 총 170면임
-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카라반·캠핑카 전용 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1개소, 유료로 운영 중인 곳이 3개소임



2. 도시·교통 여건과 주차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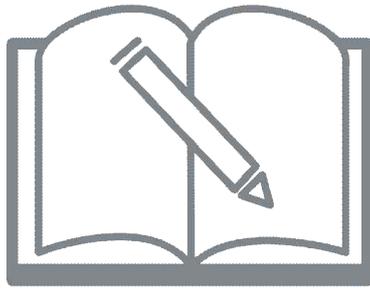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 유료로 운영되는 3개소는 모두 월정기권으로만 운영되며,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다양함

표 2.19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구분	주차장 명	주차면 수		요금 (월 정기권)	관리	급지	개장
		전체	캠핑카용				
남동구	소래제3복합 공영주차장	100	80	60,000원	남동구도시관리공사	2급지	2018.12.
	소래습지생태공원 캠핑카 주차장	266	27	80,000원	인천대공원사업소	미지정	2021. 3.
계양구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	201	17	90,000원	인천시설공단	1급지	2021. 7.
연수구	달빛축제공원 주차장	152	46	무료	경제자유구역청	미지정	2022. 1.
계	3개소	719	170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 인천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주차장(37면), 계양대교 북단 하부주차장(22면), 원창동 381-40부지 공영주차장(100면) 등 3개소(159면)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329면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임
-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이 총 1,026대로 인천시의 계획대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더라도 캠핑카 주차장 확보율이 32.1%에 불과함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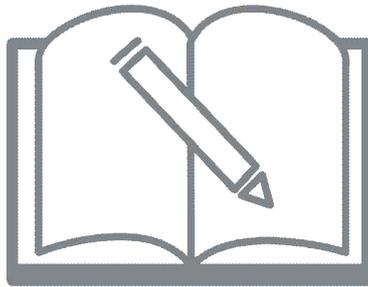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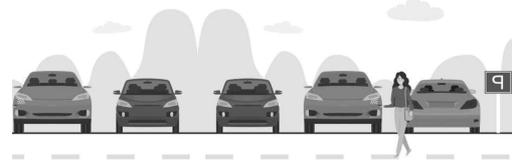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가 관련 계획

나 관련 법규

다 국내 주요 도시 주차 금지 및 요금 현황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가 | 관련 계획

1)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P 중심지 체계

-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공간구조를 설정함
- GTX 기반의 광역교통 중심,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중심, 지역별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해서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으로 설정함
- 지구 중심은 시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근린 생활의 기반이 되도록 함
- 인천시의 도시공간은 4개의 도심과 3개의 부도심으로 계획함

P 교통계획 기본방향

- 인천 중심의 철도망과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기반을 마련함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함
-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과 주차문화를 조성함
 - 원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조성함

P 교통계획의 주요 지표

- 2020년 18.4%에 불과한 버스 수단 부담률을 2040년까지 25.0%까지 높이고, 녹색교통의 부담률을 2020년 55.0%에서 80.0%까지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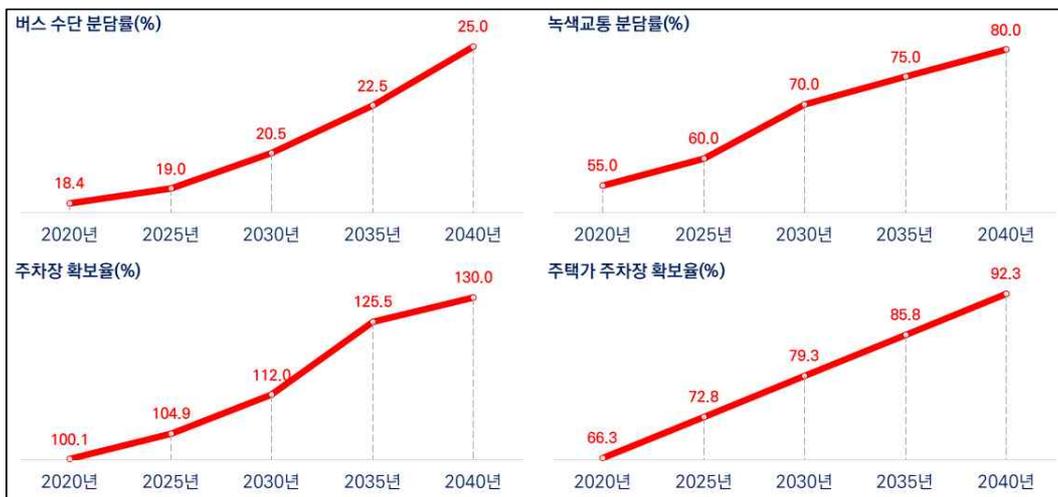
- 주차장 확보율을 2020년 100.1%에서 2040년 130.0%까지 올리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20년 66.3%에서 2040년 82.3%까지 올림

표 3.1 |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주요 지표

계획지표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버스 수단 분담률(%)	18.4	19.0	20.5	22.5	25.0
녹색교통 분담률(%)	55.0	60.0	70.0	75.0	80.0
주차장 확보율(%)	100.1	104.9	112.0	125.5	130.0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66.3	72.8	79.3	85.8	92.3

출처 :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그림 3.1 |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주요 지표



P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및 주차문화 조성 추진전략

- 원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함
 -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과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함
 - 원도심의 유휴부지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과 간선도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린파크 사업을 확대함
 - 단기적으로 주차장 공급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가, 도심 등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차시책을 도입함
- 선진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 앱을 개발하고 단속 처분기준을 정립하며, 생활도로의 주차문화를 개선함
 -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주차위반 시민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시민신고 앱을 개발함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 스마트 드론을 활용해서 무인 주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함
-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생활권 도로 유향발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함
- 블록 단위의 마을 주차공동체를 지원함

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2017~2036)

P 비전과 정책방향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행복한 교통, 지속가능한 교통, 사람우선 미래교통 3가지를 정책의 목표로 함

P 주차 부문 계획 지표

- 인천 도시교통 종합계획에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2017년 66.3%에서 매년 1.3%씩 증가시켜서 2036년에 91.0%까지 올리고, 37.0%인 주차장 유료화 비율을 2036년까지 90.0%로 올리는 것 등을 계획 지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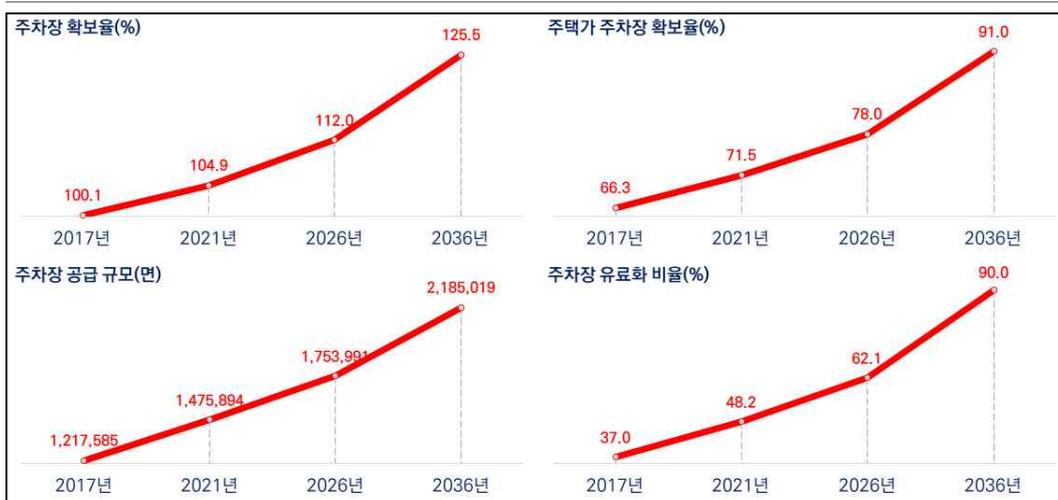
표 3.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의 주차 부문 계획 지표

구분	현황 (2017년)	지표설정			설정근거
		단기 (2021년)	중기 (2026년)	장기 (2036년)	
주차장 확보율(%)	100.1	104.9	112.0	125.5	목적통행량 산정을 통한 적정 주차장 확보율 목표치 제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66.3	71.5	78.0	91.0	연 1.3% 증가
주차장 공급 규모(면)	1,217,585	1,475,894	1,753,991	2,185,019	자동차 증가율 고려 주차장 확보율 목표치 도달 수준 공급
주차장 유료화 비율(%)	37.0	48.2	62.1	90.0	연 2.8% 유료화

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그림 3.2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의 주차 부문 계획 지표



P 주차 부문 목표 및 전략

- 주차 부문의 계획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차 공급과 운영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교통 공간을 조성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2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마을 공동주차장 시범 조성 등 25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표 3.3 추진과제 및 전략

전략	추진과제	목표
1. 합리적 주차 공급 및 운영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교통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주차장 시범 조성 • 주차장공급 다양화 • 간선도로 지하 주차장 시범 조성 • 간선도로변 시간제 주차 검토 • 환승주차장 확충 •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확대 • 그린파킹 사업 확대 •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 노상주차장 유료화 • 주차장 금지·요금체계 개선 • 주차장 시간 상한제 도입 •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정책 개선 • 중·장기 주차시책 도입 연구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주차 허가제 도입 • 주차장 분류분양제 도입 검토 • 주차상한제 도입 검토 •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 • 도로 기능 및 교통혼잡 고려 등급별 단속 시행 • 무인단속 장비 단속기준 통일 • 스마트폰 활용 단속 앱 개발 및 처분기준 정립 • 불법 주·정차 전문 단속기관 설립 검토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제도 개선 • 이면도로 소방차 통행로 정비 • 블록 단위 마을 주차공동체 지원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 구축
2. 첨단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통체계의 이동성·안전성·편의성 향상		

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P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 인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주차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도로 공간의 공공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도로폭별, 지역 특성별로 단계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임
 -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순으로 단계별로 유료화를 추진함
 -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 여건 등 교통 특성에 따라 15m 이하 생활권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심 1급지 지역(상업지역)부터 주택가 지역까지 단계별로 유료화함
 - 주택가 지역은 양호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함께 유료화함
- 노상 주차구획을 정비해서 노상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통환경개선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서 노상주차 환경을 개선함

P 주차장 금지·요금체계 개선

- 대중교통 이용 특성,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장 회전율 및 이용률을 고려해서 주차장 금지와 요금체계를 개선함

표 3.4 인천광역시 금지 선정기준 개선(안)

구분	금지 선정기준		1급지 지역 재선정방안
	기존	신규	
1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의 중심상업지역 및 교통 혼잡 관리지역 [부평, 구월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석, 관교, 주안 일원 추가 확대 	
2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회전율이 낮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 •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지하철역 주변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 및 준주거지역 	
3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지, 2급지, 4급지 이외의 지역 		
4급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 주차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개선함
 - 입차 후 30분 단위 요금 부과를 폐지하고 1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함
 - 전일 요금 주차 상한 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함
 - 24시간 이상 연속 주차 차량은 1일 전일 요금에 단위 누적 요금을 적용함



-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공영 노외주차장은 입차 후 20분 무료 주차를 허용함

P 주차장 시간 상한제 도입

-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 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서 주차수요를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1급지에서 전일권(선불)과 월 정기권 등의 등록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08:00~22:00(15시간)에는 최대 주차 허용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함

표 3.5 주차 시간 상한제 적용 개요

대상차량	상한제 시행 시간	상한 시간	비고
등록 차량 외 모든 차량	08:00~22:00 (15시간)	최대 3시간	22:00 이후 주차 차량은 다음 날 08:00 이전 출차

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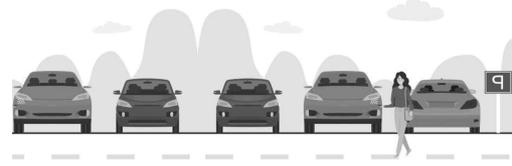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 1급지(부평, 구월 권역) 중심상업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함
- 전통시장 등 상업지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함
- 금지 재조정에 따른 1급지 전역(간석, 관교, 주안 권역)으로 시행을 확대함

P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주차 허가제 도입

-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 허가제를 도입함
- 1급지 지역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선정기준(15km/h 이하, 1일 3회 이상)에 따른 인천광역시 상습 정체 구간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등록된 차량 외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 허가제 도입을 추진함(조례 제정)
 - 등록 차량은 구간 내 거주자, 상업시설 조업 등록 차량, 사전에 신고된 단기 주차 차량으로 한정함
- 주차 허가제 세부 시행 요일과 시간 등은 인천광역시 1급지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함

P 주차상한제 도입 검토

- 주차장 공급 규정 강화 등 주차수요관리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도입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공급 상한 계획을 마련함
- 시범사업부터 시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함
 - 1급지 중심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전통시장 등 상업지역 주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밀집되는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적용될 필요가 있음



3)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2021~2025)

- 인천시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민원의 22.1%고(인천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지만,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1.94%에 그쳐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함
-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53.2%, 회전율은 3.0(대/면)으로 답보상태여서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주차정책이 필요함

P 비전 및 정책 목표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비전은 주차 스트레스 없는 선진 혁신도시를 실현하는 것이고, 추진 목표는 주차장 확보,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4가지임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은 현재 61.94%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2025년까지 74%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함

|그림 3.3|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비전	주차스트레스 없는 선진 혁신도시 실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확보) 주차가 편안한 도심환경 조성 2.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쉽게 찾아 편하게 이용하는 주차시스템 구축 3. (공영주차장 서비스 개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차 서비스 제공 4. (불법 주·정차 해소)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통한 민원해소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61.94%^(19년) → 74%이상^(25년) 개선”</p>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P 추진 방향

- 인천시 주차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6개 부서 3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면서 주차 문제를 종합적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함
- 인천시의 주차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에 걸쳐 11개 핵심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2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문제와 관련한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하여 추진함
 - 주차와 관련된 문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다양한 세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2019년 61.94%인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2025년까지 74%로 높이려고 함



표 3.6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주차장 확보율 목표

2019년 주차장 확보율	2025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목표
전체 : 101.6% (1,309,960면) 주택가 : 61.94% (311,231면)	전체 : 110% (1,426,000면) 연평균 1.5% 증가 주택가 : 74% (372,000면) 연평균 2.0% 증가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그림 3.4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4대 분야 11개 핵심과제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5개소의 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해서 총 2만 4,200면의 주차단위구획을 확충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5년간 총 5,2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3.7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개소 수	30	30	31	32	32	155
면수	4,697	4,767	4,839	4,912	4,985	24,200
예산액(억 원)	1,021	1,036	1,052	1,068	1,083	5,260

자료 :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그림 3.5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4) 인천광역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거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구역별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 등을 파악해서 주차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됨

P 과업의 배경

- 주차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함
 - 무질서한 주차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시설의 운영효율 극대화, 체계적 활용이 필요함
-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함
 - 자동차 등록정보와 주차시설 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현장 상황에 근거한 주차정책 수립, 주차장공급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함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주차 수급 실태조사의 법적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주차시설이나 주차수요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주차개선계획 등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수급 실태조사가 필요함



P 주차 수급 실태조사 실시현황

- 인천시에서는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실태조사를 시행함에 따른 부작용¹⁾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지침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모든 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함

| 표 3.8 | 2020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현황

구분	조사 기간	주차장 수급률 분석				불법 주정차분석	
		등록 대수 기준		실태조사 기준		주간/야간	
		동별	블록별	동별	블록별	동별	블록별
중구	2020.10.10. ~2021.04.21	○	×	○	○	○	×
동구	2020.08. ~2020.10.	×	×	○	○	○	○
미추홀구	2020.07.30. ~2020.10.16.	○	×	○	○	○	○
연수구	2020.07.19. ~20.08.25.	○	×	○	○	○	○
남동구	2020.06.17~202 0.12.15	○	×	○	○	×	×
부평구	2019.07.22. ~2019.10.11.	○	×	○	○	×	×
계양구	2020.06.10. ~20.10.20.	×	×	○	○	×	×
서구	2020.08. ~2020.11.	×	×	○	○	×	×
강화군	2021.05. ~2021.06.	×	×	○	○	○	○
옹진군	-	-	-	-	-	-	-

자료 : 인천시 각 군·구별 주차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1) 자치구별 주차수급실태조사의 시기 및 분석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적인 주차관련 계획 수립이 어려움.(서울특별시 2016년부터 일괄 시행하고 있음)



나 | 관련 법규

1) 주차 금지 관련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인천시 조례의 "별표1"에서 정의하고 구분함

[표 3.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별표1]-금지 정의 및 구분 관련 조항
<p><비고></p> <p>1. 금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1금지 :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남동구 구월동(인천시청-인천터미널), 부평구 부평동(부평역-부평구청))</p> <p>나. 2금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p> <p>다. 3금지 : 1금지, 2금지, 4금지 이외의 지역(환승주차장, 전통시장 포함)</p> <p>라. 4금지 :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p> <p>마.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교통혼잡, 주차수요, 토지이용도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를 조정할 수 있음</p>

2) 주차요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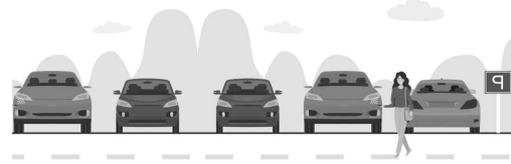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노상주차장 관리자)' 등 주차장 관리자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함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 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에서 주차요금의 요금 및 징수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 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에서 주차요금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주차상한제 관련

- 주차상한제의 지정 및 시행은 "주차장법"에 근거함
- "주차장법" 제12조 제6항과 주차장법 제19조 제10항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제3항에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 국내 주요 도시 주차 금지와 요금 현황

1) 서울특별시

P 금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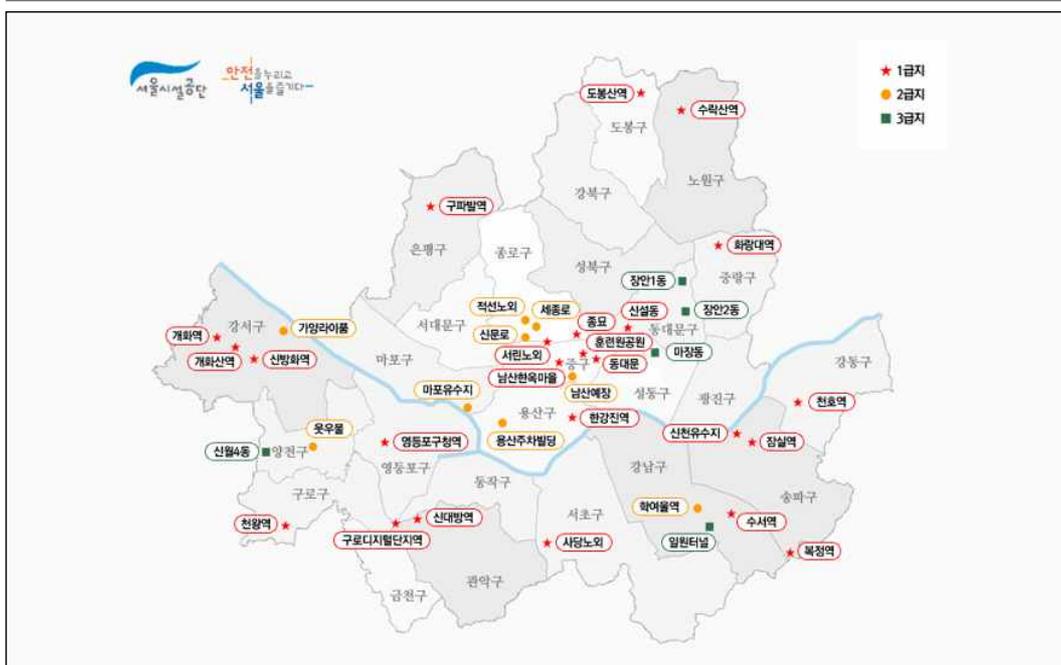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5급지 체계였으나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3급지 체계로 구분함
-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급지는 도시철도 역과 관계를 고려해서 정한 것이 특징임

표 3.10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있는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있는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30.(일부개정)

그림 3.6 | 서울특별시 급지 구분도



자료 :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guidance/info.jsp)



P 요금체계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5분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함
- 노상주차장의 공시지가 변수가 1일 경우 1금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하면 5분당 500원이 적용되어 1시간을 기준으로 1급지는 6,000원임

표 3.11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 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 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금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금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금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금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있는 법정동 평균 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마다 산정하여 적용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30.(일부개정)

P 할인제도

- 장애인, 상이자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는 80% 할인함
 -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함
- 경형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 할인함
 -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고, 1일 1회 주차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함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함
- 녹색 교통진흥 특별대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때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정산기에서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함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차량은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함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할 때와 일·월 정기권은 50%를 경감함
-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중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함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최초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50% 할인(1급지 제외)함
-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때 1시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함
 - 1시간 초과할 때부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함
- 보훈 보상대상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과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10% 내에서 할인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함
 -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은 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 수단을 등록해서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함
- 참전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함

2) 부산광역시

P 급지 체계

-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4급지 체계이며, 1급지를 가급과 나급으로 상세 구분하고 있어 실제로는 5급지 체계임
-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급지를 구분하고, 3급지로 도심 외 지역 중 역세권을 고려한 것이 특징임

표 3.12]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가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등에 있는 주차장 중구 :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부산진구 : 부전1·2동
	나 도심지역(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중 아래 등에 있는 주차장 중구: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동구: 초량1·2·3동, 범일2동 부산진구: 범천1동 연제구: 연산4·5동 동래구: 온천1동 북구: 구포1동, 덕천2동 해운대구: 우1·2·3동, 중1동, 좌1·2동 사하구: 하단1·2동 수영구: 광안2동 사상구: 괘법동
2급지	도심지역 중 아래 지역을 제외한 주차장 1급지(가) 1급지(나) 서구 감천항 배후지역 및 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사상구 관내 공업지역
3급지	역세권주차장(1급지(가)·1급지(나)·2급지에 설치된 역세권주차장을 제외한다)
4급지	1급지(가)·1급지(나)·2급지·3급지 이외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29.(일부개정)



P 요금체계

-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구분되며, 1시간 기준 1급지 '가'급의 경우 4,200원, 1급지 '나'급은 3,000원, 2급지는 1,800원, 3급지는 1,200원, 4급지는 60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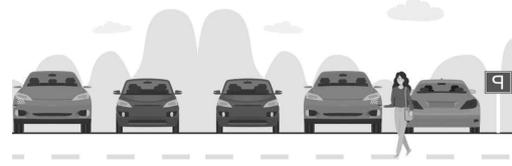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표 3.13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시간제 주차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주차	
			주간	야간
1급지(가)	700	21,000	220,000	90,000
1급지(나)	500	15,000	160,000	80,000
2급지	300	8,000	90,000	70,000
3급지	200	4,700	환 승: 35,000 비환승: 50,000	환 승: 25,000 비환승: 40,000
4급지	100	2,400	30,000	22,000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29.(일부개정)

P 할인제도

- 46**
- 공무수행 중인 부산시 소유의 자동차 등의 주차요금은 면제함
 -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은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는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자 표창을 받은 자는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는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 성실납세자는 1년간 면제
 - 전통시장의 이용한 사람은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50% 경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는 50% 경감
 -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일·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 경감
 -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는 50% 경감(월 주차는 20% 경감)
 -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 공헌자는 50% 경감
 -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50% 경감(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1시간은 주차요금 면제)
 - 부산광역시 공예 명장은 50% 경감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는 50% 경감
- 우수 자원봉사자는 1년간 50% 경감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 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는 면제
-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면 50% 경감

3) 대구광역시

P 금지 체계

- 대구광역시의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3급지 체계며, 도시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급지 체계를 구분한 것이 특징임

표 3.14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 도시계획선 2차 순환선	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반고개네거리~원대오거리~오봉오거리~북침산네거리~성북교~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대봉네거리~명덕네거리
	-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중 동구 일부 지역, 남구 일부 지역, 수성구 일부 지역	- 수성시장네거리~우방공전맨션삼거리~범어네거리~남부상가시장~효신네거리~경북수협네거리~파티마삼거리~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 - 내당네거리~성당시장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안지랑네거리~앞산네거리~영대네거리~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
2급지	-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앞산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평리네거리~만평네거리~침산교~복현오거리~큰고개오거리~효목네거리~만촌네거리~황금아파트~중동교~대구지방보훈청~앞산네거리
	-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외곽지 부도심권 동구 안심 지역 북구 칠곡 지역 수성구 일부 지역 서구, 달서구 일부 지역	- 반야월삼거리~울하역~반야월네거리~각산네거리~반야월삼거리 - 칠곡IC네거리~매천로~시지고교~거동교~관음로~칠곡IC네거리 - 신매네거리~사직당삼거리~시지고교~옥수로~매호초교~고산3동사무소~신매네거리 - 중동네거리~수성못네거리~범물네거리~햇빛길~무학2길~두산오거리~황금네거리~들안길네거리~중동네거리 - 남평리네거리~단산네거리~용산지하차도~계명문화대~신당네거리~성서네거리~성서IC~남대구IC~분리네거리~분리공원삼거리~학산네거리~월촌역~상인네거리~진천네거리~대곡공원~대곡중교~대곡초교~가람마을~월곡네거리~월곡로~월촌고가교~앞산순환도로~대덕초교~구승마장길~성당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두류네거리~남평리네거리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10.(일부개정)

P 요금체계

-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10분 단위로 세분되며 1시간 기준 1급지는 2,500원, 2급지는 1,500원, 3급지는 1,000원임



- 대구광역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금지 체계와 무관하게 단일 요금체계로 한 것이 특징임

표 3.15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월 정기 자유이용권	
	최초 30분	30분 초과 10분마다		주간	야간
1금지	1,000	500	10,000	100,000	75,000
2금지	600	300	6,000	80,000	60,000
3금지	400	200	4,000	40,000	30,000
공영주차장	공원시설로 조성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에는 1천 원, 2시간을 초과하면 2천 원으로 함(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제외)				

자료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1.12.10.(일부개정)

P 할인제도

- 긴급자동차. 공무용 자동차, 성실 납부자(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자동차,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
 - 우수자원봉사자는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한 사람을 말하며, 1일 1회 4시간 이내에서 면제함
- 장애인이 함께 탄 자동차 등은 1일 1회에 한해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주차요금과 일·월 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병역명문가, 의상자
- 경차 등은 주차요금의 60% 할인
 - 경차, 시장이 지정한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충전을 위해 주차한 전기자동차는 최초 1시간 면제)
-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 등은 주차요금의 50% 할인
 -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한 차량,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비사업용 차량 한정)

4) 대전광역시

P 금지 체계

-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3금지 체계였으나 2016년 7월 1일부터 4금지 체계로 변경함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대전시 공영주차장의 급지 체계는 도시철도와 버스 접근성, 토지이용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임

표 3.16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 월평 지역 : 월평로, 월평중로, 한밭대로570번길, 한밭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 둔산 지역 : 둔산대로, 문예로, 문정로, 둔산로, 둔지로, 한밭대로, 한밭대로707번길, 청사로123번길, 월평북로, 대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 용문 지역 : 유등로, 계룡로, 도솔로, 용문로, 도산로369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 유성 지역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2급지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은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지역 대지 - 원도심 지역 : 우암로, 보문로, 보문로291번길, 선화서로, 대흥로66번길, 테미로, 대흥로, 대종로, 충무로와 대전역 및 철도노선을 포함한 내부지역 대지 - 용전동 지역 : 한밭대로, 동서대로, 동서대로1683번길, 동서대로1678번길, 계족로392번길, 동대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 만년동 지역 : 둔산대로, 대덕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둔산대로117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 탄방·괴정동 지역 : 갈마역로, 둔산로, 둔산서로, 문정로, 탄방로, 계룡로583번길, 계룡로, 계룡로500번길, 대덕대로162번길, 대덕대로161번길, 계룡로416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대지 - 서대전 지역 : 오룡역주변 상업지역 대지, 계룡로, 동서대로1322번길, 선화로로 연결한 내부 근린생활시설대지, 계룡로, 중앙로, 대흥로, 대흥로24번길, 계룡로929번길, 계룡로904번안길, 계룡로904번길, 계백로1686번길, 계백로, 계룡로874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3급지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 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4급지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차장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2021.10.1.(일부개정)

P 요금체계

-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1시간 기준 1급지는 1,900원, 2급지는 1,300원, 3급지는 900원, 4급지는 600원임

표 3.17 대전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구획 당 10분 기준)	1일 주차권	정기 주차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10분마다			주간	야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2021.10.1.(일부개정)



P 할인제도

- 긴급자동차, 공무용 자동차, 성실 납세증 부착 자동차,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함
- 상이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형 자동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
-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충전은 최초 1시간 면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200m 이내 상가 이용했을 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보훈 보상대상자는 50% 할인함

5) 울산광역시

P 금지 체계

-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금지는 2금지 체계이며,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임

표 3.18 |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구분	내용
1금지	중구, 남구, 동구(주전동 제외), 북구(강동동 제외) 전 지역
2금지	동구 주전동, 북구 강동동, 울주군 전 지역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0.9.24.(일부개정)

P 요금체계

-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10분 단위로 구분되며, 1시간 기준 1급지는 1,000원, 2급지는 600원임

표 3.19 |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기본 최초 30분 이내 (구획당)	기본 초과 매 30분 단위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2급지	300	100	200	300	6,000	50,000	30,000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0.9.24.(일부개정)

P 할인제도

- 긴급자동차와 공무용 자동차,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는 1시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한 요금과 일·월 정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함
-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함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함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함
 -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함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함
- 투표 확인증(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의 주차요금 2,000원을 덜어 줌
-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해 정상 주차요금의 50%를 덜어줌
- 다자녀 사랑 카드에 등재된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요금 60%를 할인함
-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덜어줌
 -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때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함
- 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덜어 줌

6) 광주광역시

P 금지 체계

-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의 급지는 3급지 체계에서 최근 4급지 체계로 변경함
- 광주광역시의 금지 체계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특징임

표 3.20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구분

구분	내용
1급지	도시철도 1호선 및 2호선과 접하거나 시내버스 등에의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조례에 정하는 지역 - 동구 : 총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서남동, 학동, 지산1동 - 서구 : 양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치평동, 상무1동, 상무2동, 화정1동, 화정2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 남구 :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2동, 주월1동, 효덕동 - 북구 : 중흥2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문흥2동, 일곡동 - 광산구 : 송정2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2급지	1급지 외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 동구 : 지원1동, 지원2동, 지산2동 - 서구 : 화정4동, 동천동 - 남구 : 사직동, 백운1동, 주월2동 - 북구 : 중흥1동, 풍향동, 문흥1동, 두암1동, 두암2동, 건국동 - 광산구 : 송정1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2동 단, 주월2동, 중흥1동은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적용하고 화정3동은 2급지로 적용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4급지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차장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2021.2.25.(일부개정)



P 요금체계

-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0분 단위로 구분되며, 1시간 기준 1급지는 2,000원, 2급지는 1,300원, 3급지는 950원, 4급지는 700원임

[표 3.21]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권	정기 주차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10분마다			주간	야간
1급지	500	300	500	12,000	130,000	100,000
2급지	300	200	300	8,000	90,000	70,000
3급지	200	150	250	6,000	66,000	52,000
4급지	200	100	200	4,000	44,000	30,000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2021.2.25.(일부개정)

할인제도

-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
- 장애인, 상이자는 면제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1시간 주차요금 면제(1시간 초과와 일·월 정기권은 50% 경감)
- 모범 납세 표창을 받은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경감
- 저공해자동차, 무형문화재 보유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전통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은 주차요금의 50% 경감(전기자동차는 충전하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7)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 금지 및 요금 특성

- 서울시는 3급지, 대전시는 4급지, 대구시는 3급지, 울산시는 2급지, 부산시는 4급지, 광주시는 4급지 체계임
- 서울시와 광주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금지를 정함
- 서울시와 부산시는 환승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 50%를 할인함
-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할인함
 - 서울시 : 주차요금 50% 할인(1급지 제외)
 - 대전·울산·부산·광주시 : 주차요금 50% 할인
 - 대구시 : 주차요금 60% 할인
-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을 금지와 무관하게 단일 요금체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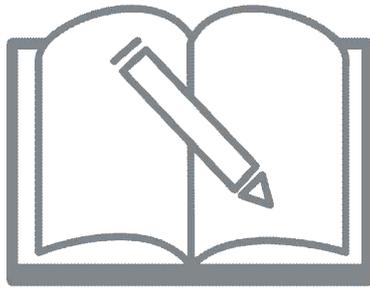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3. 주차장 관련 계획 및 법·제도

- 최초 요금 기준은 서울시 5분, 대전·부산·광주시 10분, 대구·울산시 30분임
- 1급지를 기준으로 1시간당 주차요금은 서울시가 6,000원으로 가장 높고, 울산시가 1,000원으로 가장 낮음

표 3.22 국내 주요 도시 별 급지 체계와 주차요금

구분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급지 체계		3	4	3	2	4	4
1급지 주차 요금	최초	5분	10분	30분	30분	10분	10분
		500원	400원	1,000원	500원	가:700원 나:500원	500원
	추가	5분	10분	10분	30분	10분	10분
		500원	300원	500원	500원	가:700원 나:500원	300원
1시간 요금		6,000원	1,900원	2,500원	1,000원	가 : 4,200원 나 : 3,000원	2,000원

자료 : 국내 주요 도시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연구자가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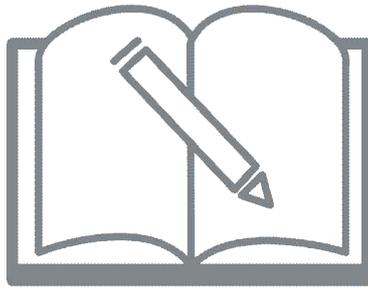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가 인천시민 공영주차장 이용의식
- 나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다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가 | 인천시민 공영주차장 이용의식

1) 조사의 개요

- 인천시민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주정차 행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천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천시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요 조사항목은 통행 목적별 주차장소와 유료주차장 이용실태, 불법 주정차 실태,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 등임
 - 통행 목적별 주차장소는 거주지 야간 주차 장소, 등교 또는 출근지의 주차장소, 업무와 쇼핑 등을 위한 주차장소를 조사함
 - 유료주차장 이용실태는 유료 주차장 이용 이유, 유료 주차장 이용 빈도, 유료주차장 이용 요금제, 월간 유료주차장 이용금액 등을 조사함
 -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조사는 불법주차하는 장소,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유 등을 조사함
 -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은 인천시의 주차요금 인상 필요성과 주차요금 인상 수준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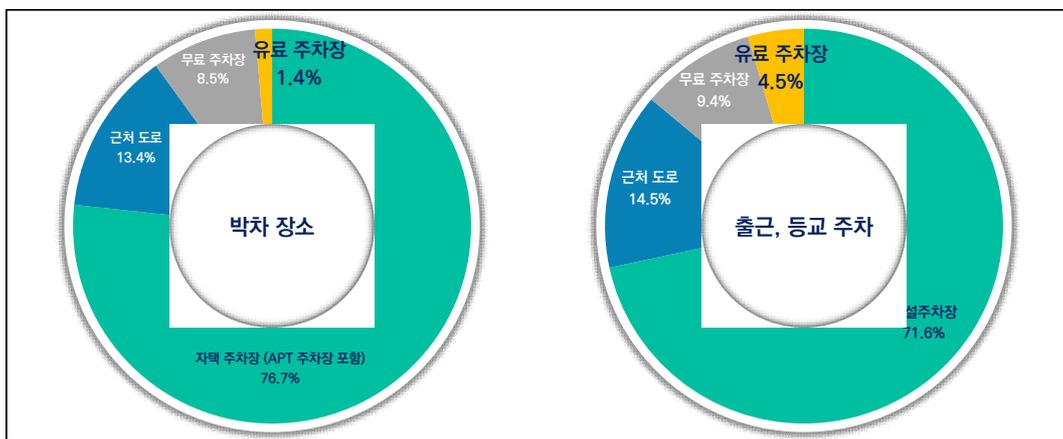
2) 통행 목적별 주차장소

- 자택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주차할 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퇴근 이후 야간 주차 장소로는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자택 주차장이 76.7%로 대부분이며,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함



- 야간에 자택 근처 도로에 주차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3.4%고, 주변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8.5%임
- 출근 또는 등교한 후에 주차하는 장소는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71.6%로 대다수며,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함
- 출근과 통학 주차의 14.5%는 근처 도로에 주차하고, 근처의 무료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9.4%임

그림 4.11 야간 주차 장소와 출근·등교 때 주차장소의 분포



- 58
- 업무나 쇼핑 등과 같은 비 출퇴근 목적의 통행을 할 때는 목적지의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69.6%로 가장 많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4.4%에 불과함
 - 업무나 쇼핑 통행에서 근처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와 근처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12.8%와 13.2%임

3) 유료 주차장에 대한 의견

- 유료 주차장에 주차할 때 평균 주차시간이 1시간 이하인 응답자가 71.6%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14.5%로 2시간 이하 주차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6.1%가 됨
-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서 2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9%에 불과하며, 특히 5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람은 4.5%에 불과함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주 2회 또는 3회 이상인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의 29.7%에 불과하고, 나머지 70.3%는 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간제 요금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5.8%로 대다수고, 종일권 이용자 8.4%, 월정기권 이용자 5.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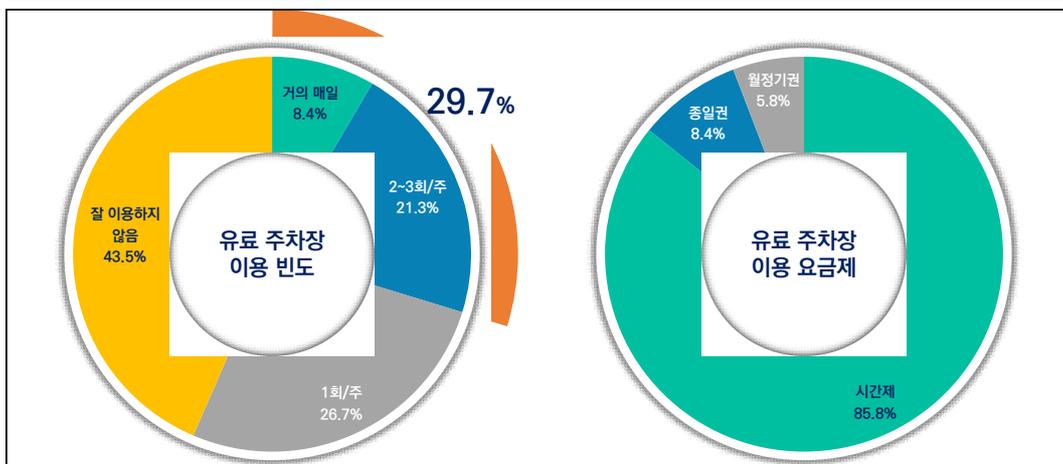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그림 4.2 | 업무·쇼핑 통행의 주차장소와 유료 주차장 평균 주차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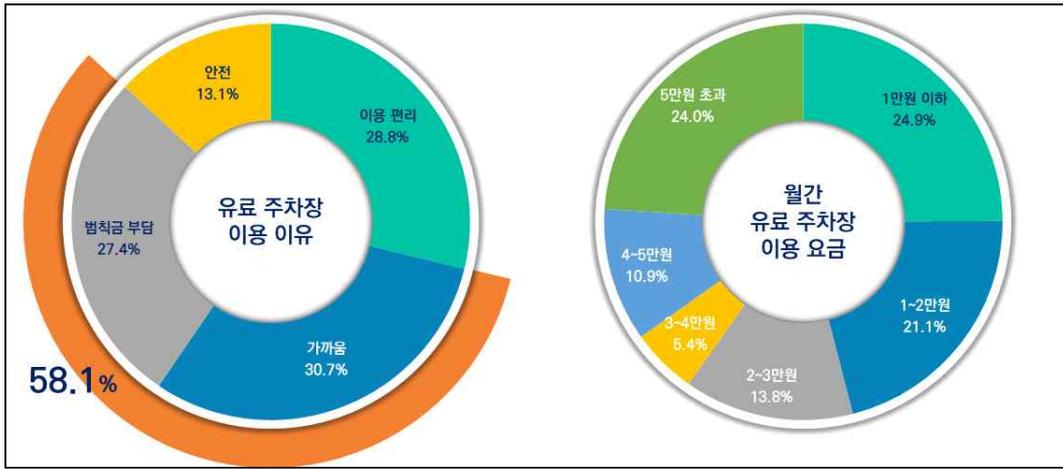
그림 4.3 | 유료 주차장 이용 빈도와 이용 요금제 분포



-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8.1%가 유료 주차장이 목적지와 가깝거나 범칙금이 부담되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공급하면 지금보다 주차장 이용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지와 가깝기 때문(30.7%)이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 주차하는 경우가 27.4%임
 -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13.1%, 유료 주차장이 편리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8.8%임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출하는 돈은 월간 1만 원 이하가 24.9%로 가장 많고 월간 5만 원을 초과해서 요금을 내는 사람도 24.0%나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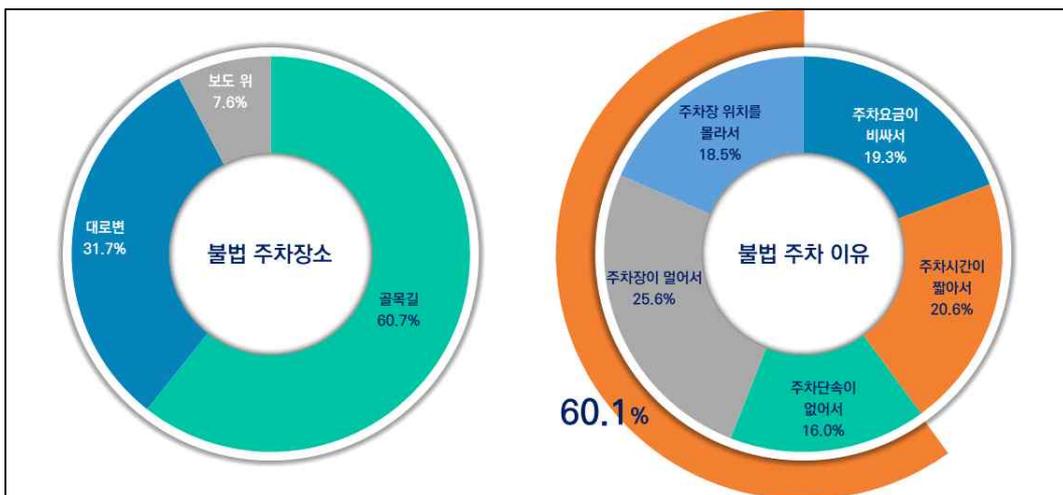
그림 4.4 유료 주차장 이용 이유와 월간 주차요금 지불액 분포



4)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

- 불법으로 주차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은 골목길(60.7%)이며, 대로변에 주차하는 사람이 31.7%, 보도 위에 주차한다는 사람도 7.6%나 됨
-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인 60.1%는 주차장의 위치를 모르거나 주차장이 멀어서, 그리고 주차단속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어 주차장을 적정 장소에 공급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면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주차요금이 비싸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19.3%에 불과함

그림 4.5 불법주차 장소와 불법주차 이유 분포



5) 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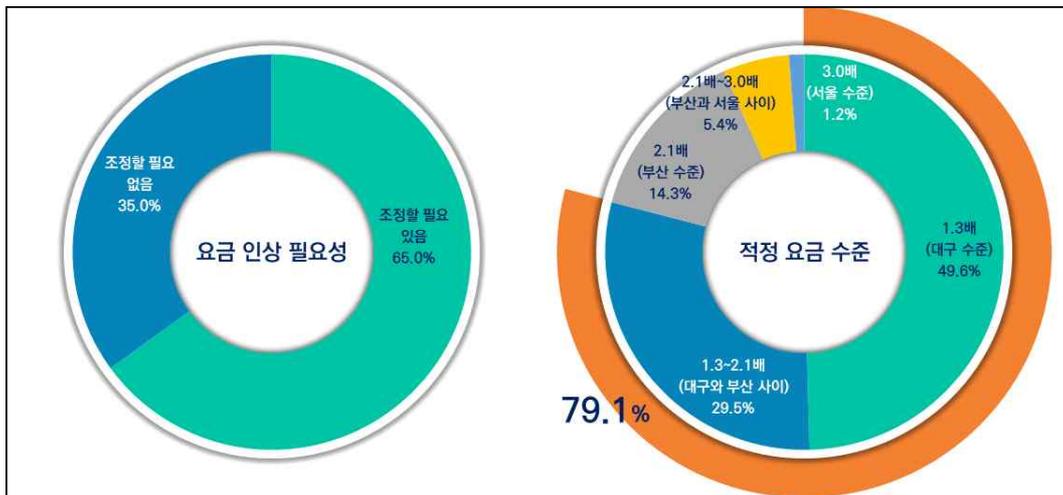
- 서울, 부산, 대구의 주차요금과 인천의 주차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의 주차요금 인상 필요성을 물었으며, 응답자의 65.0%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응답자의 79.1%는 대구와 비슷한 수준 또는 대구와 부산 사이 정도의 요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함
 - 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의 요금보다 1.3배 인상해야 하고,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의 요금보다 2.1배 인상해야 함

그림 4.6 |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 요금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6)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 시민들의 유료 주차장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유료 주차장을 자주 이용(주 2회 이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에 그침
- 유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1시간 이하의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따라서 대다수 사람은 시간제 주차요금제를 이용함
- 주차요금이 부담되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 미만이고 주차장과 목적지가 멀거나 주차장의 위치를 모르고 단속이 없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므로,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면서 불법단속을 강화하면 유료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음
- 인천시의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대구 수준(1.3배) 또는 대구와 부산(2.1배) 사이 수준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임



나 |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1)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개요

P 조사 개요

- 이 조사는 인천시 내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공간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어 전수 조사하지 못하고 표본 조사했으며,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유출입정보가 수집되는 주차장은 주차관제 시스템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함
- 인천시 각 자치구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블록별 주차장 수급률이 평균값 미만인 블록이 조사 대상이며, 관리주체가 인천시나 각 자치구인 유료 공영주차장만 분석함
- 조사 기간은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이며, 많은 주차장이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서 평일에만 조사하고 분석함
-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고려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주차장의 운영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 차량 유출입 대수, 주차장 기본정보(주차 금지, 주차면 수, 운영시간 등)를 조사함
- 조사 대상 주차장은 금지별, 권역별, 용도지역별로 유형을 구분함

P 표본 선정 방법

- 각 자치구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블록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고, 출입구가 2개 이상인 노외주차장과 주차면 수가 하위 30%에 해당하는 주차장, 주차장 이용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월 정기 등록 차량 전용 주차장과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함
- 용도지역별 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조사함
 - 주차장의 용도지역이 중복되고 주차장 밀도가 높은 곳은 주차면 수가 가장 많은 주차장을 기준으로 분석함
- 주차장 권역별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4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생활권을 구분함
- 유료로 운영 중인 총 33개소(노외 17개소, 노상 16개소)의 공영주차장의 시간대별 유출입 차량 대수를 조사함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표 4.1 | 표본 설계

구분	내용	
조사 근거	주차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 공간	인천시 내 주차 수급률이 행정동 단위 평균값 미만인 블록	
2) 조사 대상	소유 주체가 인천시와 자치구인 유료 공영주차장	
2) 조사 방법	관측조사 및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 조사	
4) 조사 기간	관측조사(21개소)	2022년 4월 6일 ~ 2022년 4월 12일 (총 5일)
	주차관제 시스템(12개소)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5) 조사 시간	오전 8시 ~ 오후 9시 (총 13시간)	

| 표 4.2 | 주차장 표본 특성

구분		노외		노상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급지별	1급지	2	11.76	1	6.25
	2급지	11	64.71	10	62.50
	3급지	4	23.53	5	31.25
권역별	중부권	7	41.18	11	68.75
	서남권	0	0.00	1	6.25
	동남권	3	17.65	1	6.25
	동북권	7	41.18	1	6.25
	서북권	0	0.00	2	12.50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9	52.94	9	56.25
	상업지역	5	29.41	6	37.50
	공업지역	2	11.76	1	6.25
	녹지지역	1	5.88	0	0.00
전체		17	100.00	16	100.00



표 4.3 | 조사 절차

조사원 선정	조사원 선발
↓	
조사원 교육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조사내용을 숙지
↓	
본 조사	조사원이 현장에서 조사 실시
↓	
검증 및 편집	조사된 관측지를 전수 검토 및 편집을 통해 전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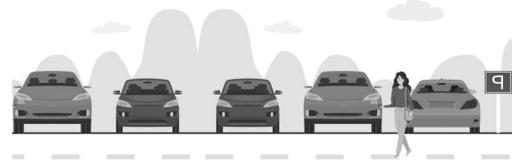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2)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P 노외주차장

- 조사 대상 전체 노외주차장의 평균 유출입 차량은 221.94대임
- 금지별로는 2금지, 1금지, 3금지 순으로 유출입 교통량이 많으며, 권역별로는 동북권, 중부권, 동남권 순,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유출입 교통량이 많음

표 4.4 | 노외주차장 유형별 유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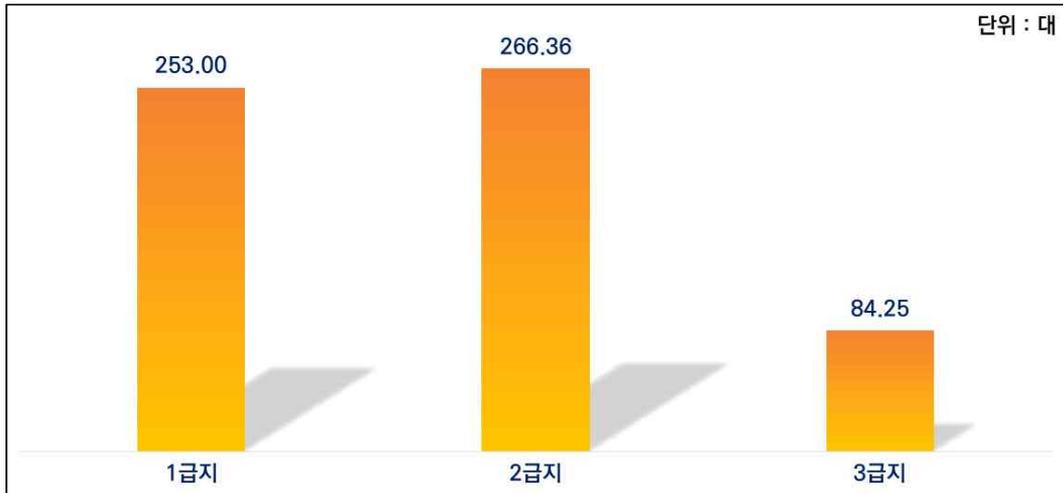
구분		유출입 차량 대수(A)	주차장 개소 수(B)	평균(A/B)
금지별	1금지	506	2	253.00
	2금지	2,930	11	266.36
	3금지	337	4	84.25
권역별	중부권	1,563	7	223.29
	서남권			
	동남권	544	3	181.33
	동북권	1,666	7	238.00
	서북권			
용도지역 별	주거지역	1,608	9	178.67
	상업지역	1,741	5	348.20
	공업지역	274	2	137.00
	녹지지역	150	1	150.00
전체		3,773	17	221.94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유입 차량은 12시~13시가 평균 22.6대로 가장 많고 유출 차량은 16시~17시가 평균 22.8대로 가장 많음

|그림 4.7| 노외주차장 급지별 평균 총 유출입 대수



|표 4.5| 노외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구분	유입		유출	
	합계	평균	합계	평균
8:00~9:00	165	9.7	83	4.9
9:00~10:00	204	12.0	110	6.5
10:00~11:00	243	14.3	164	9.6
11:00~12:00	338	19.9	213	12.5
12:00~13:00	385	22.6	332	19.5
13:00~14:00	320	18.8	305	17.9
14:00~15:00	382	22.5	350	20.6
15:00~16:00	332	19.5	382	22.5
16:00~17:00	357	21.0	388	22.8
17:00~18:00	287	16.9	363	21.4
18:00~19:00	221	13.0	262	15.4
19:00~20:00	133	7.8	199	11.7
20:00~21:00	69	4.1	191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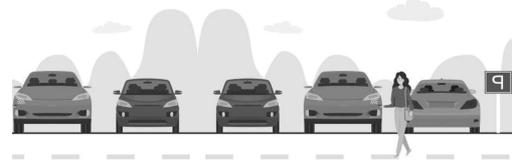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그림 4.8| 노외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표 4.6| 금지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금지별			
		1금지	2금지	3금지	합계
8:00~9:00	유입	4	139	22	165
	유출	6	50	27	83
9:00~10:00	유입	5	185	14	204
	유출	5	88	17	110
10:00~11:00	유입	28	205	10	243
	유출	2	152	10	164
11:00~12:00	유입	64	258	16	338
	유출	11	183	19	213
12:00~13:00	유입	104	252	29	385
	유출	51	256	25	332
13:00~14:00	유입	78	223	19	320
	유출	74	203	28	305
14:00~15:00	유입	52	305	25	382
	유출	84	239	27	350
15:00~16:00	유입	47	267	18	332
	유출	80	283	19	382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표 계속 | 금지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금지별			
		1금지	2금지	3금지	합계
16:00~17:00	유입	31	301	25	357
	유출	60	304	24	388
17:00~18:00	유입	31	235	21	287
	유출	42	308	13	363
18:00~19:00	유입	18	189	14	221
	유출	25	221	16	262
19:00~20:00	유입	8	116	9	133
	유출	22	174	3	199
20:00~21:00	유입	4	51	14	69
	유출	9	178	4	191

| 표 4.7 | 권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권역별					합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8:00~9:00	유입	37	0	17	111	0	165
	유출	30	0	12	41	0	83
9:00~10:00	유입	50	0	31	123	0	204
	유출	30	0	18	62	0	110
10:00~11:00	유입	79	0	51	113	0	243
	유출	30	0	36	98	0	164
11:00~12:00	유입	167	0	37	134	0	338
	유출	56	0	37	120	0	213
12:00~13:00	유입	194	0	43	148	0	385
	유출	137	0	42	153	0	332
13:00~14:00	유입	156	0	35	129	0	320
	유출	136	0	37	132	0	305



| 표 계속 | 권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권역별					합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14:00~15:00	유입	168	0	51	163	0	382
	유출	181	0	43	126	0	350
15:00~16:00	유입	143	0	48	141	0	332
	유출	179	0	37	166	0	382
16:00~17:00	유입	169	0	48	140	0	357
	유출	179	0	56	153	0	388
17:00~18:00	유입	129	0	49	109	0	287
	유출	156	0	38	169	0	363
18:00~19:00	유입	86	0	43	92	0	221
	유출	115	0	34	113	0	262
19:00~20:00	유입	57	0	22	54	0	133
	유출	86	0	23	90	0	199
20:00~21:00	유입	34	0	17	18	0	69
	유출	82	0	28	81	0	191

| 표 4.8 | 용도지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용도지역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8:00~9:00	유입	64	87	7	7	165
	유출	33	38	0	12	83
9:00~10:00	유입	83	104	10	7	204
	유출	42	57	5	6	110
10:00~11:00	유입	114	120	5	4	243
	유출	75	81	2	6	164
11:00~12:00	유입	132	181	17	8	338
	유출	77	123	6	7	213
12:00~13:00	유입	193	178	8	6	385
	유출	149	167	12	4	332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표 계속 | 용도지역별 노외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용도지역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3:00~14:00	유입	151	142	24	3	320
	유출	153	135	9	8	305
14:00~15:00	유입	153	183	40	6	382
	유출	186	141	16	7	350
15:00~16:00	유입	147	149	26	10	332
	유출	177	157	43	5	382
16:00~17:00	유입	132	166	50	9	357
	유출	169	181	33	5	388
17:00~18:00	유입	115	125	33	14	287
	유출	146	163	51	3	363
18:00~19:00	유입	87	115	8	11	221
	유출	104	124	28	6	262
19:00~20:00	유입	45	68	12	8	133
	유출	73	109	15	2	199
20:00~21:00	유입	20	12	23	14	69
	유출	55	120	14	2	191

P 노상주차장

- 전체 조사 대상 노상주차장의 평균 유출입은 323.63대임
- 급지별로는 2급지, 1급지, 3급지 순으로 유출입양이 많고, 권역별로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순으로 유출입 교통량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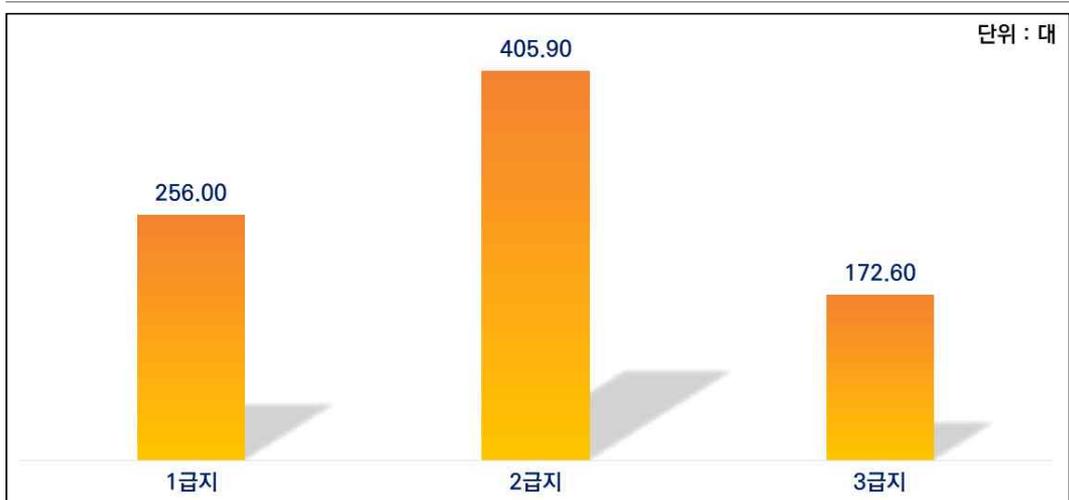


표 4.9 노상주차장 유형별 유출입 현황

구분		유출입 차량 대수(A)	주차장 개소 수(B)	평균(A/B)
금지별	1금지	256	1	256.00
	2금지	4,059	10	405.90
	3금지	863	5	172.60
권역별	중부권	1,960	11	178.18
	서남권	623	1	623.00
	동남권	458	1	458.00
	동북권	767	1	767.00
	서북권	1,370	2	685.00
용도지역 별	주거지역	3,652	9	405.78
	상업지역	1,400	6	233.33
	공업지역	126	1	126.00
	녹지지역	0	0	
전체		5,178	16	323.63

- 노상주차장의 유입 차량은 14시~15시가 평균 32.7대로 가장 많고, 유출 차량은 15시~16시가 평균 29.1대로 가장 많음

그림 4.9 노상주차장 금지별 평균 총 유출입 대수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그림 4.10|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유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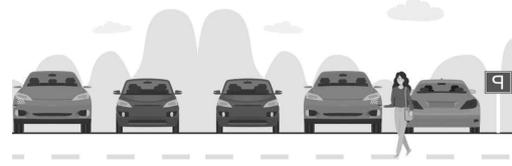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표 4.10| 노상주차장 시간대별 총 유출입 현황

구분	유입		유출	
	합계	평균	합계	평균
8:00~9:00	186	11.6	139	8.7
9:00~10:00	417	26.1	233	14.6
10:00~11:00	411	25.7	362	22.6
11:00~12:00	398	24.9	336	21.0
12:00~13:00	369	23.1	362	22.6
13:00~14:00	316	19.8	401	25.1
14:00~15:00	523	32.7	339	21.2
15:00~16:00	382	23.9	466	29.1
16:00~17:00	348	21.8	362	22.6
17:00~18:00	407	25.4	348	21.8
18:00~19:00	372	23.3	346	21.6
19:00~20:00	252	15.8	234	14.6
20:00~21:00	161	10.1	216	13.5



[표 4.11] 금지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금지별			
		1금지	2금지	3금지	합계
8:00~9:00	유입	9	139	38	186
	유출	4	113	22	139
9:00~10:00	유입	16	337	64	417
	유출	10	191	32	233
10:00~11:00	유입	23	337	51	411
	유출	21	306	35	362
11:00~12:00	유입	23	303	72	398
	유출	17	269	50	336
12:00~13:00	유입	15	292	62	369
	유출	18	284	60	362
13:00~14:00	유입	23	249	44	316
	유출	21	317	63	401
14:00~15:00	유입	20	423	80	523
	유출	21	276	42	339
15:00~16:00	유입	29	307	46	382
	유출	28	370	68	466
16:00~17:00	유입	13	292	43	348
	유출	17	299	46	362
17:00~18:00	유입	28	320	59	407
	유출	23	273	52	348
18:00~19:00	유입	22	270	80	372
	유출	24	239	83	346
19:00~20:00	유입	11	202	39	252
	유출	13	177	44	234
20:00~21:00	유입	16	118	27	161
	유출	22	156	38	216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표 4.12 권역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구분		권역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합계
8:00~9:00	유입	65	26	12	29	54	186
	유출	51	15	11	21	41	139
9:00~10:00	유입	131	65	35	68	118	417
	유출	73	33	23	35	69	233
10:00~11:00	유입	144	65	35	46	121	411
	유출	115	55	24	51	117	362
11:00~12:00	유입	176	41	22	55	104	398
	유출	136	43	17	50	90	336
12:00~13:00	유입	131	45	30	71	92	369
	유출	131	55	29	36	111	362
13:00~14:00	유입	134	34	21	33	94	316
	유출	155	45	29	74	98	401
14:00~15:00	유입	171	74	34	93	151	523
	유출	115	47	30	45	102	339
15:00~16:00	유입	122	47	47	68	98	382
	유출	164	53	38	80	131	466
16:00~17:00	유입	115	35	46	46	106	348
	유출	114	52	26	63	107	362
17:00~18:00	유입	153	57	52	61	84	407
	유출	140	44	32	48	84	348
18:00~19:00	유입	174	26	24	36	112	372
	유출	167	20	23	35	101	346
19:00~20:00	유입	91	36	23	38	64	252
	유출	90	35	23	33	53	234
20:00~21:00	유입	69	27	23	14	28	161
	유출	89	48	28	17	34	216



표 4.13] 용도지역별 노상주차장 유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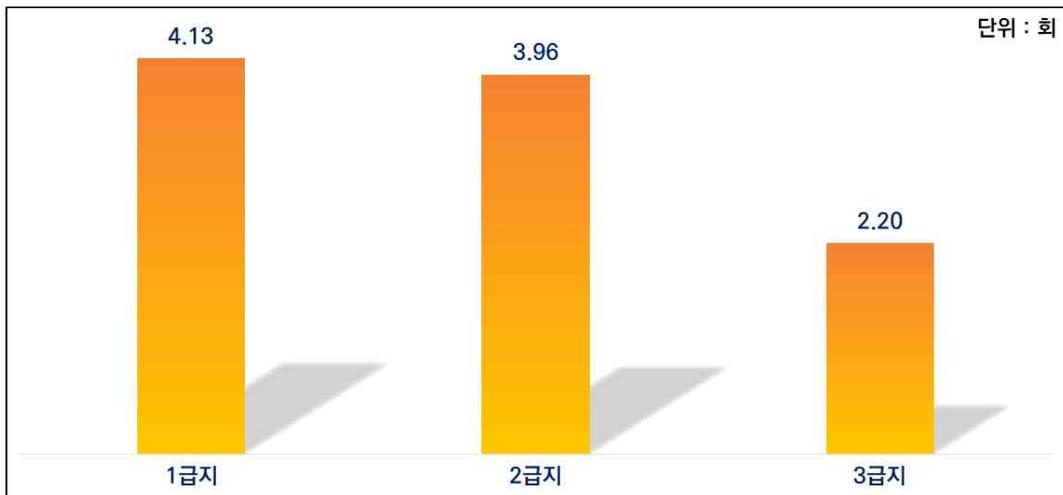
구분		용도지역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8:00~9:00	유입	127	46	13	0	186
	유출	107	29	3	0	139
9:00~10:00	유입	278	118	21	0	417
	유출	164	64	5	0	233
10:00~11:00	유입	289	117	5	0	411
	유출	247	108	7	0	362
11:00~12:00	유입	285	113	0	0	398
	유출	240	95	1	0	336
12:00~13:00	유입	265	102	2	0	369
	유출	240	120	2	0	362
13:00~14:00	유입	217	97	2	0	316
	유출	296	105	0	0	401
14:00~15:00	유입	358	148	17	0	523
	유출	225	108	6	0	339
15:00~16:00	유입	274	104	4	0	382
	유출	320	135	11	0	466
16:00~17:00	유입	256	91	1	0	348
	유출	248	100	14	0	362
17:00~18:00	유입	281	120	6	0	407
	유출	236	98	14	0	348
18:00~19:00	유입	281	89	2	0	372
	유출	247	74	25	0	346
19:00~20:00	유입	183	66	3	0	252
	유출	165	64	5	0	234
20:00~21:00	유입	106	55	0	0	161
	유출	125	88	3	0	216



3) 공영주차장 회전율 현황

- 주차효율과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주차 회전율을 급지별, 권역별, 용도지역별로 분석함
 - 주차 회전율 = 주차 이용 대수 / 총주차면
- 1급지의 주차 회전율(4.13)이 가장 높고 2급지(3.96), 3급지(2.20) 순으로 높음
-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1급지의 주차 회전율이 높지만, 2급지의 주차 회전율과 큰 차이가 없어 주차요금의 조정 등과 같은 1급지의 주차 회전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

그림 4.11| 급지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 서북권(5.71)과 서남권(5.66)의 주차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남권(2.93), 동북권(2.33)은 주차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4.12| 권역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 상업지역(4.49)과 주거지역(3.46)의 주차 회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업지역(1.02)과 녹지지역(0.64)은 주차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4.13] 용도지역별 공영주차장 주차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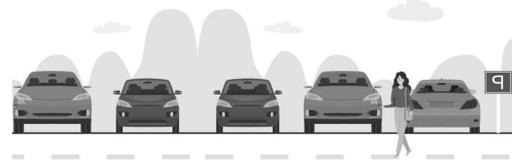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공영주차장 점유율 현황

- 노외주차장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0.53) 노상주차장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의 점유율이 가장 높음(0.87)
- 2급지의 점유율(0.61)이 가장 높고 3급지(0.60), 1급지(0.44) 순으로 높음
- 서북권(0.81), 중부권(0.67)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남권(0.48), 서남권(0.47), 동북권(0.43)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상업지역의 점유율(0.64)이 가장 높고 일반주거지역(0.61), 준주거지역(0.61)의 점유율은 높지만, 준공업지역(0.40)과 기타지역(0.22)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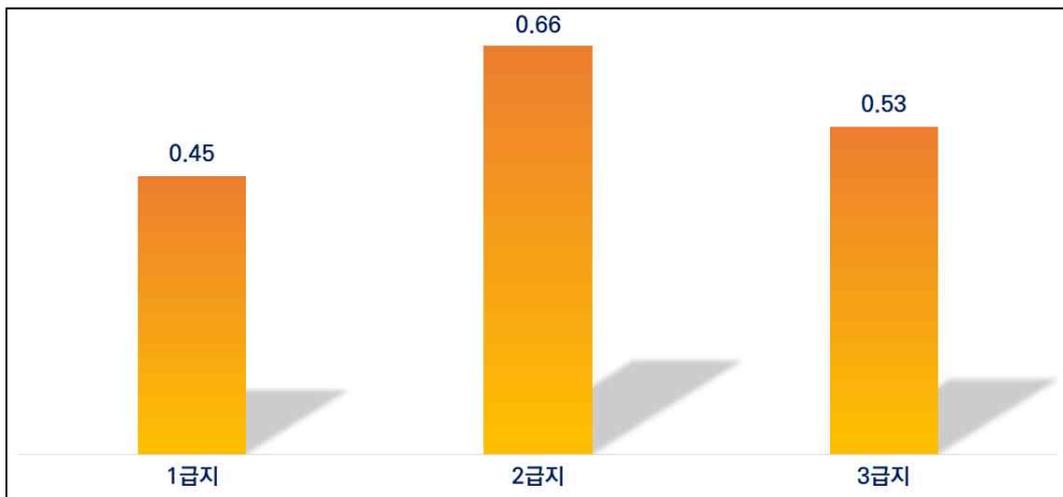
그림 4.14] 시간대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그림 4.15| 급지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그림 4.16| 권역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그림 4.17| 용도지역별 공영주차장 점유율





다 |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1) 조사 개요

P 조사 개요

- 이 조사는 현재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민영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 한편, 민영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토지이용 특성은 인천시 공영주차장 금지 설정 기준 중 1급지에 해당하는 조건이므로, 조사 공간을 1급지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였음
-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표본 조사했으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주차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 조사했음
-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고려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주차장의 운영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P 표본 선정 방법

- 인천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토대로 먼저 1급지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표본을 선정하고, 민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상가 전용 주차장을 제외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개방형 주차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민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2개소 총 5개소 주차장의 시간대별 유출입 차량 대수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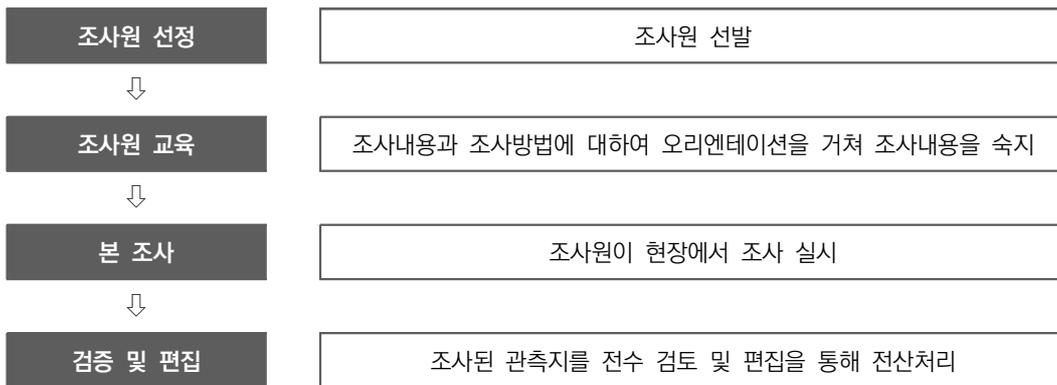
표 4.14 | 표본 설계

구분	내용
1) 조사 공간	1급지 공영주차장 인근 지역
2) 조사 대상	조사 공간 인근에 있는 민영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2) 조사 방법	관측조사
4) 조사 기간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5) 조사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총 12시간)



4.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 표 4.15 | 조사 절차



2)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 민영 노외주차장의 총 유출입 대수는 입지와 요금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큼
- 민영 노외주차장의 회전율은 주변의 공영주차장 회전율과 비슷한 수준임

| 표 4.16 | 중구 신포시장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주차면수 : 36	주차대수 : 319		회전율 : 8.86
구분	유입	유출	누적
조사전			0
08:00~09:00	0	0	0
09:00~10:00	1	0	1
10:00~11:00	17	12	6
11:00~12:00	43	18	31
12:00~13:00	35	28	38
13:00~14:00	34	41	31
14:00~15:00	52	43	40
15:00~16:00	37	34	43
16:00~17:00	37	35	45
17:00~18:00	29	38	36
18:00~19:00	23	30	29
19:00~20:00	11	17	23



표 4.17] 부평구 진선미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주차면수 : 24	주차대수 : 39		회전율 : 1.63
구분	유입	유출	누적
조사전			2
08:00~09:00	1	1	2
09:00~10:00	1	1	2
10:00~11:00	1	0	3
11:00~12:00	3	3	3
12:00~13:00	3	1	5
13:00~14:00	6	1	10
14:00~15:00	8	7	11
15:00~16:00	10	5	16
16:00~17:00	2	6	12
17:00~18:00	1	8	5
18:00~19:00	0	2	3
19:00~20:00	1	1	3

표 4.18] 남동구 소래 타워형 민영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주차면수 : 135	주차대수 : 328		회전율 : 2.43
구분	유입	유출	누적
조사전			18
08:00~09:00	10	4	29
09:00~10:00	5	8	26
10:00~11:00	28	5	49
11:00~12:00	45	17	77
12:00~13:00	50	29	98
13:00~14:00	50	43	105
14:00~15:00	43	56	92
15:00~16:00	33	54	71
16:00~17:00	14	29	56
17:00~18:00	21	28	49
18:00~19:00	10	12	47
19:00~20:00	1	19	29



3)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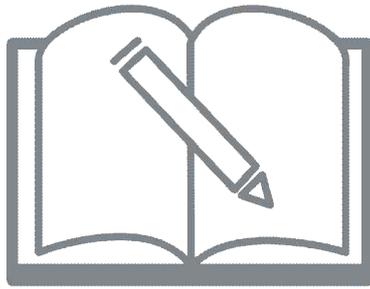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 부평구 신라저축은행 빌딩 주차장과 미추홀구 창보빌딩 주차장의 회전율은 1.00과 1.90으로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회전율이 낮음

표 4.19] 부평구 신라저축은행 빌딩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주차면수 : 101	주차대수 : 101		회전율 : 1.00
구분	유입	유출	누적
조사전			9
08:00~09:00	3	0	12
09:00~10:00	12	1	23
10:00~11:00	6	2	27
11:00~12:00	11	8	30
12:00~13:00	12	3	39
13:00~14:00	9	6	42
14:00~15:00	10	8	44
15:00~16:00	15	6	53
16:00~17:00	7	12	48
17:00~18:00	2	9	41
18:00~19:00	5	9	37
19:00~20:00	5	3	39

표 4.20] 미추홀구 창보빌딩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주차면수 : 80	주차대수 : 152		회전율 : 1.90
구분	유입	유출	누적
조사전			12
08:00~09:00	0	0	12
09:00~10:00	15	0	27
10:00~11:00	6	0	33
11:00~12:00	12	17	28
12:00~13:00	32	10	50
13:00~14:00	40	17	73
14:00~15:00	14	20	67
15:00~16:00	8	30	45
16:00~17:00	4	23	26
17:00~18:00	3	15	14
18:00~19:00	3	5	12
19:00~20:00	7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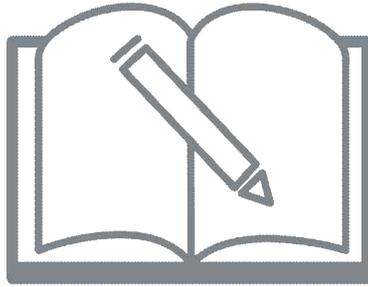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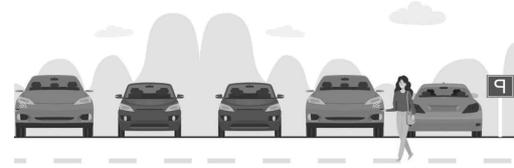
5

금지과 요금 개선방안

- 가 다른 도시의 금지 체계와 요금 수준
- 나 금지와 요금 조정 사례
- 다 주차요금 체계 개선방안
- 라 주차 금지 체계 개선방안
- 마 금지 체계와 요금 조정 적용방안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가 | 다른 도시의 금지 체계와 요금 수준

1) 금지 체계

- 국내 주요 도시들은 각 도시의 형편에 맞춰 금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울산은 제외하면 3금지 또는 4금지 체계임
- 인천은 4금지 체계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4급지로 하고 있어 실제로는 3금지 체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가 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하나만을 금지 구분 기준으로 하지만, 다른 도시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금지를 구분함
 - 서울시는 도시철도역(지하철역) 반경을 기준으로 금지를 구분해서 이용자들이 금지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 부산시는 4금지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1급지를 가와 나 2개 급지로 세분하고 있어 실제로는 5개 금지 체계를 유지함
 - 대구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도로체계를 금지 구분의 기분으로 하는 것이 특징임
 - 대전시는 지하철역과 버스 접근성 등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특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함께 금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임
 - 울산시는 비교 대상 도시들 중 유일하게 2금지 체계로 운영하며, 행정구역을 금지 구분의 기준으로 함
 - 광주시는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장 접근성과 토지이용을 동시에 고려해서 금지를 구분하고, 4금지 체계를 유지함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5.1|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 금지 체계 비교



2) 요금 수준

- 주요 도시들의 요금 과금 단위가 5분 또는 10분 단위인데 인천시만 15분 단위로 과금함
- 인천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최초 30분이지만, 울산은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들의 기본요금 부과 기준은 최초 5분 또는 10분임
- 최초 과금 기준이 30분이면 필요하지 않은 주차 지속시간을 유발해서 주차장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
- 대전과 광주는 누진 요금제의 개념을 적용해서 주차 후 2시간이 지나면 추가되는 요금이 최초 2시간 동안 부과되는 금액의 1.7배 또는 2배가 됨
- 1급지를 기준으로 인천의 1시간 주차요금이 2,000원인데, 서울과 부산, 대구보다 싸고 대전과 울산보다 비쌘
- 3시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비교하면 인천보다 요금이 싼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며, 나머지 도시들은 인천보다 비쌘

|그림 5.2|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요금 체계 비교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그림 5.3]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요금 비교(1금지 기준)



그림 5.4] 국내 주요 도시의 주차 금지 체계와 요금 체계의 특징





나 | 급지와 요금 조정 사례

1)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 정책 개선

- 서울특별시 19년 전에 결정된 주차 급지는 정책 활용성이 부족하고, 19년째 동결된 주차요금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적정 요금 상승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의 지역적 차등화를 하려고 연구함
- 기존의 주차 급지 구분 기준이 모호해서 직관적 인식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구성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3급지 체계로 개선함
- 급지별 기본요금을 물가지수에 따라 설정한 뒤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지역별로 차등함
- 주차 급지를 개선한 결과, 기존의 2~5급지 중 1급지로 편입된 주차장이 있어 1급지 주차장 수는 증가했고, 2급지는 기존보다 감소했으며, 4급지와 5급지는 3급지로 흡수됨
- 주차요금을 조정한 결과 대부분 주차장 요금이 상승하고 일부 주차장은 요금이 낮아짐
- 주차요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주차수요가 1일 15만 9,105대에서 32만 8,261대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5.5 |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 정책 개선 내용



2) 부산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조정

- 부산광역시는 신항 도심권 형성 등으로 도시 공간구조가 변하고 도시철도 및 경전철 개통 등 교통환경이 변해서 주차장 급지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함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자치구별 주차수요에 의한 주차면 수 과부족을 판단하고 주차장 실태조사, 카드 전용 주차장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자치구별 회전율을 분석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 실태와 의식조사를 해서 주차수요 특성을 파악함
- 기존의 4급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항 도심지역 등 교통혼잡지역, 환승 기능이 부족한 역세권 주차장, 1급지 중 교통혼잡 완화지역의 급지를 조정하고 4급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 합리적인 급지 조정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이용, 주차 회전율, 교통혼잡도, 지가를 분석지표로 설정함
- 급지 조정 분석지표 5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주차장이 급지 조정 대상이며, 3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입지 여건과 지역 성장 가능성,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서 급지 조정 대상을 결정하고, 3개 항목 미만인 주차장은 기존 급지를 유지하기로 함
- 급지가 조정되는 공영주차장은 총 34개소, 5,087면이며, 이 중 1~3급지가 전체 주차면 수의 35%, 4급지가 5%임
- 급지 조정으로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 수요관리 효과를 기대함

그림 5.6 부산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조정 내용



3) 광주시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 광주광역시시는 신항 도심지역과 교통혼잡 심화 지역의 발생 등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하고 4급지 체계로 전환함
- 요금체계를 적정화하고 현실화해서 도심지로 유입하는 승용차를 억제하고 교통 수요관리 중심의 주차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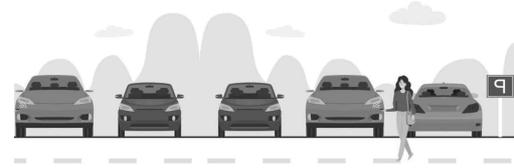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차 금지 조정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이용, 주차 회전율, 교통혼잡도, 지가를 분석지표로 설정함
- 금지 조정 분석지표 5개를 활용한 금지 평정 지수를 설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차 회전율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교통혼잡도, 지가, 토지이용 순으로 나타남
- 블록 단위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합을 기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면(面)적으로 묶는 집합화 과정을 거쳐, 일부 지역의 블록 경계를 조정하여 점(點)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금지를 조정함
- 주차요금은 원가 접근법, 적정 투자보수법, 사례 비교법으로 최적 대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

|그림 5.7| 광주시 공영주차장 금지 및 요금체계 개선





다 | 주차요금 체계 개선방안

1) 요금체계 조정 원칙

P 주차요금 징수 기본시간 단위 조정

- 현재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기본시간 단위는 최초 30분, 최초 30분 이후 매 15분 단위임
- 현행 요금체계는 불필요한 주차 시간 수요를 초래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저하하는 요인임
- 주요 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기본시간 단위를 살펴보면, 최초 주차했을 경우의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10분 이하의 단위의 요금을 적용함
- 현행 주차요금 징수 기본시간 단위를 30분,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함

P 주야간 주차요금 차등

- 현재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야간 구분 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함
- 주요 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체계를 살펴보면, 월 정기 주차 이용요금은 모든 도시에서 주·야간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함
-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간보다 야간의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거지역 야간 박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주차요금을 구분함

P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형태(노외/노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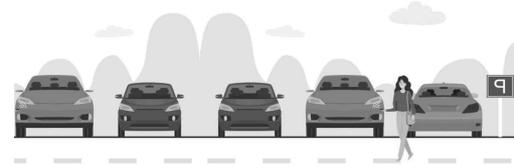
- 현재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구분 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함
- 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노외주차장과 달리 도로 위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은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며 주차 이후 빠르게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노외주차장 요금보다 비싸게 해서 노상주차장을 억제하고 노외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그림 5.8| 주차요금 조정 원칙



2) 요금체계 조정 방법

-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은 원가 접근법, 적정 투자보수법, 사례 비교법, 물가 인상률법 등이 있음
- 원가 접근법은 주차장 조성비용, 주차장 관리 원가를 주차요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대중교통 요금 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함
- 원가 접근법은 요금책정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시장공급단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함
- 적정 투자보수법은 원가 접근법에 적정 투자 보수율을 이윤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며, 원가 접근법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사례 비교법은 유사 규모의 도시 요금체계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의 경험을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마다 교통정책이 다르고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여건 등의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물가 인상률법은 물가의 변동 정도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이해를 구하기 쉽고 교통 분야의 요금 변동을 따로 고려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물가 인상률법으로 주차요금 인상 대안 3가지를 도출하고, 적정 대안을 찾기 위해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인천시와 비교할 수 있는 도시인 부산과 대구의 주차요금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적 대안을 구함
 - 첫 번째 대안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되 앞서 설정한 요금 조정 원칙에 따라 과금 단위를 10분으로 하는 대안임
 - 두 번째 대안은 물가 인상률 중 교통 목적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대안임
 - 세 번째 대안은 물가 인상률 중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률을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대안임



5. 급지와 요금 개선방안

|그림 5.9| 요금 조정 방법



P 대안 1 (현행 요금 유지)

- 인천광역시 현행 주차요금은 1급지를 기준으로 1시간에 2,000원임
-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과금하면 노외주차장일 때 1급지는 350원, 2급지는 20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을 부과함
- 대안 1로 요금을 부과하면 현재보다 요금이 크게 인상되지는 않지만, 주차요금 과금 단위가 10분이 되어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P 대안 2 (교통 목적 소비자물가지수 인상을 적용)

-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5.9%(약 1.7배)이며, 이중 교통 목적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6.6%(약 1.6배)임

|그림 5.10|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표 5.1]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구분	1999	2000	...	2020	2021	증감률(%)
총지수	61.756	63.151	...	100.00	102.50	65.9
교통 목적	67.852	70.871	...	100.00	106.33	56.6

- 대안 2는 교통 목적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만큼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대안으로 현재의 주차요금에서 각각 1.5배를 함
 - 계산의 편의와 기본요금의 인지 용이성을 고려해서 교통 목적의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정도인 1.6배가 아닌 1.5배를 적용함

P 대안 3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을 적용)

- 주차정책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므로 주차요금을 대중교통 요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1999 이후에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기본요금과 준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기본요금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주차요금은 그대로여서 교통수단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의 기본요금은 192.3%(약 2.9배) 인상되었고,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0%(약 2.5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60.0%(약 2.6배) 인상됨
- 대안 3은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의 평균 인상 수준인 2.7배를 현재의 주차요금에 적용해서 조정할 금액임

그림 5.11]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변화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표 5.2 인천시 주차요금과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변화

구분	1999년 요금(원)	2022년 요금(원)	인상요금(원)	인상률(%)
택시	1,300	3,800	2,500	192.3
지하철	500	1,350	850	170.0
시내버스	500	1,300	800	160.0
주차요금	1,000	1,000	0	0.0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평균 인상률				174.1

주) 대중교통수단 기본요금 : 도시형 시내버스 일반요금, 지하철 일반요금, 중형 택시 기본요금 기준
 주차요금 : 인천시 1급지 주차장 최초 30분 요금 기준

그림 5.12 주차요금 인상 대안



P 다른 도시와 주차 여건 비교

- 인천과 비교 대상 도시의 교통 여건과 주차 여건을 비교하면, 인천시는 자동차등록 대수는 서울 다음으로 많고 주차장 확보율은 비교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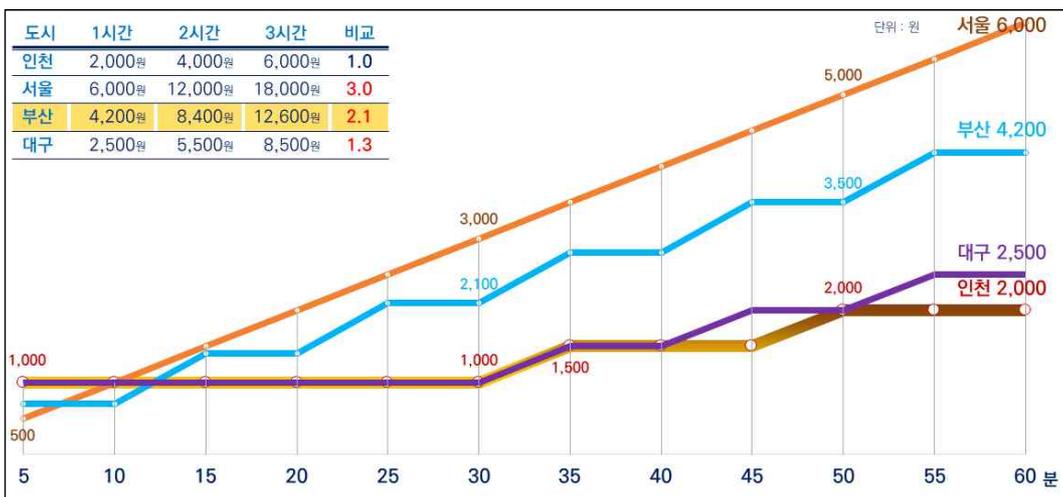
표 5.3 인천광역시 및 국내 주요 도시교통 및 주차 여건 비교

구분	자동차 등록대수 (2021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 (2019년 기준)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대/인) (A/B)	자동차 등록대수(대) (A)	주민등록인구(명) (B)	주차장 확보율(%) (C/D*100)	주차장 면수(면) (C)	자동차 등록대수(대) (D)
인천	0.6	1,675,405	2,978,375	80.1	1,310,332	1,635,323
서울	0.3	3,176,743	9,509,458	136.1	4,250,682	3,124,157
대전	0.5	692,702	1,452,251	118.4	798,103	673,899
대구	0.5	1,211,095	2,385,412	93.0	1,107,117	1,190,154
울산	0.5	581,429	1,121,592	99.9	565,211	565,639
부산	0.4	1,464,608	3,350,380	110.6	1,542,526	1,395,183
광주	0.5	700,783	1,441,611	98.5	665,964	676,281



- 인천과 직접 비교의 대상이 되는 서울과 부산, 대구의 주차요금과 인천의 주차요금을 비교하면, 인천의 주차요금은 최초 10분 동안은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들보다 요금이 비싸고 이후에는 다른 도시보다 같거나 낮음
- 주차 후 최초 15분이 지나면 인천의 주차요금은 대구와 같은 수준이지만 서울이나 부산보다 훨씬 싸며, 전반적으로 다른 3개 도시보다 요금 수준이 낮음

|그림 5.13| 인천광역시 및 국내 주요 도시 주차요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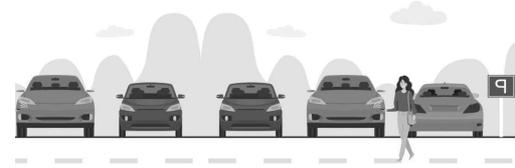


P 대안별 주차요금 조정 과정

-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과금하는 체계로 변경하려고 현행 주차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지별 주차요금에 대안별 인상률을 적용함
- 대안별로 산정된 1시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환산해서 대안별 기본요금을 산정함

|표 5.4| 과정 1 - 대안별 인상률 적용

금지	현행		1안		2안 (1.5배)		3안 (2.7배)	
	최초30분	15분 당	최초30분	15분 당	최초30분	15분 당	최초30분	15분 당
1금지	1,000	500	1,000	500	1,500	750	2,700	1,400
2금지	600	300	600	300	900	450	1,600	800
3금지	400	200	400	200	600	300	1,100	550
4금지	300	150	300	150	500	250	800	450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표 5.5 | 과정 2 - 1시간 주차요금 산정

금지	현행	1안	2안 (1.5배)	3안 (2.7배)
1금지	2,000	2,000	3,000	5,500
2금지	1,200	1,200	1,800	3,200
3금지	800	800	1,200	2,200
4금지	600	600	1,000	1,700

표 5.6 | 과정 3 - 10분 단위 기본요금 산정

금지	1안	2안 (1.5배)	3안 (2.7배)
1금지	350	500	900
2금지	200	300	550
3금지	150	200	400
4금지	100	150	300

- 1시간 단위 주차요금을 10분 단위 주차요금으로 조정할 때, 10원 단위에서 조정해서 적용하며, 여기서 산출된 기본요금을 노외주차장의 기본요금으로 함

3) 대안별 조정된 요금체계

P 대안별 주차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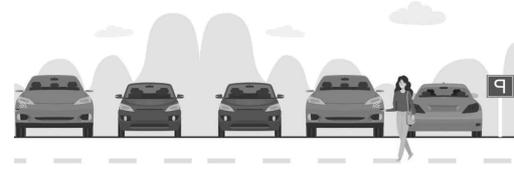
- 대안별 요금 조정을 위한 3단계 과정으로 도출된 최종 대안별 주차요금은 1금지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최초 10분간 요금이 대안 1이 350원, 대안 2가 500원, 대안 3이 900원임
- 전일권은 주간 전일권과 야간 전일권으로 구분하며, 주간 전일권은 시간제로 5시간 동안 주차한 요금 수준을 부과하고 야간 전일권은 시간제로 2시간 주차한 요금 수준을 부과함
 - 야간 전일권은 주로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주차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요금제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차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월정기권은 전일권과 야간권으로 구분하며, 전일권은 주간 전일권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야간권은 야간 전일권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함
 - 야간 월정기권은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주차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요금제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차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노상주차장은 10분마다 주차요금이 추가되는 시간제로만 운영하며, 노외주차장 시간제 요금의 약 1.2배 요금을 부과함



표 5.7기 대안별 주차요금

대안	금지 구분	노상주차장 (매 10분)	노외주차장				
			시간제(원)	전일권(원)		월 정기권(원)	
			매 10분	주간	야간	전일	야간
대안 1	1금지	400	350	10,500	4,200	105,000	42,000
	2금지	250	200	6,000	2,400	60,000	24,000
	3금지	200	150	4,500	1,800	45,000	18,000
	4금지		-			30,000	12,000
대안 2	1금지	600	500	15,000	6,000	150,000	60,000
	2금지	500	300	9,000	3,600	90,000	36,000
	3금지	300	200	6,000	2,400	60,000	24,000
	4금지		-			45,000	18,000
대안 3	1금지	1,100	900	27,000	10,800	270,000	108,000
	2금지	650	550	16,500	6,600	165,000	66,000
	3금지	550	400	12,000	4,800	120,000	48,000
	4금지		-			90,000	36,000

- 요금 조정 대안 3가지로 1급지의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을 3시간 동안 시뮬레이션하면 노외주차장의 요금 수준은 대안 1과 대안 2, 대안 3이 각각 현재 요금의 1.1배, 1.5배, 2.7배 수준임
- 1급지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안 3가지 대안으로 3시간 동안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뮬레이션하면, 노상주차장의 요금 수준은 대안 1, 대안2, 대안 3이 각각 현재 요금 수준의 1.2배, 1.8배, 3.3배 수준임
- 요금 조정 대안 3가지로 1급지의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을 3시간 동안 시뮬레이션하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이 모두 대구보다 높고 부산보다 낮은 수준인 대안 2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요금 수준과 유사한 요금 수준이 됨
 - 대안 1로 한 인천의 주차요금 수준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모두 대구보다는 낮음
 - 대안 3은 인천의 요금 수준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모두 부산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그림 5.14 대안별 노외주차장 3시간 주차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15 대안별 노상주차장 3시간 주차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4) 캠핑용 자동차 주차요금 체계

P 캠핑용 자동차 종류

- 캠핑용 자동차는 크게 동력식과 무동력식으로 분류하며, 무동력식은 카라반과 트레일러로 세분함

표 5.8 카라반·캠핑카 종류

종류	동력	무동력(피견인)	
	캠핑용 자동차(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사진			



-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캠핑용 자동차나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다가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의 좀 더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2019년 8월에 승합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특수 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함
-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정의함

표 5.9 자동차 관리법의 신·구법 비교

자동차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66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삭제〉

표 5.10 자동차 관리법의 특수자동차 분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 기준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인 것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취침 시설과 취사 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중 하나를 갖추고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함
-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함

P 캠핑용 자동차 관련 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수자동차는 차고 시설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차고 시설(임대 시설 포함)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캠핑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캠핑카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캠핑카와 총중량이 3.5t 이하인 소형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차고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총중량이 3.5t을 초과하는 중형 특수자동차와 대형 특수자동차는 여전히 차고지 신고 대상이지만, 대부분 캠핑카는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함
- 카라반(피견인 캠핑용 자동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여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여 차고 시설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차량에 해당함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고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P 인천시 캠핑용 자동차 등록 추이

- 2016년 이후 인천시의 카라반은 연평균 27.6%씩 증가했고, 캠핑카는 연평균 42.0%씩 증가함(카라반과 캠핑카를 합치면 연평균 30.9%씩 증가함)

표 5.11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현황

연도	카라반(대)	캠핑카(대)	계
2016년	278	71	349
2017년	387	110	497
2018년	508	154	662
2019년	607	182	789
2020년	737	289	1,026
증가율	27.60%	42.04%	30.94%

연도별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록 현황(2021)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e-나라지표)



그림 5.16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등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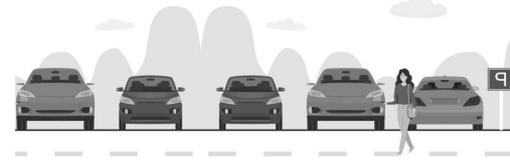
P 인천시 캠핑용 자동차 주차장 운영현황과 조성 계획

- 인천시에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카라반·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총 4개소가 있으며, 주차면 수는 총 170면임
-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카라반·캠핑카 전용 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1개소, 유료로 운영 중인 곳이 3개소임
 - 유료로 운영되는 3개소는 모두 월정기권으로만 운영되며,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다양함

표 5.12 인천시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구분	주차장 명	주차면 수		요금 (월 정기권)	관리	금지	개장
		전체	캠핑카용				
남동구	소래제3복합 공영주차장	100	80	60,000원	남동구도시관리공사	2금지	2018.12.
	소래습지생태공원 캠핑카 주차장	266	27	80,000원	인천대공원사업소	미지정	2021. 3.
계양구	계산택지1 공영주차장	201	17	90,000원	인천시설공단	1금지	2021. 7.
연수구	달빛축제공원 주차장	152	46	무료	경제자유구역청	미지정	2022. 1.
계	3개소	719	170				

자료 : 인천시 교통관리과 내부 자료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인천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주차장(37면), 계양대교 북단 하부주차장(22면), 원창동 381-40부지 공영주차장(100면) 등 3개소(159면)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총 329면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임

P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확보 필요성

- 2020년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이 총 1,026대로 인천시의 계획대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더라도 캠핑카 주차장 확보율이 32.1%에 불과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캠핑카와 총중량이 3.5t 이하인 소형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차고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다수 캠핑카는 공원 부설주차장 등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됨

|그림 5.17| 캠핑카의 알박기 주차를 보도한 기사의 사례

경기일보

인쇄하기

인천 경인아라뱃길, 캠핑카 장기 알박기주차 몸살

입력 2021-11-22 오후 6:33



22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장기동 경인아라뱃길 다남공원 주차장 한쪽 면을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가 점령하고 있다. 이주 비기자

인천 경인아라뱃길 주차장이 캠핑카 암체주차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오전 계양구 장기동 경인아라뱃길 다남공원 주차장. 무료 주차장인 이곳의 한쪽 주차면을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13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듯 차량 위로 먼지가 소복하다. 캠핑차량들이 주차면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다남공원 이용객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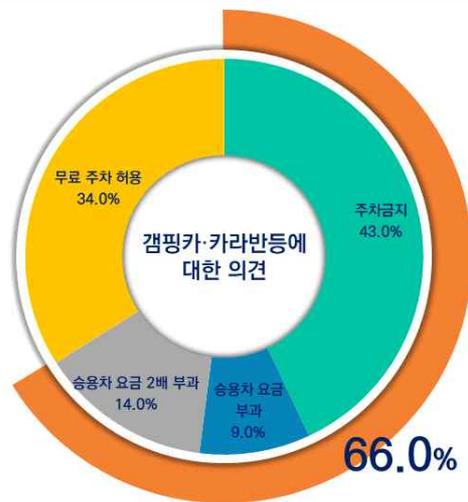


- 카라반 등 피견인 캠핑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따라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해야 하지만, 신고한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전용 주차장이 없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 일쑤임
- 캠핑카, 카라반 등 캠핑용 자동차가 일반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서 일반 승용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캠핑용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캠핑카, 카라반 등 캠핑용 자동차는 차량 이용 특성상 도심이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시 외곽의 3급지 지역에 캠핑용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공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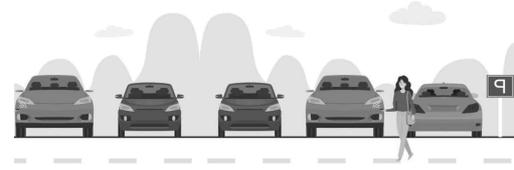
P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요금의 필요성

- 캠핑용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면적이 넓어서 주차단위구획에 주차하면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에 다른 차를 주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대다수 시민(66.0%)이 일반 주차장에 캠핑용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거나(43.0%) 승용차 정도의 요금 또는 승용차보다 비싼 요금을 부과(23.0%)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그림 5.18]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의견



- 캠핑용 자동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존 승용차 기반으로 책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다른 캠핑용 자동차 전용 요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캠핑용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통행을 위한 통로의 크기나 회전반경이 일반 승용차보다 더 넓으므로 차량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남동구에서 조성한 소래 제3공영 복합 주차장(캠핑용 자동차 주차 가능 주차장)은 192면이던 기존 주차단위구획 수를 104면으로 줄이면서 캠핑용 자동차 전용으로 52면을 할애함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소래 제3공영 복합주차장은 2.3m의 구획을 2.6m로 늘린 확장형 구획을 적용하고 차간거리를 30cm 늘리고 중대형 RV의 주차를 위해 사선으로 구획을 개선함

P 캠핑용 자동차 전용 요금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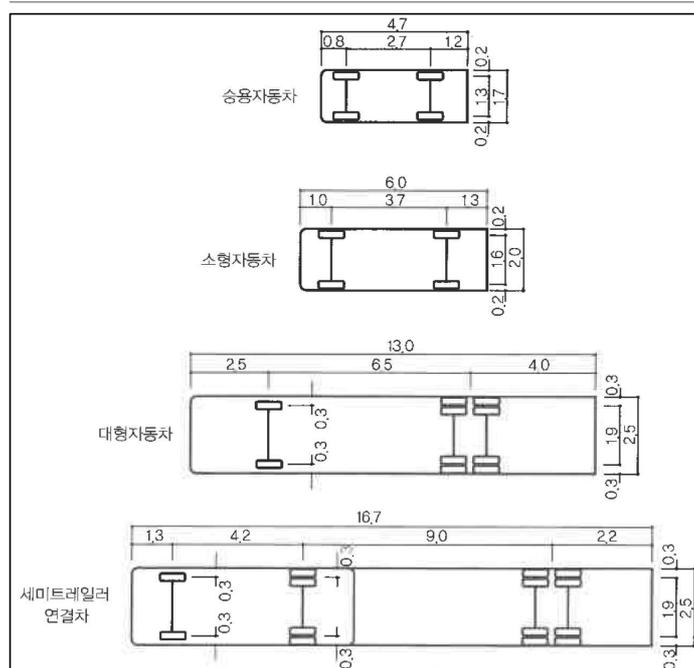
- 자동차의 제원과 관련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함
-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라고 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을 제시함

표 5.13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

자동차 종류	폭(m)	높이(m)	길이(m)	축간거리(m)	앞내민 길이(m)	뒷내민 길이(m)	최소회전 반경(m)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대형자동차	2.5	4.0	13.0	6.5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2.5	4.0	16.7	앞축 간 거리 : 4.2 뒤축 간 거리 : 9.0	1.3	2.2	12.0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림 5.19 | 설계기준 자동차의 제원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캠핑용 자동차의 제원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동구의 소래 제3공영 주차장의 사례를 참조하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준용할 수 있음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형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제원을 비교하면 소형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12㎡)이 승용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8㎡)의 1.5배임

표 5.14 |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 면적의 비교

자동차 종류	폭(m)	길이(m)	면적(㎡)	비교
승용자동차	1.7	4.7	7.99	1
소형자동차	2.0	6.0	12.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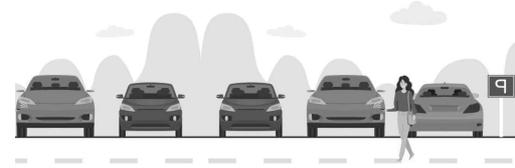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특수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제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의 면적(5.76㎡)이 승용자동차의 면적(7.99㎡)보다 작아서 요금 산정에 참고할 수 없음

표 5.15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제원

구분	길이(m)	너비(m)	높이(m)	비고
승용자동차	4.7	1.7	2.0	소형
승합자동차	4.7	1.7	2.0	소형
화물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특수자동차	3.6	1.6	2.0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자료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소형자동차의 제원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특수자동차의 제원을 비교하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소형자동차의 제원을 캠핑용 자동차의 제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급지별 주차요금에 1.5배를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요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일반 차량 주차요금의 2배로 하면,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요금이 상위 급지의 일반 차량 월정기권 요금보다 비싸져서 다수의 캠핑용 자동차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큼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장시간 주차하는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 특성을 고려하면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전일권 형태의 월정기권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4급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해당하므로 캠핑용 자동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4급지에 해당하는 캠핑용 자동차 주차요금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음

표 5.16 | 캠핑용 자동차 주차요금

금지 구분	월 정기권(원)	비고(일반차량 주차요금(원))
1금지	225,000	150,000
2금지	135,000	90,000
3금지	90,000	60,000
4금지	-	45,000

P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활성화 방안

- 캠핑용 자동차는 상시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전용 주차장을 1급지나 2급지에 조성하지 않고 3급지에 조성하더라도 이용율에는 차이가 없을 것임
- 3급지 지역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일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전체 면적의 일정 부분은 캠핑용 자동차를 위한 판매점이나 관련 상업시설을 입점시켜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거점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업시설은 캠핑용품 전문 할인매장, 캠핑 체험장, 캠핑용 자동차 정비 전문업소, 캠핑교육장, 카페 등임
-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면, 주차장 조성 비용의 일부를 민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비용을 임대료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음

그림 5.20 |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업시설의 예





라 | 주차 금지 체계 개선방안

1) 금지 체계 개선 방향

- 새로운 주차 금지 체계는 인천시의 기존 주차 금지 체계와 비교 대상이 되는 도시들의 금지 체계를 참조해서 6가지의 금지 조정 방향을 설정함
-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교통 특성, 통행 특성 등을 고려해서 주차 금지를 설정함
- 도시철도와 버스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금지 체계를 조정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며, 주차 금지 체계를 이용해서 교통혼잡지역 수요를 관리함
- 개별 주차장 단위로 지정된 점(點)적인 금지 체계를 누구나 인지하기 쉽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면(點)적인 금지 체계를 만듦
- 공영주차장의 회전율과 점유율을 제고하고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지 체계를 조정함
- 지난 20여 년 동안의 도시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신규 개발지 등에도 금지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요금이 변하지 않는 20년 동안 도시 구조뿐 아니라 새로운 지하철이 건설되고 버스 노선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금지 체계에 반영함

그림 5.21 | 금지 체계 개선 방향



2) 금지 체계 조정 원칙

- 금지 체계를 조정할 때 변화한 대중교통 환경을 반영하고 군지역은 단일 금지 체계로 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4급지로 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함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현재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금지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금지 체계 조정에 반영함
- 현재 인천광역시에 있는 18개 1금지 주차장 중 4개가 옹진군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군지역은 관광지의 성격이 깊어 일시적으로 주차 수요가 집중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군지역 주차장은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인천시는 일부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제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현재와 같이 4급지로 운영함

그림 5.22] 금지 체계 조정 원칙



3) 금지 체계 조정 방법

- 점(點)적인 기준을 면(點)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점 단위로 금지를 분석하여 이를 면 단위로 확대하는 방법을 적용함
- 금지 부여의 기초 단위는 우편물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인 기초구역 단위로 함
- 금지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의 공영주차장 중 위치 데이터가 있는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분석지표를 구축함
 - 4금지 주차장과 군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기초구역은 기초구역 내 중심점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지표를 구축함
- 구축된 분석지표를 이영해서 주차장 금지 지수(PCI)를 결정하고 기초구역별 금지를 부여함
- 공영 노외주차장이 여러개 있는 기초구역은 주차장별 금지 지수를 산출한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지를 부여함



P 금지 체계 조정 분석지표

-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고 토지이용 용도를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금지 체계를 조정하는 지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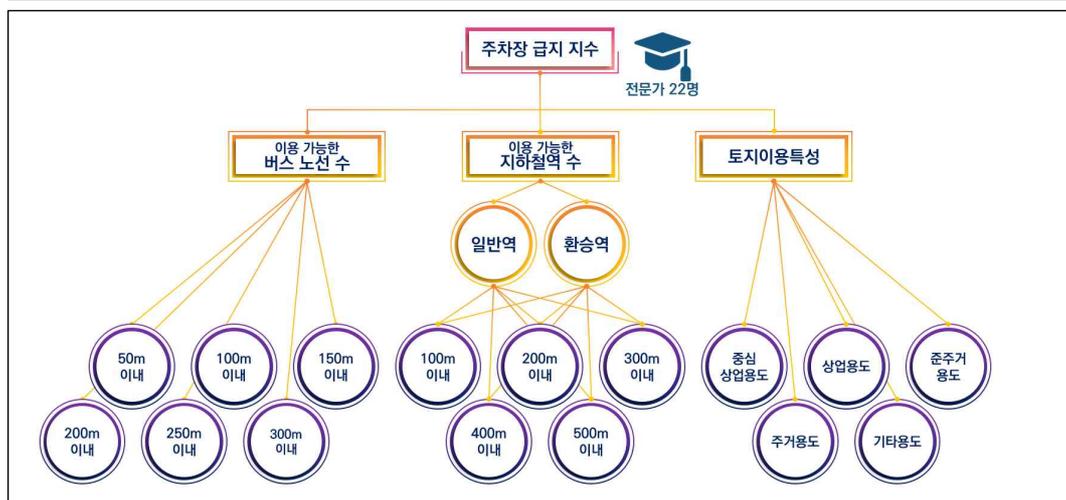
표 5.17기 금지 체계 조정 분석지표

구분	요소	세부 요소
대중교통 접근성	거리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수	50m ~ 300m (50m 단위)
	거리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하철역 수	100m ~ 500m (100m 단위)
	거리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지하철역 수	100m ~ 500m (100m 단위)
토지이용 특성	토지이용 특성	중심상업용도, 상업용도, 준주거용도, 주거용도, 기타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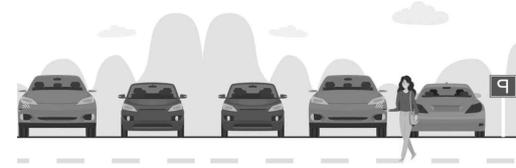
지표별 가중치

- 금지 조정 분석지표로 선정된 요소들의 가중치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층분석법을 적용함
- 교통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쌍대비교법으로 조사했으며, 주차장 금지를 결정할 때 상대적인 중요도를 묻는 방법으로 조사함

그림 5.23| AHP 분석 계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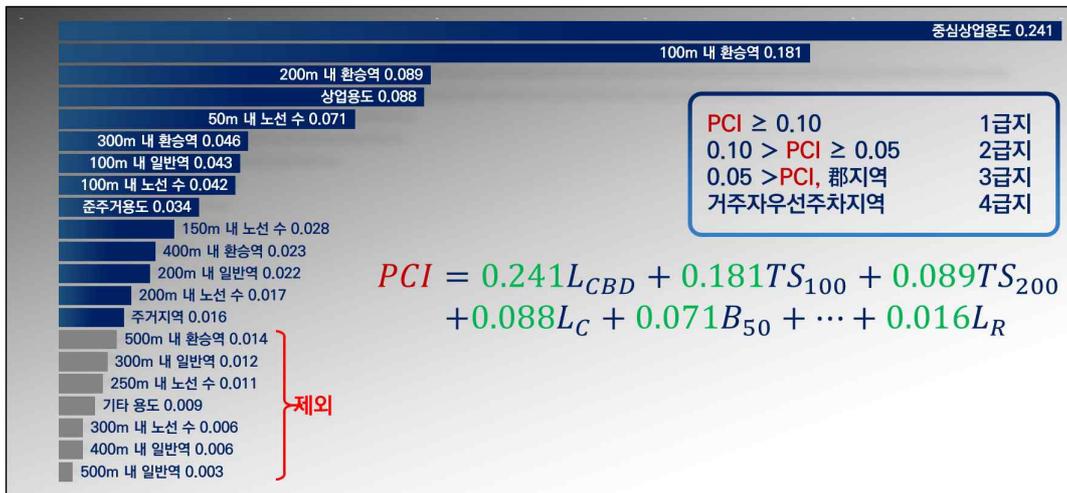
- AHP 분석 결과 각 분석지표 중 중심 상업 용도의 중요도가 0.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차장 반경 100m, 200m 내 환승역의 중요도가 각각 0.18, 0.09 순으로 높음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 전체 21개의 요소별 가중치 중 주차 금지 지수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하위 7개 요소는 제외한 14개 요소를 계수로 하는 금지지수식을 만들고, 이 식에 요소별 지표 값을 적용해서 주차장별, 기초구역별 주차금지지수를 산출함

|그림 5.24| 주차 금지 지수 구성 요소별 가중치



$$PCI = 0.241L_{CBD} + 0.181TS_{100} + 0.071B_{50} + \dots + 0.016L_R$$

- 주차장별 금지 부여 기준은 PCI 값 0.10과 0.05를 기준으로 함
 - PCI 값이 0.1 이상이면 1급지로 하고 PCI 값이 0.05 이상 0.1 미만이면 2급지, PCI 값이 0.05 미만이면 3급지로 함
 - 군지역은 3급지로 통일하고, 기존 4급지는 그대로 유지함

4) 기초구역별 금지 결정 방법

- 공영 노외주차장 497개를 대상으로 주차장 금지 지수를 적용해서 개별 주차장의 금지를 조정함
- 조정된 개별 주차장의 금지를 활용해서 해당 주차장이 속한 기초구역에 금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대안을 설정함
 - 대안 1은 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 중 금지가 가장 높은 주차장의 금지를 해당 구역의 금지로 하는 대안임
 - 대안 2와 대안 3은 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의 금지 중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금지를 해당 구역의 금지로 적용하는 방법이며, 만약 금지 수가 같을 때 높은 금지를 적용하면 대안 2, 낮은 금지를 적용하면 대안 3으로 함



표 5.18 | 과정1 - 주차장별 금지 조정 결과

현재 \ 조정	1금지	2금지	3금지	합계
1금지	13	1	0	14
2금지	36	25	24	85
3금지	14	42	116	172
기타, 무료	19	84	123	226
합계	82	152	263	497

그림 5.25 | 과정1 - 주차장별 금지 조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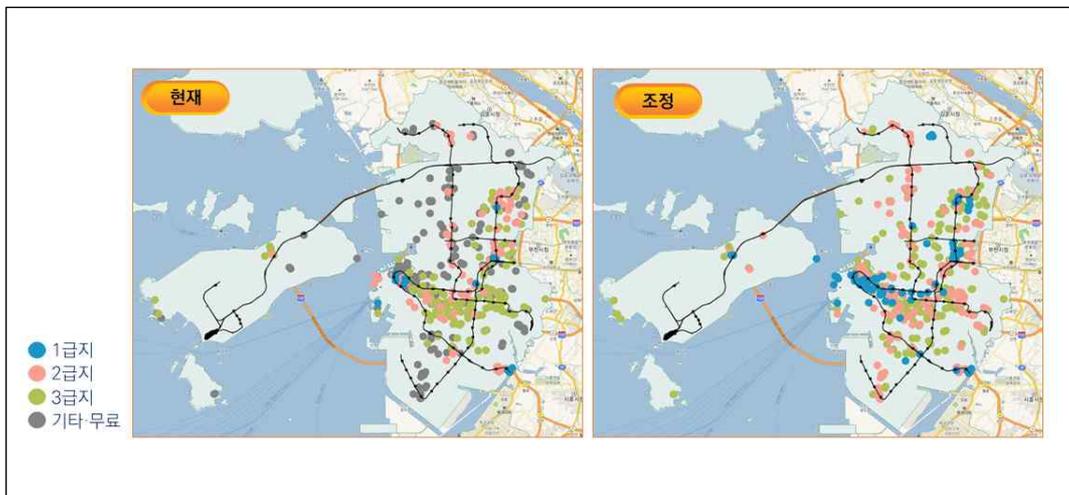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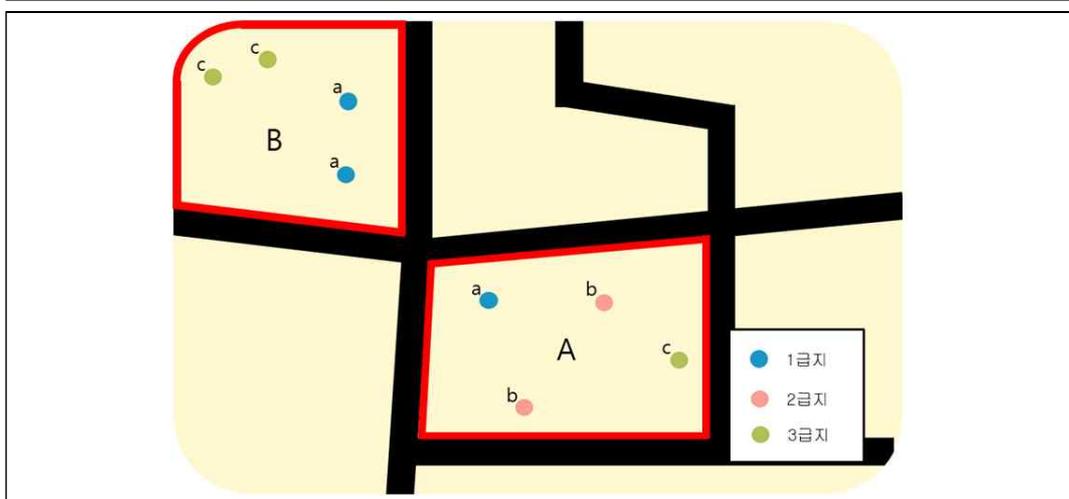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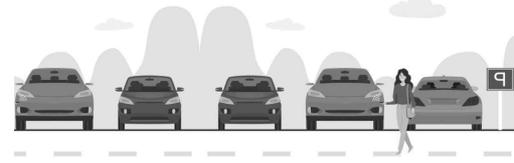


그림 5.26 | 과정2 - 대안별 금지 조정 방법 예시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표 5.19| 과정2 - 대안별 금지 조정 방법 예시

구분	조정 방법	기초구역	
		A	B
대안 1	가장 높은 주차장의 금지를 반영	1금지	1금지
대안 2	가장 많은 주차장의 금지를 반영 - 금지 수가 같으면 높은 금지	2금지	1금지
대안 3	가장 많은 주차장의 금지를 반영 - 금지 수가 같으면 낮은 금지	2금지	3금지

-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기초구역은 구역의 중심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차장 금지 지수를 산출해서 금지를 부여함

5) 기초구역별 금지 조정 결과

P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의 금지

-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은 총 319개 구역이고, 대안별로 금지를 정리하면 대안 1의 1급지는 65구역, 대안 2의 1급지는 60구역, 대안 3의 1급지는 56구역로 대안 1의 1급지가 가장 많음

|표 5.20|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1금지	65	60	56
2금지	109	106	92
3금지	145	143	171
합계	319	319	319

|그림 5.27|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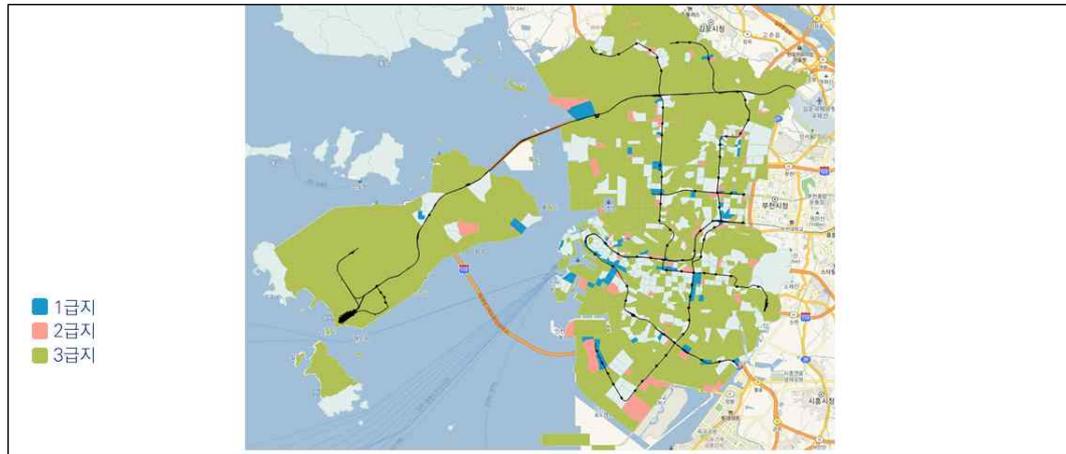




P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기초구역의 금지

-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기초구역은 총 1,016구역이며, 이 중 1급지가 86구역, 2급지가 85구역, 3급지가 845구역임

|그림 5.28| 기초구역별 금지 조정 결과



|표 5.21| 공영 노외주차장 없는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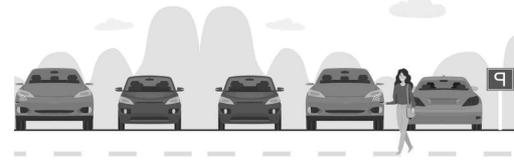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합계
기초구역 수	86	85	845	1,016

P 전체 기초구역의 금지

- 공영 노외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과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기초구역을 합친 전체 기초구역의 금지는 총 1,335개 구역임

|그림 5.29| 대안 1 적용 금지 조정 결과





5. 금지와 요금 개선방안

|그림 5.30| 대안 2 적용 금지 조정 결과



|그림 5.31| 대안 3 적용 금지 조정 결과



|표 5.22| 대안별 기초구역 금지 조정 결과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1급지	151	146	142
2급지	194	191	177
3급지	990	998	1,016
합계	1,335	1,335	1,335



마 | 금지 체계와 요금 조정 적용방안

1) 금지 체계

- 기존 주차장이 있는 기초구역의 금지 선정 대안 3가지에 따라 정해진 3가지 기초구역별 금지 대안 중에서 1급지의 수가 중간 수준인 대안 2를 적용할 것이 합리적임

표 5.23 | 인천시 금지별 기초구역 수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금지 수	146	191	998
비율(%)	10.9	14.3	74.8

2) 요금 수준

-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요금 조정 대안 3가지 중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요금이 모두 대구보다 높고 부산보다 낮은 수준인 대안 2가 시민들에게 수용성이 높고 이해를 구하기도 쉬운 대안임

표 5.24 |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안)

대안	금지 구분	노상주차장 (매 10분)	노외주차장				
			시간제(원)	전일권(원)		월 정기권(원)	
			매 10분	주간	야간	전일	야간
대안 2	1급지	600	500	15,000	6,000	150,000	60,000
	2급지	500	300	9,000	3,600	90,000	36,000
	3급지	300	200	6,000	2,400	60,000	24,000
	4급지	-	-	-	-	45,000	18,000

3) 적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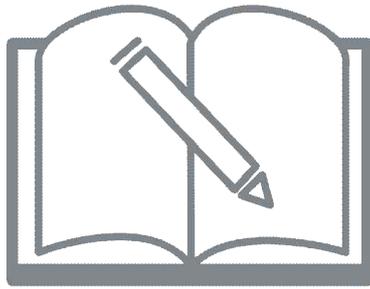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 금지 체계 조정으로 금지가 상향 조정된 지역이 많아 금지 조정만으로도 요금이 인상된 효과가 나타나므로 금지 체계 조정과 요금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면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1단계로 금지 체계를 먼저 조정한 후 다음 단계로 요금 수준을 조정하면 요금 수준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 가 국내 주요 주차정책
- 나 국외 주요 주차정책
- 다 주차장 이용효율 및 관리·운영 방안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가 | 국내 주요 주차정책

1) 부천시 공영주차장 무정차 출차 시스템

- 2020년 11월 부천도시공사는 주차요금 계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출차 시간을 줄이고자 지역 내 주차장 10곳에 무정차 요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함
- 정차하지 않고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공회전이 줄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함
- 노상주차장은 센서나 별도의 앱 없이 입차증에 인쇄된 QR코드 스캔만으로 자동 요금 계산이 가능하게 함
- 시범 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함
- 무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요금 지불 과정을 해소해서 주차장 이용효율이 향상됨

[그림 6.1] 부천시 무정차 출차 시스템 시연 현장



[그림 6.2] 부천시 무정차 출차 시스템 이용 절차



자료 : 부천시 정책 포털 (<http://news.bucheon.go.kr>)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표 6.1 서울특별시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	
4대문 주변 지역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신촌지역	경의선 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 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미아지역	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2022)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서울특별시)

3)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서 주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에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장함

표 6.2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연도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2007.02.01	제주시 동 지역, 대형자동차
2017.01.01	제주시 동 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201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
2022.01.01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경형, 소형자동차 포함)

차고지증명제(2022)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제주특별자치도)



4) 부천시의 스마트 주차

-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원도심인 삼정동 상살미 마을의 주차 문제를 개선함
- 마을 주변의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시티패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운영·관리함
- 예비 사업 기간에 공유 주차 공간 280면을 확보하고, 주차장 수급률을 37%에서 109%로 72%포인트 증가시키고 불법주차를 41% 감소시킴
- 공유 주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인 '상살미 사람들'이 만들어져 21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둠

그림 6.4 스마트 주차 사례 (부천시 상살미마을)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15)



나 | 국외 주요 주차정책

1) 독일의 스마트 주차

-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교통의 상당 부분이 주차 공간을 찾는 것 때문에 발생함
 - 독일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는 데 평균 10분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 추가로 4.5km를 주행하고, 평균 1.3kg의 CO₂를 배출한다고 함
- ‘Apcoa Flow’ 앱으로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찾아 운전자를 안내하며, 이 시스템은 RFID(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칩으로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열어줌
 - 바닥에 장착된 센서로 이미 주차됐거나 확보된 주차 공간의 정보와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음
 - 가로등에 부착된 레이저 센서로 빈 주차 공간을 인식해서 관련 정보를 해당 도시의 중앙 정보센터로 보내는 기술(‘City2e 2.0’)로 수집된 정보가 각 도시의 정보 관리센터로 전송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빠르게 빈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경찰은 불법주차 차량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알아볼 수 있음

|그림 6.5 | 가로등 레이저 센서



|그림 6.6 | 주차 공간 애플리케이션



Road traffic: Smarter parking(2015)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Siem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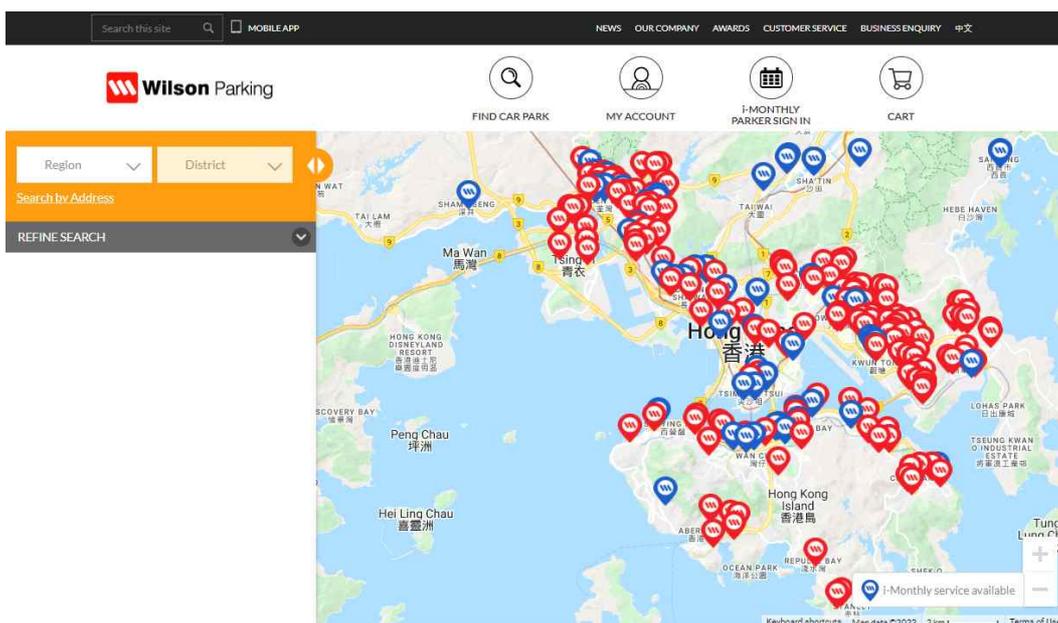
2) 홍콩의 주차정책

- 홍콩 금융 중심가에 있는 빌딩의 지하 1층 주차장 한 칸이 2019년 기준 760만 홍콩달러(약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주차장이 귀하고 주차요금이 비쌈
- 대부분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매월 임차료를 내고 인근 주차장을 빌려 사용하며, 주차구역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약 32만 원에서 약 120만 원 정도로, 차 한 대의 주차 공간은 기본으로 제공하고 추가 차량도 몇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싼 편임
-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아 민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해야 함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 6.7 | 홍콩 민영주차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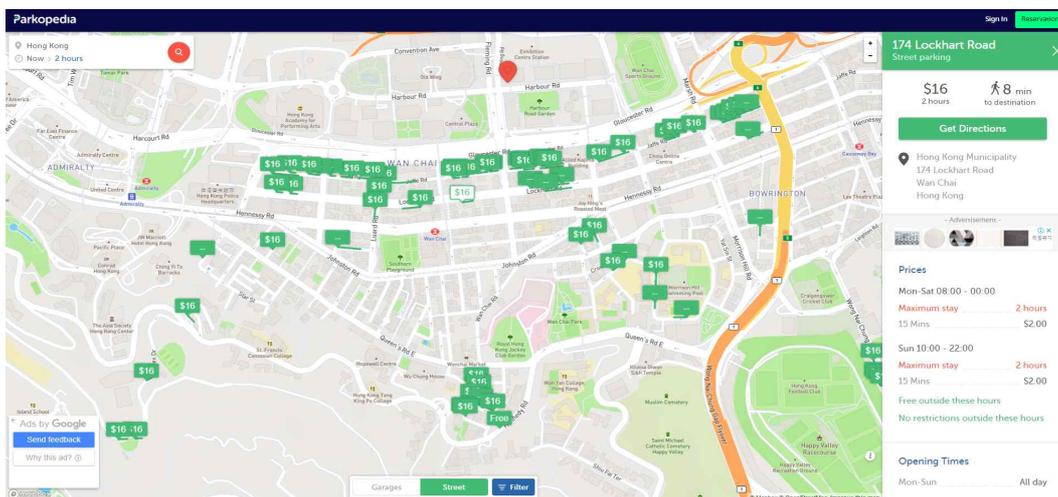


자료 : Wilson parking 홈페이지(https://www.wilsonparking.com.hk/en-us/car_parks/map)

- 홍콩 중심부인 완차이 지역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2시간에 약 2,700원 임
 -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료임
- 민영 주차시설은 시간권, 종일권, 월정기권으로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주차요금은 2시간에 약 12,000원, 월정기권은 약 60만 원에서 약 120만 원 정도임

124

그림 6.8 | 홍콩 주차 공간 정보제공 웹사이트_노상주차장(2시간 기준 요금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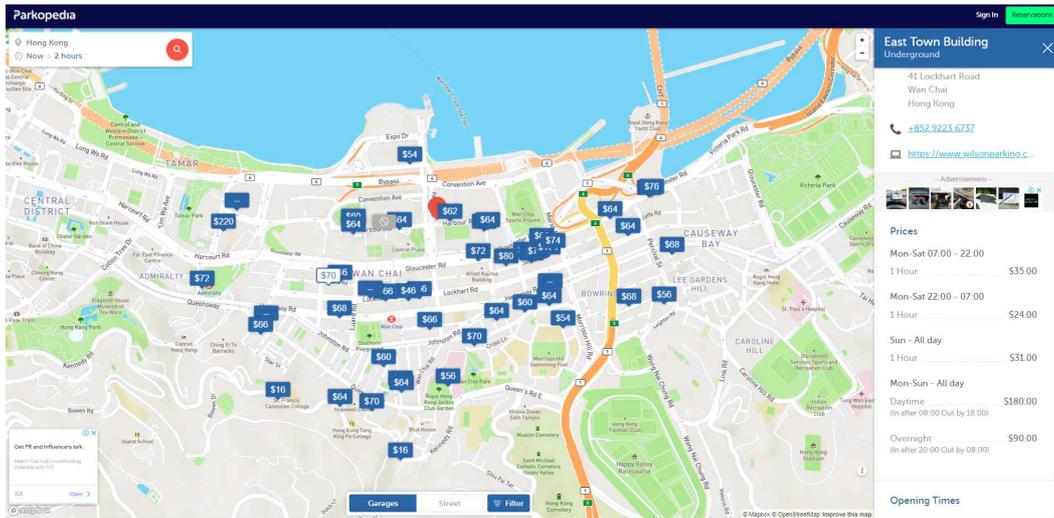


자료 : parkopedia.hk 홈페이지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그림 6.9] 홍콩 주차 공간 정보제공 웹사이트_옥내주차장 (2시간 기준 요금 표시)



자료 : parkopedia.hk 홈페이지

- 홍콩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외곽지역은 승용차 기준으로 시간당 약 2,200원이고 중심가는 약 3,800원임

3) 싱가포르의 주차정책

- 주택 공급 관련 기관인 주택개발국(HDB, Housing Development Board)과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장기 주차, 단기 주차를 위한 주차 쿠폰 등을 판매함
- 단기 주차요금은 중심부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요금을 차등하고 차종에 따라 좀 더 세분함
- 야간시간대인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의 단일 요금체계로 운영함

표 6.3] 싱가포르 단기 주차요금

시간대	승용차		중차량	상하차 차량	이륜차
	중심지	중심지 외			
월~토 7:00~17:00	200원/30분	100원/30분	200원/30분	15분 무료 처음 30분 350원 추가 700원/30분	110원/일
그 외 시간	100원/30분				
야간	850원/야간*	850원/야간	지정된 장소에만 가능	-	110원/야간

자료 : 싱가포르 정부 기관 홈페이지
*10:30pm ~ 7:00am

- 단기 주차요금은 차량 내 단말기인 ERP와 애플리케이션, 쿠폰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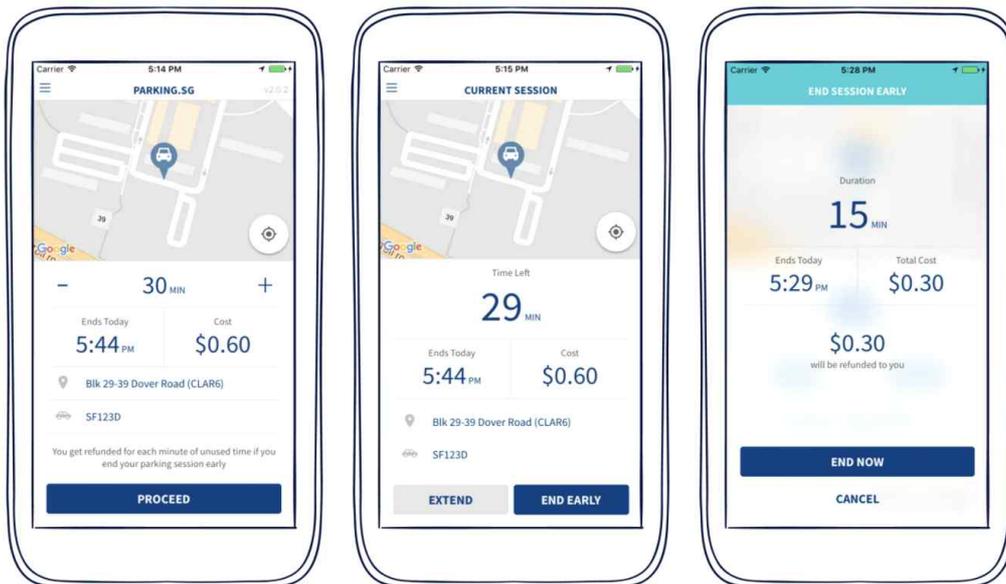
- 차량 내 ERP(Electronic Road Pricing) 단말기를 이용한 자동 징수는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Electronic Parking System)이 설치된 주차장에서 차량에 자동 주차요금 징수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주차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건물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음

그림 6.10 | 싱가포르 주차요금 자동 징수 장치



- Parking.sg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요금을 낼 수 있으며,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선택 후 차량번호와 원하는 주차 시간을 입력하면 카드를 이용한 요금 자동 계산이 가능하고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주차 시간 연장과 환급을 할 수 있음

그림 6.11 | 싱가포르의 주차요금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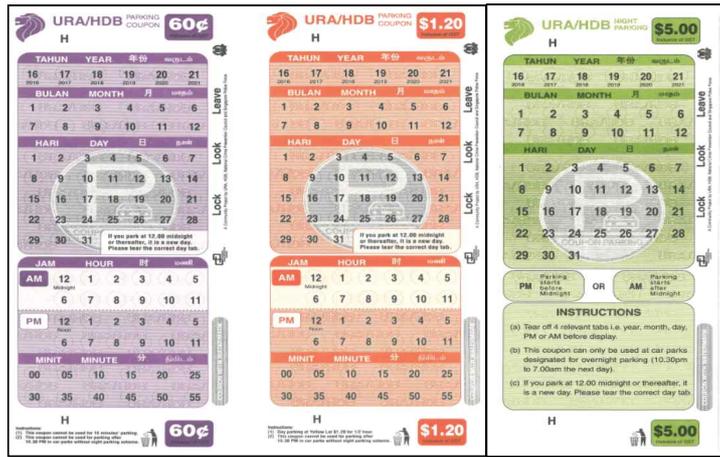


-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낼 수 있으며, 주차 날짜와 시간에 맞게 쿠폰에 구멍을 뚫어 차량 앞 유리에 올려놓으면 주차요원이 확인함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그림 6.12] 싱가포르의 주차요금 쿠폰



- 장기 주차권은 HDB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첫 차량은 대략 8만 원~10만 원 수준이고 두 번째 차량과 비거주자 차량의 요금은 더 비쌈
 - 상용차와 이륜차도 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차함
 - 정기권 주차요금은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표 6.4] 싱가포르 정기권 주차요금

위치/주차장 형태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이륜차(대형)
	Tier1*	Tier1**			
Restricted Zone (Surface/ Kerbside)	\$80	\$165	\$185	\$15	\$30
Restricted Zone (Sheltered)1	\$110	\$190	\$185	\$17	\$34
Designated Area (Surface/ Kerbside)	\$80	\$150	\$185	\$15	\$30
Designated Area (Sheltered)1	\$110	\$170	\$185	\$17	\$34
Rest of Island (Surface/ Kerbside)	\$80	\$90	\$185	\$15	\$30
Rest of Island (Sheltered)1	\$110	\$120	\$185	\$17	\$34
Special Precinct2	\$95	\$105	N.A.	N.A.	N.A.
Industrial Park (Multi-Storey Car Park)	\$110	\$120	\$130	\$17	\$34
Industrial Park (Night Parking)	N.A.	N.A.	\$65	N.A.	N.A.
Centralised Lorry Park	\$80	\$90	\$85	\$15	\$30

자료 : 싱가포르 정부 기관 홈페이지(<https://www.hdb.gov.sg/car-parks>)

Tier 1* : 거주자의 첫 번째 차량

Tier 2** : 거주자의 추가 차량 또는 거주자 외의 차량. N.A.(not available)



4) 파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 파리시에서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
- 파리시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도심 정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며 같은 장소에서 연속 6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함

표 6.5 파리시 방문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5t 미만 경차)

		
시간	1구역~11구역	12구역~20구역
1h	6€(약 8,000원)	4€(약 5,500원)
2h	12€(약 16,000원)	8€(약 11,000원)
3h	24€(약 24,000원)	16€(약 22,000원)
4h	39€(약 52,000원)	26€(약 35,000원)
5h	57€(약 76,000원)	38€(약 51,000원)
6h	75€(약 100,000원)	50€(약 66,000원)

자료 : 파리시 홈페이지(<https://www.paris.fr/pages/payer-son-stationnement-2129>)

- 파리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침은 도심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어서 도심지역 주차요금은 인상하고 교외 지역 주차요금은 인하하며, 도심에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경전철 건설 등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억제함
-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더 친화적인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려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지상 주차 공간을 대폭 감축할 계획임
-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장하고 도심 녹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함

5) 일본의 차고지증명제

- 1960년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노상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차량 정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함
- 차고지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한 운전자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 차고지증명제는 간접 총량제의 사례로, 1962년에 세계 최초로 도쿄를 포함한 6대 도시에서 시행한 후 1973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제도 시행 후인 1971년에는 80% 이상이 차고지를 확보함
- 차고지증명제의 기본조건은 거주지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차장만 차고지로 인정하며 개인주택에 주차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샌프란시스코 스마트 주차미터기 도입과 수요 반응형 주차요금정책

- 샌프란시스코 교통청(SFMTA :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은 많은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불편과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2010년 6월부터 2012년 여름까지 기존의 주차미터기를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진 스마트 장비로 교체하는 "SF park" 프로젝트를 시행함
- 스마트 주차미터기(Smart Parking Meter)로 교체한 후에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함
- 도로 위 아스팔트에 부착된 8,300개의 무선 전자 센서가 주차 공간 사용 여부, 주차 가능 공간의 위치, 주차된 각 차량의 남은 주차 시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SF park의 데이터 시스템(SF park feed)에 전송하면 이 정보는 도로 전광판과 개별 스마트 주차미터기로 전송됨
- 스마트 주차미터기 설치 후 운전자들은 전광판과 스마트 주차미터기에 표출되는 주차요금과 주차 위치 정보를 보고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배회하는 불편이 없어짐

[그림 6.13] 스마트 주차 미터기



자료 : SF park 홈페이지

[그림 6.14]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 도로 위의 센서



- 기존시스템보다 운전자들이 내는 주차요금이 감소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증가했고 주차 공간을 찾는 시간도 단축되는 성과가 있음
 - 노상주차장의 평균 주차요금은 시간당 \$0.11(약 150원)로 4% 정도 감소했고, 노외주차장의 평균 요금은 시간당 \$0.42(약 550원)로 16% 정도 감소함



- 기존에 60%에서 80% 정도이던 주차장 점유율(주차 중인 차량 수/주차 가능 차량 수)이 31%로 감소함
- SF park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는 설치 이전보다 약 5분 정도 빨리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량의 주행거리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30% 감소함

|그림 6.15|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의 효과



7) 뉴욕의 누진 요금제와 탄력요금제

- 뉴욕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려고 주차정책을 활용해서 수요를 관리함
- 뉴욕시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크게 고정 요금제인 Metered Parking과 시간대별 차등 요금체계인 Park Smart NYC가 있음
- 공영주차장의 고정 주차요금은 5개 자치구(Manhattan, Staten Island, Queens, Brooklyn, Bronx)별로 다르며, 주차할 수 있는 시간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함
- 2020년에 주차요금 누진제를 도입해서 첫 주차 시간인 1시간 경과 후 두 번째 주차 시간부터는 요금을 누진해서 부과함

|표 6.6| 뉴욕시 공영주차장 고정 주차요금

Location		All Vehicles Rate		Commercial Vehicles Rate		
		1st Hour	2nd Hour	1st Hour	2nd Hour	3rd Hour
Zone M1	Midtown Core and Lower Manhattan	\$4.50	\$7.50	\$6.00	\$7.00	\$8.00
Zone M2	Manhattan South of 96th St	\$4.00	\$6.75	\$5.00	\$6.00	\$7.00
Zone M3	Manhattan 96th St to 110th St	\$2.50	\$4.00	-	-	-
Zone 1	Business Districts outside of Manhattan	\$2.00	\$4.00	-	-	-
Zone 2	Neighborhood Retail Districts	\$1.50	\$2.50	-	-	-
Zone 3	All Other Metered Locations	\$1.25	\$2.00	-	-	-

자료 : 뉴욕시 홈페이지(<https://www1.nyc.gov/html/dot/html/motorist/parking-rates.shtml>)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 Park Smart는 첨두시간대에 주차요금을 높여서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하려고 배회하는 차량을 줄여 도로 혼잡을 줄이고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주차 프로그램임
- 그리니치(Greenwich) 지역에서 처음으로 Park Smart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주차요금은 시간당 1\$(약 1,300원), 첨두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2\$(약 2,600원)로 설정함
- 혼잡 시간대에 주차 공간 점유율이 약 6% 감소하고, 주차장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차량이 48%에서 60%로 증가함

|그림 6.16| Greenwich Park Smart 시범 구역 |그림 6.17| Park Smart 프로그램 주차구역



|그림 6.18| 뉴욕시의 주차요금체계와 Park Smart NYC의 효과





다 | 주차장 이용효율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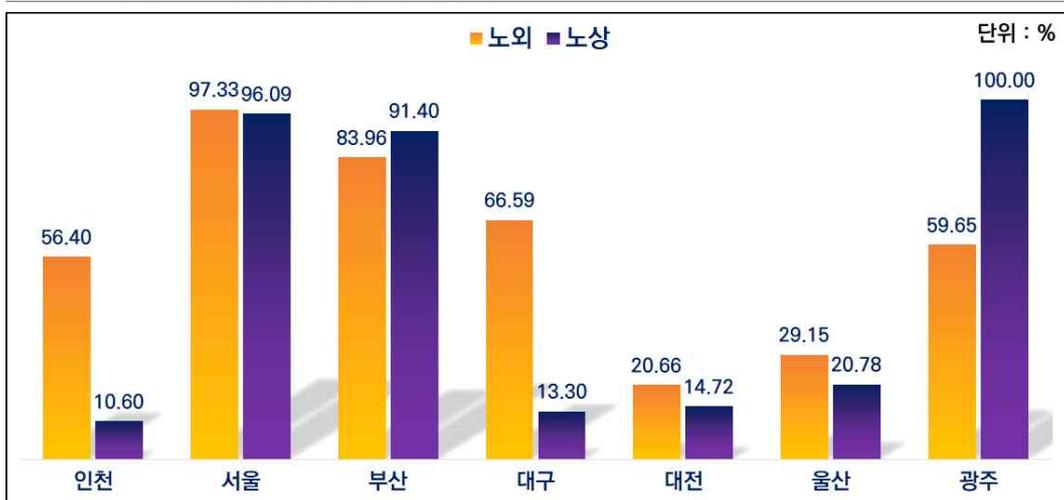
1)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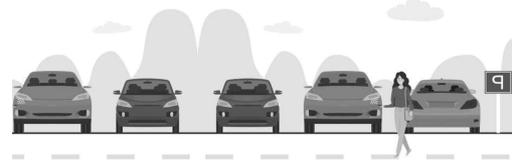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 인천시 내 공영 노외주차장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유료주차장이 335개소, 무료 주차장이 259개소임
- 무료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거주자의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음
- 최근에는 부피와 면적이 큰 캠핑용 차량이 주차단위구획을 초과 점유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무분별한 장기 주차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해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려면 무료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해야 함

P 주요 도시 공영주차장 유·무료 현황

- 국내 주요 도시 중 서울과 부산의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비율이 90% 이상인 데 비해 인천시의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비율은 각각 56.40%, 10.60%에 불과함
- 인천의 노외주차장 유료화 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보다 낮고 대전과 울산보다 높은 수준임
- 인천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비율은 비교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아 무료 노상주차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그림 6.19 | 주요 도시의 주차장 유료화 비율 비교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표 6.기 국내 주요 도시별 공영주차장 유·무료 현황

구분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유료	무료	합	유료	무료	합	
인천	개소 수	335	259	594	190	1,603	1,793
	비율	56.40%	43.60%	100%	10.60%	89.40%	100%
서울	개소 수	474	13	487	14,907	606	15,513
	비율	97.33%	2.67%	100%	96.09%	3.91%	100%
대전	개소 수	63	242	305	39	226	265
	비율	20.66%	79.34%	100.00%	14.72%	85.28%	100.00%
대구	개소 수	283	142	425	58	378	436
	비율	66.59%	33.41%	100.00%	13.30%	86.70%	100.00%
울산	개소 수	65	158	223	16	61	77
	비율	29.15%	70.85%	100.00%	20.78%	79.22%	100.00%
부산	개소 수	225	43	268	170	16	186
	비율	83.96%	16.04%	100.00%	91.40%	8.60%	100.00%
광주	개소 수	238	161	399	11		11
	비율	59.65%	40.35%	100.00%	100.00%	0.00%	100.00%

전국 주차장 정보 표준 데이터 자료를 연구자가 재가공(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주차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도로 공간의 공공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도로의 기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로 전환해야 함
 -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함
 - 토지이용 특성과 대중교통 여건 등 교통 특성에 따라 15m 이하 생활권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1급지 지역부터 주택가 지역까지 단계별로 유료화함
 - 주택가 지역은 양호한 지역부터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유료화함
- 노상 주차구획을 정비해서 노상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통환경개선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과 연계해서 노상주차 환경을 개선함

2) 무인 자동화 시스템 전환

- 주차장 운영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인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주차장 운영비용을 절감해야 함
- 인천에는 주차장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수익이 덜 발생하는 주차장을 위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초기 시설비가 투자되지만 매년 발생하는 인건비가 필요 없어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주차장이 많음



- 부천시는 무정차 요금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부천시의 무정차 요금 정산 시스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주차요금이 자동 계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임
 - 무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요금 정산의 불편을 해소해서 주차장 이용효율이 향상됨
- 무인 주차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무인 주차장에 대해 현금 사용 불편을 생각하는 시민이 응답자의 28.1%나 되므로, 계좌 즉시 이체 등의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관리자가 없어 범죄 등에 노출될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도 있으므로 무인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CCTV 설치는 물론 사설 보안업체와 계약으로 유사시 언제든지 주차장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도 있으므로 인천시 조례에 따라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그림 6.20] 무인 주차장에 대한 시민 인식



3)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 인천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와 주차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해서 2023년까지 350여 개 모든 공영(유료) 노외주차장이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표 6.8 | 인천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현황과 계획

구분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개소 수(개)		350	23	127	200	350
예산 (백만 원)	합계	X	500	600	1,000	2,100
	시비		500	250	450	1,200
	군·구비		-	350	550	900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

-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검색해서 현황정보를 얻고, 요금 결제와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림 6.21 | 인천시 스마트 주차시스템 이용 방법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4) 요금체계의 다양화

P 누진 요금제

- 누진 요금제란 주차수요 조절을 위해 주차 이용 누적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연속으로 장시간 주차하면 더 높은 비용을 적용하는 제도임
- 주차점유율이 높은 주차장은 누진 요금제를 적용해서 장시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뉴욕시는 도심지의 주차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주차요금 누진제를 도입해서 최초 1시간 경과 후부터는 주차요금을 누진해서 부과함
-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광주 등에서 주차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2시간 이후에는 단위 주차요금을 1.5배 또는 2배 더 많이 부과함



- 인천에서는 1금지 중 주차장공급률이 낮고 추가로 주차장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누진 요금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P 주차 시간 상한제

- 주차 시간 상한제는 도심의 중심상업지역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서 주차 회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1회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임
- 미국에서는 특정 장소에 차량을 72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가 있음
 - 시애틀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연속으로 7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44\$(약 6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함
 -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도 조례로 보트나 트레일러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노상이나 공공 주차시설에서 연속 72시간 이상 주차하지 못하게 함
 -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2020년부터 72시간 주차 제한법을 시행하려다가 팬데믹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다가 장기 주차 차량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2021년 10월부터 시행함
- 인천시에서는 1금지에서 전일권과 월 정기권 등의 등록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08:00~22:00(15시간)에는 최대 주차 허용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함

표 6.9 주차 시간 상한제 적용 개요

대상차량	상한제 시행 시간	상한 시간	비고
등록 차량 외 모든 차량	08:00~22:00 (15시간)	최대 3시간	22:00 이후 주차 차량은 다음 날 08:00 이전 출차

P 탄력요금제

- 탄력요금제는 주차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주차 이용 첨두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제도임
-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에서 주차수요 첨두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이므로 이 시간대에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일반주차요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불법주차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는 도시 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초래함
- 각 자치구의 주차 수급 실태 보고서에 있는 노상주차 실태를 보면, 불법주차 비율이 주간 평균 67.77%, 야간 평균 72.36%로 매우 높음



6.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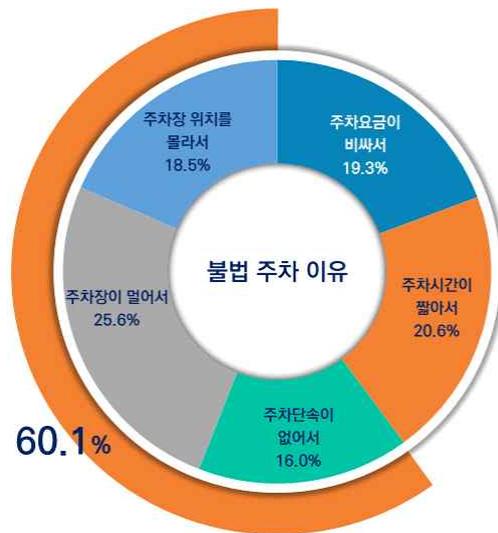
표 6.10 | 인천시 자치구별 노상주차 실태

구분	주간				야간			
	적법		불법		적법		불법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합계	58,865	32.23%	135,269	67.77%	49,161	27.64%	143,590	72.36%
중구	8,239	18.08%	37,326	81.92%	7,723	16.52%	39,030	83.48%
동구	1,110	21.92%	3,954	78.08%	1,466	30.26%	3,378	69.74%
미추홀구	8,842	36.30%	15,518	63.70%	9,788	31.87%	20,924	68.13%
연수구	6,213	46.75%	7,077	53.25%				
남동구	18,269	42.64%	24,573	57.36%	11,229	34.87%	20,969	65.13%
부평구	5,378	21.95%	19,125	78.05%	5,551	19.66%	22,677	80.34%
계양구	4,576	48.79%	4,803	51.21%	8,045	43.27%	10,549	56.73%
서구	6,238	21.41%	22,893	78.59%	5,359	17.05%	26,063	82.95%

자료 : 군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자치구별 주차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 주차의식 조사에 응한 사람의 절반이 넘는 60.1%가 주차장이 멀거나 위치를 모르고 단속이 없어서 불법으로 주차한다고 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적정 위치에 주차장을 공급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 6.22 | 인천시민의 불법주차 이유 분포



6) 정기권(주야간) 세분화

-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은 주야간의 구분 없이 전일제 요금만 있어서 야간에만 주차하는 주거지역 주차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부담을 줘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야간에만 주차하는 주거지역 주차장 이용자의 공영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용 월 정기권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주요 도시 중에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야간 월 정기권 제도를 운영함

표 6.11 | 국내 주요 도시의 1급지 월 정기권 요금

구분	인천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월정기 주차권 요금(원)	전일	100,000	250,000	-	-	-	-
	주간	-	-	140,000	100,000	80,000	220,000
	야간	-	100,000	100,000	75,000	60,000	90,000

자료 : 국내 주요 도시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최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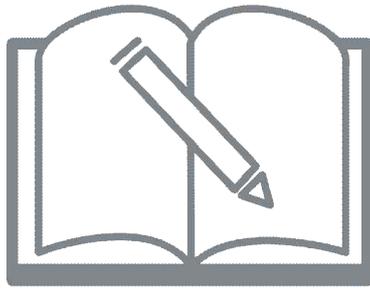
- 야간 월 정기권과 별개로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입차 후 20분 정도를 무료로 할 수도 있음



7

부록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부록 1. 기초구역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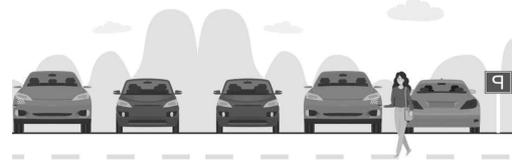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1.계양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000	3	3	3	21036	3	3	3
21001	3	3	3	21037	3	3	3
21002	3	3	3	21038	3	3	3
21003	3	3	3	21039	2	2	2
21004	3	3	3	21040	2	2	2
21005	3	3	3	21041	3	3	3
21006	2	2	2	21042	3	3	3
21007	3	3	3	21043	3	3	3
21008	3	3	3	21044	3	3	3
21009	3	3	3	21045	3	3	3
21010	3	3	3	21046	3	3	3
21011	3	3	3	21047	3	3	3
21012	2	2	2	21048	3	3	3
21013	2	2	2	21049	1	1	1
21014	3	3	3	21050	1	1	1
21015	3	3	3	21051	3	3	3
21016	3	3	3	21052	1	1	3
21017	3	3	3	21053	1	1	1
21018	3	3	3	21054	1	1	1
21019	3	3	3	21055	1	1	1
21020	3	3	3	21056	3	3	3
21021	3	3	3	21057	3	3	3
21022	3	3	3	21058	3	3	3
21023	3	3	3	21059	3	3	3
21024	3	3	3	21060	1	1	1
21025	3	3	3	21061	3	3	3
21026	3	3	3	21062	3	3	3
21027	2	2	2	21063	3	3	3
21028	3	3	3	21064	3	3	3
21029	3	3	3	21065	1	1	1
21030	3	3	3	21066	1	1	1
21031	2	2	2	21067	1	1	1
21032	3	3	3	21068	1	1	1
21033	3	3	3	21069	1	1	1
21034	2	2	2	21070	3	3	3
21035	2	2	2	21071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1.계양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072	3	3	3	21101	3	3	3
21073	2	2	2	21102	3	3	3
21074	3	3	3	21103	3	3	3
21075	3	3	3	21104	3	3	3
21076	3	3	3	21105	2	2	2
21077	3	3	3	21106	3	3	3
21078	3	3	3	21107	3	3	3
21079	1	1	1	21108	3	3	3
21080	1	1	1	21109	3	3	3
21081	3	3	3	21110	3	3	3
21082	3	3	3	21111	3	3	3
21083	3	3	3	21112	3	3	3
21084	3	3	3	21113	3	3	3
21085	3	3	3	21114	3	3	3
21086	2	2	2	21115	3	3	3
21087	3	3	3	21116	3	3	3
21088	3	3	3	21117	3	3	3
21089	2	2	2	21118	3	3	3
21090	3	3	3	21119	3	3	3
21091	3	3	3	21120	3	3	3
21092	3	3	3	21121	3	3	3
21093	3	3	3	21122	3	3	3
21094	3	3	3	21123	3	3	3
21095	3	3	3	21124	3	3	3
21096	3	3	3	21125	3	3	3
21097	3	3	3	21126	3	3	3
21098	2	2	3	21127	3	3	3
21099	3	3	3	21128	3	3	3
21100	3	3	3	21129	3	3	3

2.부평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300	3	3	3	21303	2	2	2
21301	3	3	3	21304	3	3	3
21302	3	3	3	21305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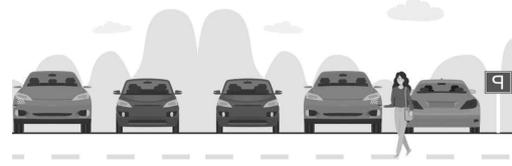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7. 부록

2.부평구							
기초구역번호	급지			기초구역번호	급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306	3	3	3	21344	1	1	1
21307	3	3	3	21345	2	2	2
21308	3	3	3	21346	2	2	2
21309	3	3	3	21347	3	3	3
21310	3	3	3	21348	2	2	2
21311	3	3	3	21349	3	3	3
21312	3	3	3	21350	3	3	3
21313	3	3	3	21351	3	3	3
21314	3	3	3	21352	3	3	3
21315	3	3	3	21353	3	3	3
21316	3	3	3	21354	2	2	2
21317	3	3	3	21355	3	3	3
21318	3	3	3	21356	3	3	3
21319	2	2	2	21357	3	3	3
21320	2	2	2	21358	2	2	2
21321	3	3	3	21359	1	1	1
21322	3	3	3	21360	1	1	1
21323	2	2	2	21361	3	3	3
21324	3	3	3	21362	3	3	3
21325	3	3	3	21363	3	3	3
21326	3	3	3	21364	2	2	2
21327	3	3	3	21365	1	1	1
21328	3	3	3	21366	1	1	1
21329	3	3	3	21367	3	3	3
21330	3	3	3	21368	3	3	3
21331	3	3	3	21369	1	1	1
21332	3	3	3	21370	3	3	3
21333	2	2	2	21371	2	2	2
21334	3	3	3	21372	3	3	3
21335	2	2	2	21373	3	3	3
21336	3	3	3	21374	3	3	3
21337	3	3	3	21375	3	3	3
21338	1	1	1	21376	3	3	3
21339	3	3	3	21377	3	3	3
21340	3	3	3	21378	3	3	3
21341	3	3	3	21379	1	1	1
21342	3	3	3	21380	3	3	3
21343	3	3	3	21381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2.부평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382	3	3	3	21420	3	3	3
21383	3	3	3	21421	3	3	3
21384	3	3	3	21422	3	3	3
21385	2	2	2	21423	2	2	2
21386	3	3	3	21424	2	2	2
21387	3	3	3	21425	2	2	2
21388	2	2	2	21426	3	3	3
21389	1	1	1	21427	2	2	2
21390	1	1	1	21428	3	3	3
21391	1	1	1	21429	3	3	3
21392	1	1	1	21430	3	3	3
21393	1	1	1	21431	3	3	3
21394	1	1	1	21432	3	3	3
21395	1	1	1	21433	3	3	3
21396	1	1	1	21434	3	3	3
21397	2	2	3	21435	2	2	2
21398	2	2	2	21436	3	3	3
21399	1	1	1	21437	3	3	3
21400	3	3	3	21438	3	3	3
21401	2	2	2	21439	3	3	3
21402	3	3	3	21440	2	2	2
21403	2	2	2	21441	2	2	2
21404	1	1	1	21442	3	3	3
21405	2	2	2	21443	3	3	3
21406	2	2	2	21444	3	3	3
21407	1	1	1	21445	3	3	3
21408	2	2	2	21446	1	1	2
21409	2	2	3	21447	3	3	3
21410	2	2	2	21448	3	3	3
21411	3	3	3	21449	3	3	3
21412	2	2	2	21450	2	2	2
21413	2	2	2	21451	2	2	2
21414	3	3	3	21452	3	3	3
21415	3	3	3	21453	3	3	3
21416	3	3	3	21454	3	3	3
21417	3	3	3	21455	3	3	3
21418	3	3	3	21456	3	3	3
21419	3	3	3	21457	3	3	3



7. 부록

2.부평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458	3	3	3	21460	3	3	3
21459	3	3	3				

3.남동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500	3	3	3	21530	3	3	3
21501	3	3	3	21531	2	2	2
21502	3	3	3	21532	2	2	2
21503	3	3	3	21533	3	3	3
21504	3	3	3	21534	3	3	3
21505	3	3	3	21535	3	3	3
21506	3	3	3	21536	3	3	3
21507	3	3	3	21537	3	3	3
21508	3	3	3	21538	3	3	3
21509	3	3	3	21539	3	3	3
21510	3	3	3	21540	3	3	3
21511	2	3	2	21541	3	3	3
21512	3	3	3	21542	3	3	3
21513	2	2	2	21543	2	2	3
21514	3	3	3	21544	1	1	1
21515	3	3	3	21545	3	3	3
21516	3	3	3	21546	2	2	3
21517	2	2	3	21547	3	3	3
21518	2	2	2	21548	3	3	3
21519	3	3	3	21549	3	3	3
21520	2	2	3	21550	3	3	3
21521	3	3	3	21551	2	2	2
21522	3	3	3	21552	2	2	2
21523	3	3	3	21553	2	2	3
21524	2	2	2	21554	1	1	1
21525	3	3	3	21555	1	1	1
21526	3	3	3	21556	1	1	1
21527	3	3	3	21557	1	1	1
21528	3	3	3	21558	1	1	1
21529	3	3	3	21559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3.남동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560	3	3	3	21598	2	2	2
21561	3	3	3	21599	3	3	3
21562	3	3	3	21600	3	3	3
21563	3	3	3	21601	3	3	3
21564	3	3	3	21602	3	3	3
21565	2	2	2	21603	3	3	3
21566	2	2	3	21604	2	2	2
21567	2	2	2	21605	3	3	3
21568	3	3	3	21606	3	3	3
21569	3	3	3	21607	3	3	3
21570	1	1	1	21608	3	3	3
21571	3	3	3	21609	3	3	3
21572	3	3	3	21610	3	3	3
21573	1	1	1	21611	3	3	3
21574	1	1	1	21612	3	3	3
21575	3	3	3	21613	3	3	3
21576	3	3	3	21614	3	3	3
21577	3	3	3	21615	3	3	3
21578	3	3	3	21616	3	3	3
21579	3	3	3	21617	3	3	3
21580	3	3	3	21618	3	3	3
21581	3	3	3	21619	3	3	3
21582	1	1	1	21620	3	3	3
21583	3	3	3	21621	3	3	3
21584	3	3	3	21622	3	3	3
21585	3	3	3	21623	3	3	3
21586	3	3	3	21624	3	3	3
21587	3	3	3	21625	3	3	3
21588	3	3	3	21626	3	3	3
21589	2	2	2	21627	3	3	3
21590	3	3	3	21628	3	3	3
21591	2	2	2	21629	3	3	3
21592	3	3	3	21630	3	3	3
21593	2	2	2	21631	3	3	3
21594	3	3	3	21632	1	1	1
21595	3	3	3	21633	2	2	2
21596	2	2	2	21634	3	3	3
21597	3	3	3	21635	3	3	3



7. 부록

3. 남동구							
기초구역번호	급지			기초구역번호	급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636	3	3	3	21669	3	3	3
21637	3	3	3	21670	3	3	3
21638	3	3	3	21671	1	1	1
21639	3	3	3	21672	2	2	2
21640	3	3	3	21673	1	1	1
21641	3	3	3	21674	1	1	1
21642	3	3	3	21675	3	3	3
21643	3	3	3	21676	3	3	3
21644	3	3	3	21677	3	3	3
21645	2	2	2	21678	3	3	3
21646	3	3	3	21679	1	1	2
21647	3	3	3	21680	3	3	3
21648	3	3	3	21681	3	3	3
21649	3	3	3	21682	3	3	3
21650	3	3	3	21683	2	2	2
21651	3	3	3	21684	3	3	3
21652	3	3	3	21685	3	3	3
21653	1	1	1	21686	3	3	3
21654	3	3	3	21687	3	3	3
21655	1	1	1	21688	3	3	3
21656	3	3	3	21689	3	3	3
21657	3	3	3	21690	3	3	3
21658	3	3	3	21691	3	3	3
21659	3	3	3	21692	3	3	3
21660	3	3	3	21693	3	3	3
21661	3	3	3	21694	3	3	3
21662	3	3	3	21695	3	3	3
21663	3	3	3	21696	3	3	3
21664	3	3	3	21697	3	3	3
21665	3	3	3	21698	3	3	3
21666	1	1	1	21699	3	3	3
21667	2	2	2	21700	3	3	3
21668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4.연수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900	3	3	3	21938	3	3	3
21901	3	3	3	21939	3	3	3
21902	3	3	3	21940	3	3	3
21903	3	3	3	21941	3	3	3
21904	2	2	2	21942	3	3	3
21905	3	3	3	21943	3	3	3
21906	3	3	3	21944	1	1	1
21907	3	3	3	21945	2	2	2
21908	3	3	3	21946	3	3	3
21909	3	3	3	21947	3	3	3
21910	3	3	3	21948	3	3	3
21911	3	3	3	21949	3	3	3
21912	3	3	3	21950	3	3	3
21913	2	2	2	21951	3	3	3
21914	3	3	3	21952	3	3	3
21915	3	3	3	21953	2	2	2
21916	3	3	3	21954	3	3	3
21917	3	3	3	21955	3	3	3
21918	3	3	3	21956	3	3	3
21919	2	2	3	21957	3	3	3
21920	3	3	3	21958	3	3	3
21921	3	3	3	21959	3	3	3
21922	3	3	3	21960	3	3	3
21923	3	3	3	21961	3	3	3
21924	3	3	3	21962	3	3	3
21925	2	2	2	21963	3	3	3
21926	1	1	1	21964	3	3	3
21927	3	3	3	21965	3	3	3
21928	3	3	3	21966	3	3	3
21929	3	3	3	21967	3	3	3
21930	2	2	2	21968	3	3	3
21931	3	3	3	21969	3	3	3
21932	1	1	1	21970	3	3	3
21933	3	3	3	21971	3	3	3
21934	3	3	3	21972	1	1	1
21935	3	3	3	21973	3	3	3
21936	3	3	3	21974	3	3	3
21937	3	3	3	21975	3	3	3



7.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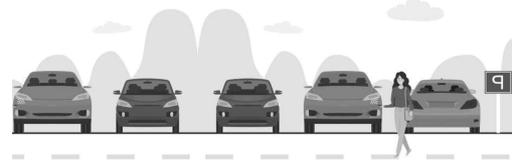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4. 연수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1976	3	3	3	22002	2	2	2
21977	3	3	3	22003	2	2	2
21978	3	3	3	22004	3	3	3
21979	3	3	3	22005	3	3	3
21980	3	3	3	22006	1	1	1
21981	3	3	3	22007	1	1	1
21982	2	2	2	22008	3	3	3
21983	3	3	3	22009	3	3	3
21984	3	3	3	22010	3	3	3
21985	3	3	3	22011	3	3	3
21986	2	2	2	22012	3	3	3
21987	2	2	2	22013	2	2	3
21988	2	2	2	22014	3	3	3
21989	2	2	2	22015	3	3	3
21990	3	3	3	22016	2	2	2
21991	3	3	3	22017	3	3	3
21992	3	3	3	22018	1	1	1
21993	3	3	3	22019	3	3	3
21994	3	3	3	22020	1	1	1
21995	2	2	2	22021	2	2	2
21996	3	3	3	22022	2	2	2
21997	3	3	3	22023	3	3	3
21998	2	2	2	22024	3	3	3
21999	3	3	3	22025	3	3	3
22000	2	2	2	22026	3	3	3
22001	2	2	2	22031	3	3	3

5. 미추홀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100	3	3	3	22106	1	1	1
22101	1	1	1	22107	3	3	3
22102	1	1	1	22108	3	3	3
22103	3	3	3	22109	3	3	3
22104	2	2	3	22110	2	2	2
22105	1	1	1	22111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5.미추홀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112	3	3	3	22150	3	3	3
22113	3	3	3	22151	3	3	3
22114	3	3	3	22152	3	3	3
22115	3	3	3	22153	3	3	3
22116	3	3	3	22154	1	1	1
22117	3	3	3	22155	3	3	3
22118	2	2	2	22156	3	3	3
22119	3	3	3	22157	3	3	3
22120	3	3	3	22158	3	3	3
22121	3	3	3	22159	3	3	3
22122	3	3	3	22160	2	2	2
22123	3	3	3	22161	1	1	1
22124	3	3	3	22162	1	1	1
22125	3	3	3	22163	3	3	3
22126	3	3	3	22164	2	2	3
22127	2	2	2	22165	1	3	3
22128	1	1	1	22166	3	3	3
22129	3	3	3	22167	2	2	2
22130	3	3	3	22168	2	2	3
22131	2	2	2	22169	1	2	2
22132	1	1	1	22170	1	1	1
22133	1	1	1	22171	1	1	1
22134	1	1	1	22172	1	1	1
22135	2	2	2	22173	1	1	1
22136	3	3	3	22174	1	1	1
22137	3	3	3	22175	1	1	1
22138	1	1	1	22176	3	3	3
22139	1	1	1	22177	1	1	1
22140	1	1	1	22178	3	3	3
22141	1	1	1	22179	1	3	3
22142	1	1	1	22180	1	1	2
22143	3	3	3	22181	2	2	3
22144	3	3	3	22182	3	3	3
22145	2	2	2	22183	3	3	3
22146	2	2	2	22184	3	3	3
22147	3	3	3	22185	2	2	2
22148	3	3	3	22186	1	1	1
22149	3	3	3	22187	2	2	2



7.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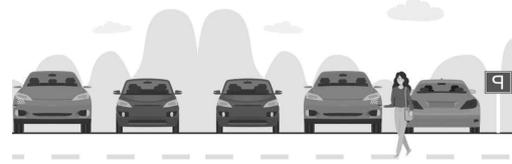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5.미추홀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188	3	3	3	22216	3	3	3
22189	2	2	2	22217	2	3	3
22190	1	1	1	22218	3	3	3
22191	1	1	1	22219	1	1	1
22192	3	3	3	22220	2	2	2
22193	2	2	2	22221	2	2	2
22194	3	3	3	22222	3	3	3
22195	3	3	3	22223	3	3	3
22196	3	3	3	22224	3	3	3
22197	3	3	3	22225	3	3	3
22198	3	3	3	22226	3	3	3
22199	3	3	3	22227	2	2	2
22200	3	3	3	22228	3	3	3
22201	2	2	2	22229	3	3	3
22202	3	3	3	22230	3	3	3
22203	3	3	3	22231	3	3	3
22204	3	3	3	22232	3	3	3
22205	3	3	3	22233	3	3	3
22206	3	3	3	22234	3	3	3
22207	3	3	3	22235	2	2	2
22208	3	3	3	22236	2	2	2
22209	2	2	2	22237	3	3	3
22210	2	3	3	22238	3	3	3
22211	3	3	3	22239	3	3	3
22212	3	3	3	22240	3	3	3
22213	3	3	3	22241	3	3	3
22214	3	3	3	22242	1	1	1
22215	3	3	3	22243	3	3	3

6.중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300	1	1	1	22304	1	1	1
22301	3	3	3	22305	3	3	3
22302	1	1	1	22306	3	3	3
22303	1	1	1	22307	1	1	1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6.중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308	2	2	2	22346	3	3	3
22309	2	2	2	22347	3	3	3
22310	2	2	2	22348	1	1	1
22311	3	3	3	22349	1	1	1
22312	1	1	1	22350	3	3	3
22313	1	1	1	22351	1	1	1
22314	1	1	1	22352	3	3	3
22315	1	1	1	22353	3	3	3
22316	1	1	1	22354	3	3	3
22317	1	1	1	22355	3	3	3
22318	1	1	1	22356	3	3	3
22319	2	3	3	22357	2	2	2
22320	1	3	3	22358	3	3	3
22321	1	1	1	22359	3	3	3
22322	1	1	1	22360	3	3	3
22323	1	1	1	22361	3	3	3
22324	1	1	1	22362	3	3	3
22325	1	1	1	22363	3	3	3
22326	3	3	3	22364	3	3	3
22327	1	3	3	22365	3	3	3
22328	2	2	2	22366	2	2	3
22329	1	1	1	22367	3	3	3
22330	1	1	1	22368	3	3	3
22331	1	1	1	22369	3	3	3
22332	3	3	3	22370	1	1	1
22333	1	1	1	22371	1	1	1
22334	1	1	1	22372	3	3	3
22335	3	3	3	22373	2	2	2
22336	3	3	3	22374	3	3	3
22337	2	2	2	22375	2	2	2
22338	1	1	1	22376	3	3	3
22339	3	3	3	22377	3	3	3
22340	3	3	3	22378	3	3	3
22341	3	3	3	22379	3	3	3
22342	3	3	3	22380	3	3	3
22343	3	3	3	22381	3	3	3
22344	3	3	3	22382	3	3	3
22345	3	3	3	22383	3	3	3



7. 부록

6. 중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384	3	3	3	22398	3	3	3
22385	3	3	3	22399	3	3	3
22386	3	3	3	22400	3	3	3
22387	3	3	3	22401	3	3	3
22388	3	3	3	22402	1	1	1
22389	3	3	3	22403	2	2	2
22390	3	3	3	22404	3	3	3
22391	3	3	3	22405	3	3	3
22392	3	3	3	22406	3	3	3
22393	3	3	3	22407	3	3	3
22394	3	3	3	22408	3	3	3
22395	3	3	3	22409	1	1	1
22396	3	3	3	22410	1	1	1
22397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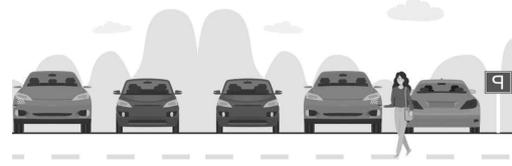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7. 동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500	3	3	3	22518	3	3	3
22501	3	3	3	22519	2	2	2
22502	3	3	3	22520	3	3	3
22503	3	3	3	22521	3	3	3
22504	2	2	2	22522	3	3	3
22505	3	3	3	22523	3	3	3
22506	3	3	3	22524	3	3	3
22507	3	3	3	22525	3	3	3
22508	2	2	2	22526	3	3	3
22509	3	3	3	22527	3	3	3
22510	3	3	3	22528	3	3	3
22511	2	2	2	22529	3	3	3
22512	3	3	3	22530	3	3	3
22513	3	3	3	22531	3	3	3
22514	3	3	3	22532	3	3	3
22515	3	3	3	22533	3	3	3
22516	3	3	3	22534	3	3	3
22517	3	3	3	22535	2	2	2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7.동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536	3	3	3	22556	1	1	1
22537	1	1	1	22557	1	1	1
22538	2	2	2	22558	3	3	3
22539	2	2	2	22559	3	3	3
22540	3	3	3	22560	2	2	2
22541	3	3	3	22561	3	3	3
22542	1	1	1	22562	3	3	3
22543	1	1	1	22563	3	3	3
22544	1	1	1	22564	3	3	3
22545	1	1	1	22565	2	2	2
22546	2	2	2	22566	2	2	2
22547	3	3	3	22567	3	3	3
22548	2	2	2	22568	3	3	3
22549	1	1	1	22569	3	3	3
22550	1	1	1	22570	3	3	3
22551	2	2	2	22571	3	3	3
22552	2	2	2	22572	3	3	3
22553	1	1	1	22573	3	3	3
22554	2	2	2	22574	3	3	3
22555	1	1	1	22575	3	3	3

8.서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600	3	3	3	22612	3	3	3
22601	3	3	3	22613	3	3	3
22602	3	3	3	22614	3	3	3
22603	3	3	3	22615	3	3	3
22604	3	3	3	22616	2	2	2
22605	3	3	3	22617	2	2	2
22606	3	3	3	22618	3	3	3
22607	3	3	3	22619	3	3	3
22608	2	2	2	22620	3	3	3
22609	3	3	3	22621	3	3	3
22610	3	3	3	22622	3	3	3
22611	3	3	3	22623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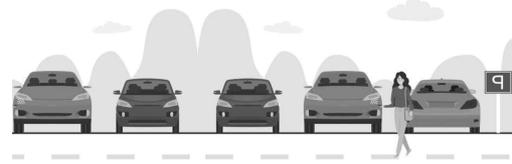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7. 부록

8.서구							
기초구역번호	급지			기초구역번호	급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624	2	2	2	22662	3	3	3
22625	3	3	3	22663	3	3	3
22626	3	3	3	22664	3	3	3
22627	3	3	3	22665	3	3	3
22628	3	3	3	22666	3	3	3
22629	3	3	3	22667	3	3	3
22630	3	3	3	22668	3	3	3
22631	3	3	3	22669	3	3	3
22632	3	3	3	22670	3	3	3
22633	3	3	3	22671	3	3	3
22634	3	3	3	22672	3	3	3
22635	2	2	2	22673	3	3	3
22636	2	2	2	22674	3	3	3
22637	3	3	3	22675	3	3	3
22638	2	2	2	22676	3	3	3
22639	2	2	2	22677	2	2	2
22640	2	2	2	22678	2	2	2
22641	3	3	3	22679	3	3	3
22642	2	2	2	22680	3	3	3
22643	3	3	3	22681	3	3	3
22644	3	3	3	22682	1	1	1
22645	3	3	3	22683	3	3	3
22646	3	3	3	22684	3	3	3
22647	1	1	1	22685	3	3	3
22648	3	3	3	22686	3	3	3
22649	3	3	3	22687	3	3	3
22650	3	3	3	22688	3	3	3
22651	3	3	3	22689	3	3	3
22652	3	3	3	22690	3	3	3
22653	3	3	3	22691	3	3	3
22654	2	2	2	22692	2	2	2
22655	3	3	3	22693	3	3	3
22656	3	3	3	22694	3	3	3
22657	3	3	3	22695	1	1	1
22658	3	3	3	22696	2	2	2
22659	3	3	3	22697	2	2	2
22660	3	3	3	22698	2	2	2
22661	3	3	3	22699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8.서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701	2	2	2	22739	3	3	3
22702	3	3	3	22740	2	2	2
22703	3	3	3	22741	3	3	3
22704	2	2	2	22742	3	3	3
22705	2	2	2	22743	3	3	3
22706	3	3	3	22744	3	3	3
22707	2	2	2	22745	3	3	3
22708	3	3	3	22746	3	3	3
22709	3	3	3	22747	3	3	3
22710	3	3	3	22748	2	2	2
22711	3	3	3	22749	3	3	3
22712	3	3	3	22750	3	3	3
22713	2	2	2	22751	3	3	3
22714	3	3	3	22752	3	3	3
22715	3	3	3	22753	2	2	2
22716	3	3	3	22754	3	3	3
22717	3	3	3	22755	3	3	3
22718	2	2	2	22756	3	3	3
22719	2	2	2	22757	3	3	3
22720	2	2	2	22758	3	3	3
22721	2	2	2	22759	3	3	3
22722	2	2	2	22760	3	3	3
22723	3	3	3	22761	3	3	3
22724	3	3	3	22762	3	3	3
22725	3	3	3	22763	3	3	3
22726	1	1	1	22764	3	3	3
22727	2	2	2	22765	3	3	3
22728	3	3	3	22766	2	2	2
22729	3	3	3	22767	3	3	3
22730	2	2	2	22768	3	3	3
22731	3	3	3	22769	3	3	3
22732	3	3	3	22770	3	3	3
22733	3	3	3	22771	3	3	3
22734	2	2	3	22772	3	3	3
22735	3	3	3	22773	3	3	3
22736	1	1	1	22774	3	3	3
22737	2	2	2	22775	1	1	1
22738	3	3	3	22776	1	1	1



7. 부록

8.서구							
기초구역번호	급지			기초구역번호	급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777	3	3	3	22815	3	3	3
22778	3	3	3	22816	3	3	3
22779	3	3	3	22817	3	3	3
22780	3	3	3	22818	3	3	3
22781	2	2	2	22819	3	3	3
22782	3	3	3	22820	3	3	3
22783	3	3	3	22821	3	3	3
22784	3	3	3	22822	2	2	2
22785	2	2	3	22823	3	3	3
22786	3	3	3	22824	3	3	3
22787	3	3	3	22825	3	3	3
22788	3	3	3	22826	3	3	3
22789	1	1	1	22827	3	3	3
22790	1	1	1	22828	3	3	3
22791	3	3	3	22829	3	3	3
22792	3	3	3	22830	3	3	3
22793	3	3	3	22831	3	3	3
22794	3	3	3	22832	3	3	3
22795	3	3	3	22833	3	3	3
22796	2	2	2	22834	3	3	3
22797	3	3	3	22835	3	3	3
22798	3	3	3	22836	3	3	3
22799	3	3	3	22837	3	3	3
22800	3	3	3	22838	3	3	3
22801	3	3	3	22839	3	3	3
22802	1	1	1	22840	3	3	3
22803	2	2	2	22841	3	3	3
22804	2	2	2	22842	3	3	3
22805	3	3	3	22843	3	3	3
22806	3	3	3	22844	3	3	3
22807	3	3	3	22845	3	3	3
22808	3	3	3	22846	3	3	3
22809	2	2	2	22847	3	3	3
22810	3	3	3	22848	3	3	3
22811	3	3	3	22849	2	2	2
22812	3	3	3	22850	1	1	1
22813	3	3	3	22851	3	3	3
22814	3	3	3	22852	3	3	3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금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8.서구							
기초구역번호	금지			기초구역번호	금지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1	대안2	대안3
22853	3	3	3	22869	3	3	3
22854	3	3	3	22870	3	3	3
22855	3	3	3	22871	3	3	3
22856	3	3	3	22872	3	3	3
22857	3	3	3	22873	3	3	3
22858	3	3	3	22874	3	3	3
22859	3	3	3	22875	3	3	3
22860	3	3	3	22876	3	3	3
22861	3	3	3	22877	2	2	2
22862	3	3	3	22878	3	3	3
22863	3	3	3	22879	3	3	3
22864	3	3	3	22880	3	3	3
22865	1	1	1	22881	3	3	3
22866	1	1	1	22882	3	3	3
22867	3	3	3	22883	1	1	1
22868	3	3	3				



부록 2.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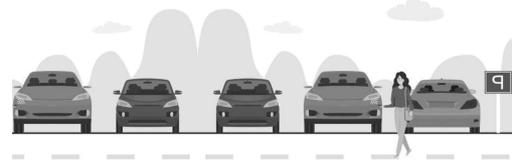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주차장법 제21조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6항

⑥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제10항

⑩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 제3항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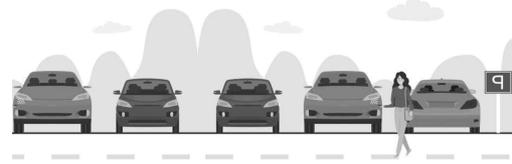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

3.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인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취사시설
 - 나. 세면시설
 - 다. 개수대
 -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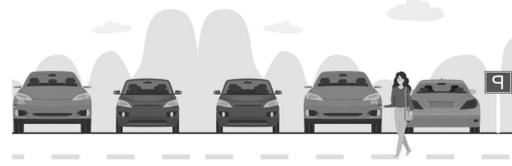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②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분 \ 업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20대 이상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마.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소형·특수자동차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인천광역시. (2021). 제61회 인천통계연보.
- 부산광역시. (2015).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구분 조정 연구용역.
- 광주광역시. (2019). 광주광역시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박세현·이태현·이신해·이종운. (2017).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대한교통학회:교통 기술과정책,14(5),29-38.
- 인천광역시. (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2018).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017~2036).
- 인천광역시. (2018).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17~2026).
- 인천광역시.중구. (2021). 2020년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 인천광역시.동구. (2020). 2020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정책방안 수립.
- 인천광역시.연수구. (2021). 2020년 연수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 인천광역시.남동구. (2021). 2020년 남동구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
-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 '19년~'20년 부평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 인천광역시.계양구. (2021). 2020년 계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인천광역시.서구. (2021). 2020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2021). 강화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 NYC DOT. (2009). Sustainable Streets Index 2009.
- 서울디지털재단. (2020). 서울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이용 효율 향상 방안 연구.
- 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5). Can I Park here brochure.

■ 관련 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264호). 1980.7.4. [제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2532호). 1991.7.6. [전부개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3246호). 1998.5.11.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3356호). 1999.8.16.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6850호). 1922.4.2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제18559호). 2021.12.7.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4.14. [일부개정]

주차장법(제18562호). 2021.12.7.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8.27. [타법개정]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36호). 2021.4.20.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568호). 2021.12.7.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1.28.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6호). 2022.4.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8265호). 2021.12.30.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조례 제5709호). 2021.10.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5671호). 2021.12.1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2530호). 2021.12.2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6664호). 2022.4.13.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조례 제5656호). 2021.2.25. [일부개정]

■ 행정자료(비공개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2021). 주차장 설치 및 운영 현황[내부자료].
 인천광역시 교통관리과. (2021). 카라반·캠핑카 주차장 현황[내부자료].

■ 보도자료/신문기사

전형민. (2020.04.24.). 부천 상살미마을, ‘공유주차·모빌리티’로 주차문제 개선...전국으로 확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16676>(검색일: 2022년 6월 2일)
 안승섭. (2019.10.24.). 세계서 가장 비싼 홍콩 주차장...한 칸 11억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http://www.yna.co.kr/view/AKR20191024095600074>(검색일: 2022년 6월 2일)
 장철순. (2020.11.29.). 부천시 ‘무정차 요금정산 시스템’ 공영주차장, 출차 빨라진다.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vote/view.php?key=20201129010005650>
 (검색일:2022년 6월 2일)
 박소영. (2021.07.06.). 인천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42>(검색일:2022년 6월 22일)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 "연도별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록 현황(2021)".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검색일: 2022년 6월 2일)
- 서울특별시. (2021). 직영 공영주차장.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guidance/info.jsp(검색일: 2022년 6월 2일)
- 서울특별시. (202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4471>(검색일: 2022년 6월 2일)
- 제주특별자치도. (2022). 차고지 증명제. <http://parking.jeju.go.kr/info/info.cs>(검색일: 2022년 6월 2일)
- Eberhard Buhl. (2015). Road traffic: Smarter parking. <https://new.siemens.com/global/en/company/stories/mobility/smarter-parking.html>(검색일: 2022년 6월 2일)
- Wilson Parking. (2018). Car parking map. https://www.wilsonparking.com.hk/en-us/car_parks/map(검색일: 2022년 6월 2일)
- SFMTA. (2022). SFpark Evaluation. <https://www.sfmta.com/getting-around/drive-park/demand-responsive-pricing/sfpark-evaluation>(검색일: 2022년 6월 2일)
- NYC. (2022). Street Parking Rates. <https://www1.nyc.gov/html/dot/html/motorist/parking-rates.shtml>(검색일: 2022년 6월 2일)
- Seattle gov. (2022). City of Seattle 72-Hour On-Street Parking Ordinance. <https://www.seattle.gov/transportation/projects-and-programs/programs/parking-program/parking-regulations/72-hour-on-street-parking-ordinance>(검색일: 2022년 6월 2일)